

# 目 次

제 1 부 법령용어 순화정비 사업의 개요 .....	5
I. 머리말 .....	7
II. 법령용어 정비사업의 추진경과 .....	9
1. 구법령정리사업 .....	9
2. 법령의 한글화 추진 .....	11
3. 법령용어 정비기준의 제정·추진 .....	12
4. 현행법령 정리사업 .....	13
III. 법제처의 법령용어 정비사업 추진실적 .....	14
1. 기본방향 .....	14
2. 세부 추진내용과 실적 .....	15
IV. 향후 추진방향 .....	19
제 2 부 법령 순화정비 사례(안) .....	21
I. 머리말 .....	23
1. 순화정비의 목표와 방향 .....	23
2. 순화정비 대상 법령의 범위 .....	24
3. 순화정비의 일반적 기준 .....	25
4. 기타 세부 기준 .....	27
5. 순화정비 사례 .....	28
6. 순화정비 방향에 대한 제안 .....	30
7. 검토 의견 .....	31
II. 순화정비 사례(안) .....	33
附 錄 .....	121
○법령용어 순화정비 기준 .....	123
○법령에서의 한글·한자사용기준 .....	124
○법령의 한글사용례(종합정리) .....	127
○『법령입안심사기준, 법제처(1996)』: 163-177쪽 정리 .....	145

## 제 1 부

# 법령용어 순화정비 사업의 개요



## I. 머리말

민주국가에 있어서 법의 기능은 민주시민의 권리·의무의 실현수단 내지 정치권력의 통제수단에 그치지 않고 국가기능 전반의 운영규범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시민의 법의 준수여부는 바로 국가사회의 안정과 국가발전을 좌우하는 관건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민주국가에 있어서 법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함은 물론 마땅히 준수하여야 한다는 법의식을 민주시민은 가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는 경우 과연 국민들이 법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안정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마땅히 준수하여야 한다는 민주시민으로서의 법의식을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는지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법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구체적 원인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sup>1)</sup>, 그 중에서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는 법률의 내용과 용어, 표현방법 등이 고도의 전문성을 반영하여 지나치게 난해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법률의 내용과 취지를 일반국민이 용이하게 알 수 없도록 한다면 법률은 그 적용의 적정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은 법적 생활에 항상 불안감을 가지게 되어 국민들의 법생활화의 습성을 이루기도 어렵다.

우리의 법률이 내용과 용어, 그 표현방법의 면에서 난해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된 요인으로는 우선 일본식 표현, 난해한 한자어, 비문법적인 표현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의 현행 법제는 우리의 고유한 전통 법문화를 계승발전한 것도 아니며 우리의 자주적 결정에 의하여 다른 나라의 법제를 수용한 것도 아닌 일본의 식민지통치를 통한 타율적인 법의 수용이었다. 이러한 일제에 의한 강제적인 법수용은 아직도 우리의 법문화, 법학교육, 실정법체계의 내용과 형식에 많은 영향을 가져오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법의 정립은 그 국가의 언어, 풍습, 가치관과 같은 그 국가의 고유한 문화위에서 이루어 질 때 그 법률은 국민생활에 널리 적용될 수 있으며, 법규범이 생활규범으로서 정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언어생활과 언어감각과는 전혀 다른 일본의 법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여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본말과 우리말은 여러 가지 풍습이나 전통, 가치관 등에 의하여 언어감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입법기술상의 편리함 때문에 무비판적으로 일본의 법률개념과 용어를 남발하여 국적불명의 법률을 양산한 것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sup>2)</sup> 이러한 일본의 법언어로

1)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이 올바른 法意識을 갖지 못한 요인으로는 ①법은 국민을 구속하고 억압하는 통치수단에 불과하다는 儒敎的 傳統思想下의 법의식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점, ②서구에서 발전된 개인주의·합리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법제를 계수한 우리 現行法制가 전통사상을 탈피하지 못한 현실사회와 거리가 있다는 점, ③법의 적용이나 집행에 있어서 법이 만인에 평등하다는 信賴度가 희박하다는 점, ④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의 급격한 변화로 不信과 物質萬能主義의 풍조가 만연되어 법질서가 문란하게 된 점, ⑤多元的인 산업사회에서 외래의 사조와 문화의 영향으로 올바른 가치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점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자세한 것은 高昌鉉, 『市民生活과 法律』, 東亞法學(동아대) 제3호, 1986, 433~446면 참조.

형성된 우리 법제가 우리의 언어감을 둔하게 하고 결국 일반국민들이 법을 대하는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법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성은 법령 중에 난해한 한자어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다.<sup>3)</sup> 물론 전문적인 법개념인 경우 그 개념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으로 한자를 표기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일반 보통명사까지 난해한 한자어로 표기하고 있어서 우리 고유의 한글은 단지 조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사정이다. 이에 대하여 1948년 10월 9일 법률 제6호로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모든 공문서는 한글을 전용하되 얼마 동안은 한자를 병용하도록 하였고, 1961년 10월 1일에는 각령 제137호 정부공문서규정을 제정하여 모든 공문서는 한글을 전용하되 법령은 여전히 한문을 사용하도록 권장하였으나, 1969년 5월 2일에 정부공문서규정을 개정하여 법률을 제외한 법령도 한글을 전용하도록 함에 따라 현재는 대부분의 법령이 한글로 표현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법률에 관해서는 아직도 한자를 사용하고 있고, 특히 이른바 헌법·민법·형법·상법 등 국가법체계의 가장 기본적인 법규범과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률에서조차 난해한 한자어가 표기되어 국민의 법생활을 둔감하게 하고 있다. 일상언어와 법언어의 간격이 넓어짐으로서 법이 그 본래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법전상의 난해한 법언어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음미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령문의 문장구조와 문체에 있어서도 논리적 모순이 있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것이 있는가 하면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구비한 자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난해한 문어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와 같은 우리 법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 동안 학계와 실무계 등에서 꾸준히 일반국민에 대한 우리 법제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현재에도 이 작업은 정부 및 학계에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부분적이거나 단편적인 개선에 그치고 있어서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의 법령용어의 위치를 점검한다는 의미에서 법령용어의 이해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그 동안의 작업추진 체계와 그 성과를 개관해 보면서 법령용어의 순화, 나아가서는 법령문 전체의 순화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와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

2) 『일본사람의 언어생활과 언어감이 우리의 그것과 동일하지 않는 한 일본의 법개념을 송두리째 우리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른 분야도 아닌 法學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그 문제성의 정도가 더욱 높다. ……법학은 지식의 유무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의 行爲를 규율하는 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해의 필요성과 요청은 현실적으로 매우 절실하다』, 배종대, 『우리 법학의 나아갈 길 -형법학을 중심으로-』, 법과 사회 창간호, 1989, 237~238面 참조.

3) 曹圭昌, 『韓國民法과 獨逸民法의 關係 -우리 민법전의 난해성을 중심으로-』, 韓獨法學 제4호, 1983, 57~68面.

## II. 법령용어 정비사업의 추진경과

### 1. 구법령정리사업

법령용어 순화정비 사업은 정부수립 이후 추진되었던 구법령정리사업과 함께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구법령정비사업은 구한말법령·일제법령(조선총독부)·미군정법령이 우리나라의 법령과 같이 시행됨에 따라 당시의 제헌헌법에의 저촉 등<sup>4)</sup> 불분명하고 국민감정에 맞지 아니하며, 문자·용어의 표기가 부정확하거나 혼란을 주어 일반국민이 법령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구법령정리사업의 조속한 추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sup>5)</sup> 구법령정리사업은 제헌헌법의 공포와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수립직후부터 각계 각층의 요구에 의하여 착수하였으나, 6.25사변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고 5.16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이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법전편찬위원회의 설치(1948년)

8.15해방 이후 헌법의 제정과 정부수립에 따른 긴급한 법률의 제정은 일단 마무리되었지만 민생과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민상사·형사법은 제정을 미룬 채 일본법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현실이었다. 이러한 기본법은 행정법규와 달리 줄속으로 제정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이의 제정을 위한 특별기구로서 『법전편찬위원회직제(1948.9.15 대통령령제4호)』를 제정하여 법전편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대통령감독하에 법전편찬위원회를 두고 민사·상사·형사관계 기본법전과 기타 소송·행형 등 사법법규의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그 초안을 기초·심의하도록 하고(동직제 제2조), 위원장 1인과 위원 50인을 법조계·법률학교수·행정부 법무담당 기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동직제 제3조).<sup>6)</sup> 법전편찬위원회는 주로 사법관계법령의 기초작업에 상당한 업적을 남겼고, 법령정리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제를 개정·보완하기도 하였다.<sup>7)</sup>

4) 制憲憲法 제10장부칙, 제100조는 『現行法令은 이 憲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效力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美軍政法令 제21호 『法律諸命令의 存續(1945.11.2 공포)』에서 『모든 法律 및 朝鮮 舊政府가 발표하고 법률적 效力을 갖는 규칙·명령·고시 기타 문서로서 1945.8.9 실행중인 것은 그 간 이미 廢止된 것을 제외하고, 朝鮮軍政部의 특수명령으로 폐지할 때까지 모두 效力을 가지고 존속한다(동 법령 제1조)』라고 규정하여 大韓民國政府樹立 이후에도 구법령의 효력이 존속하게 되었다.

5) 8.15解放 및 대한민국정부수립 당시 우리나라에 시행된 法令은 舊韓末의 법률과 칙령, 日帝의 제령·조선총독부령 및 일본법률 등, 軍政時代의 군정법령·과도정부법률 등 다양하고 불분명하였다. 法令用語의 경우도 당시에 공포·시행한 『未成年者勞動保護法(1947.5.16 군정청 법률제4호)』에 사용된 용어를 예로 들면 『此를 禁함, 其生命等』으로 거의 일본식 또는 한자표현이었다.

6) 위원장에는 金炳魯가 임명되었으며, 위원은 기초위원과 일반위원으로 나누어 졌다. 일반위원에는 법률가만이 아니라 경제학자, 사학자, 교육학자 등 학계의 대표들도 참여하였다. 法典編纂委員會는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부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各法別로 개별분과위원회와 기초위원을 두고 이에 一般委員을 배속하는 것으로 하였다.

7) 法典編纂委員會의 활동뿐 아니라 민법, 형법 등 기본법의 제정과정에 대한 자료 등이 제대로 남아

## (2) 법령정리간행위원회의 설치(1951년)

1951년에는 법전편찬위원회에서 시행하던 구법령의 유효·무효를 조사심의하고 이에 대체할 새 법령의 기초를 준비하며, 통일된 법령집의 편찬·발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령정리간행위원회(1951.5.12 대통령령제499호)』를 설치하였다.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법제처장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위원회의 실무를 법제처가 담당하였다. 그러나 동위원회는 당시 6.25사변 중이어서 예산조치가 없어 이렇다 할 업적은 없었다.<sup>8)</sup>

## (3) 법령정리위원회의 설치(1956년)

6.25사변 중에 법령정리사업의 추진이 거의 중단된 상태였으나, 전쟁이 끝나고 질서가 회복되면서 이 사업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법령정리간행위원회의 규정을 개정하여 『법령정리위원회(1956.7.19 대통령령제1169호)』를 두었다. 이 위원회는 법제실(1955.2.7 법 제354호로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법제처가 법제실로 명칭을 바꿈)소속하에 법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법률학을 전공한 국회의원·법조계·행정부공무원 기타 법률학교수 등 10인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전문위원·참사 등을 임명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여 400여 건의 구법령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sup>9)</sup> 이 당시의 구법령정비사업은 위원회를 통하여만 이룩된 것이 아니고 새로운 행정의 필요에 따라 신법령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구법령을 폐지 또는 실효함으로써 구법령정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sup>10)</sup> 그러나 이러한 구법령의 정리사업은 법령내용상의 미비점·모순과 저촉, 법리상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일본식의 용어표현과 한자식 표현 및 지나치게 어려운 법령용어 등을 쉽게 풀이하어 쓰는 등 법문내용의 표기에 있어서도 큰 성과가 있었다.

## (4)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제정(1961년)

5.16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구법령정비사업을 조속히 마무리짓기 위하여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1.7.15 법 제659호)』을 제정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각

---

있지 않고 또 남아있는 것조차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와 관련된 자료의 종합적 정리와 발간이 요청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張明根, 『現代法制的 歷史的 形成過程』, 저스티스 제27권2호, 1994, 126~127면 참조.

8) 法制處, 『法制處四十年史』, 1988, 127면.

9) 당시 정리된 400여 건을 법령별로 보면 舊日本法律 30건, 구제령 73건, 구칙령 25건, 구총령 218건, 기타 일제 때의 제법규 20건, 軍政法令 46건 기타 군정법규 5건 등이다.

10) 『……5.16 이전의 舊法令整理事業은 원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정부수립 이후 국정이 안정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6.25라는 비극을 맞아야 하였고 행정부와 國會의 관계도 원활하지 못하여 政府가 제출한 구법령정리법안이 의사일정에조차 오르지 못하고 번번이 그대로 폐기되어 行政府에 되돌아 왔기 때문이다. ……』, 金鎔珍, 『舊法令整理事業에 관한 小考』, 法制 제218호, 1988.1.20, 36면.

수반 감독하에 『법령정리위원회』를 두어 위원장은 내각사무처장(1961.10 법제처 설치후 법제처장)으로 부위원장은 법제처장으로 하여 1962년 1월말까지 약 5개월 동안 400여 건의 법령을 새로이 제정하고 500여 건의 구법령을 폐지하는 등 일단 구법령정리사업을 마무리하였다.<sup>11)</sup>

## 2. 법령의 한글화 추진

해방과 더불어 새정부가 수립함에 따라 우리 민족고유의 글자인 한글을 전용하여야 한다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한글전용에관한법률(1948.10.9 법률 제6호)』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률에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한글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한글전용은 크게 실현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초반부터 한글타자기가 보급되면서 공문서 등에 있어서 한글화를 촉진시켰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60년대 후반부터 경제발전과 아울러 중등 및 고등교육의 확대에 인하여 법령을 모두 한글화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법령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법령한글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법령의 한글화사업을 더욱 촉진시킨 또 한가지는 제3공화국헌법(1962.12.26) 제정 당시 알기 쉬운 헌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문학자의 도움을 받아 한자보다는 한글을 많이 쓰도록 하였던 것도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법령의 한글화사업은 앞에서 밝힌 『한글전용에관한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그 세부적인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법령의 한글·한자표기기준 설정

정부에서는 1969년 5월 1일 『법령의 한글·한자표기기준』을 설정하고 앞으로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있어서 한글로 표기하기로 하고, 이미 제정된 부령은 1969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은 1970년 12월 31일까지 한글화 작업을 마치고 법률에 대하여도 한글화하도록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정부의 모든 공문서를 비롯하여 법령도 한글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공문서규정(1969.5.2 대통령령 제3923호)』을 개정하고 법규문서의 표기에 있어서도 한글로 띄어서 가로쓰며, 한글맞춤법의 원칙에 따르도록 하였다. 이러한 법령의 한글화 추진은 1970년 말까지 대통령령이 1,024건, 총리령·부령이 748건 등 전부 1,722건에 이르렀으나, 법률의 한글화는 결국 실현되지 못하였다.<sup>12)</sup>

11) 구법령정리사업은 불과 165일 동안 193건의 법률과 250일 동안 각령 196건을 제정하여 총 389건의 법령을 제정하였고, 618건의 과거법령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의 舊法令整理事業은 지나치게 신속성을 강조한 나머지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아니하고 법령을 정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法令用語의 정비도 병행하였으나 충분한 검토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세한 내용은 金鎔珍, 前掲論文, 38面 이하 참조.

## (2) 법령용어 정비요강의 제정

법령의 한글화 작업은 현행법령의 한자용어로 된 문장을 그대로 한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한자용어로 되어있는 것을 한글화할 경우 그 뜻을 알 수 없거나 다른 뜻으로 해석될 염려가 있는 용어에 대하여는 알맞게 우리말로 바꾸어 쓰도록 하였다. 이러한 원칙 아래 법제처에서는 그 세부적인 지침으로서 1969년 5월 『법령용어정비요강』을 마련하였다. 동 요강에서는 ①법령은 한글을 전용한다. ②고유명사나 학술·기술분야의 전문적 용어에 대하여는 한글전용에 관한 정부의 일반원칙을 따른다. ③법령에는 알기 쉽고 널리 사용되는 평이한 용어를 사용한다. ④상용되는 용어라도 비민주적인 것은 적절한 다른 말로 바꾼다. ⑤두개 이상의 용어가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정확하고 적절한 한가지로 쓴다. ⑥법령용어는 되도록 학술용어와 일치시킨다. ⑦외래어는 되도록 쓰지 아니한다. 그러나 널리 상용되고 있는 외래어로서 바꾸어 쓸 적절한 우리말이 없는 것은 그대로 쓸 수 있다. ⑧우리말로 바꾸어 쓸 수 있는 외래어라 하더라도 외래어를 씀이 더 적절한 때에는 그대로 쓸 수 있다. ⑨외래어를 쓸 때에는 문교부제정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라는 요강을 제시하였다.

## 3. 법령용어 정비기준의 제정·추진

정부수립 이후부터 꾸준히 법제처가 중심이 되어 과거의 일본 법령의 영향하에 적용되던 법령을 총정리할 때에 법령용어도 많이 정비한 바 있고, 또한 1969년 법령의 한글화 작업으로 대통령령과 부령을 모두 한글로 표기하도록 하여 쉬운 법령용어로 바꾸어 쓰기 등 많은 실적을 쌓기도 하였지만, 특히 1972년 7월부터는 법령용어 정비를 좀 더 적극화하기로 하고 『법령용어정비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법령용어의 순화정비를 추진하여 왔다.<sup>13)</sup> 법제처에서는 법령문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1973년 7월 『법령용어의 통일』에 관한 지침을 발간·배포하기도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법령상의 관용어사용 원칙·법령상의 외래어·한글 바로쓰기·법령 한글화작업 채택용어·참고자료의 순서

12) 國務總理訓令 제68호(1968.12.24)에 의하여 1970년 1.1부터 한글전용을 지시한 바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法律도 한글전용을 추진하였으나 1973년도 법제처장 입회하에 國會法制司法委員會에서 국회의원의 요청과 반론에 의하여 결국 합의로 한자혼용의 방침을 정한 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權寧敏, 『立法實務』, 研修社 1977, 31面.

13) 1972년 7월에 제정된 제1차 법령용어 정비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동음이의어로서 그 뜻이 서로 혼동될 염려가 있는 것은, 자주 쓰이는 말은 그대로 두고 그 밖의 것은 다른 적절한 말로 바꾸어 쓴다. ②2개 이상의 말이 같거나 비슷한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정확하고 알맞은 것 하나만을 골라 쓰거나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③표현이 너무 간단하여 알기 어려운 용어는 알맞게 풀어쓴다. ④한자로 이루어진 말로서 이를 그대로 한글로 옮겨쓰는 경우 그 뜻을 알기 어려운 말은 일반에 널리 쓰이는 말로 바꾸거나 알맞게 풀어쓴다. ⑤국민감정이나 시대성에 맞지 아니한 말은 알맞은 다른 말로 바꾸어 쓴다. ⑥기타(정비대상에서 보류되는 것) 학술·기타 전문용어는 합리적으로 바꾸어 쓸 알맞은 말이 없을 때에는 당분간 그대로 사용한다. 法制處, 『法制處四十年史』, 247~248面 참조.

로 되어있다. 이러한 제1차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의하여 법제처에서는 계속적으로 법령용어 정비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나, 아직도 어려운 한자식 용어, 권위적·비민주적인 용어와 국민감정이나 시대감각에 맞지 아니하는 용어가 우리 법령의 내용 중에 쓰이고 있어 국민들이 법령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많이 있다는 각계각층의 요구에 의하여 1983년 4월에 제2차로 『법령용어순화정비기준』을 제정하여 법령용어의 순화정비 업무의 지침으로 관계 부처에 통보하였다.<sup>14)</sup> 『법령용어순화정비기준』은 종전의 법령정비 및 한글화 추진이 대부분 일본식 표현을 바꾸거나 한자용어의 한글화 등 형식적인 면을 중요시하였으나 새로 제정된 정비기준은 법령용어를 될 수 있는 한 쉬운 말로 쓰고, 명확히 표현하여야 한다는 원칙 아래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였다는 데에 그 의미가 크다.

#### 4. 현행법령 정리사업

법령 정비사업은 1961년도에 구법령정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일본식 법령을 전부 우리 법령으로 정리한 바 있고, 1969년도에 법령 한글화 작업으로 대통령령 이하의 법령을 모두 한글로 정리한 바 있으나, 이는 과거의 법령을 현대화하는 형식적 의미의 정비에 불과하였으므로 법령상호간의 모순·저촉 등 불합리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현행법령 정리사업은 1977년부터 2년간에 걸쳐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대해 전반적으로 1차 검토하여 정비한 바 있다. 그 결과는 총 2,790개 법령(법률 675·대통령령 1,210·총리령과 부령 905)을 검토하여 그 중 288개 법령에 대한 정비안을 작성,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정비하였는데 1978년까지 정비 완료한 것이 154개 법령이며 나머지 131개 법령은 정비내용이 경미한 것으로 그 후 다른 개정요인이 있을 때 정비하도록 하였다.

14) 법제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大統領指示(국행이 100-98, 1983.2.28)』에 의하여 1983년도 『법령용어정비·개선계획 실시(법실 182, 1983. 4. 18)』에 관한 공문을 『법령용어순화정비기준』과 함께 用語整備의 요령 및 절차에 관하여 각원·부처·청에 통보하였다.

### Ⅲ. 법제처의 법령용어 정비사업 추진실적

#### 1. 기본방향

법제처에서는 법령에서 쓰이는 용어를 보다 알기 쉽고 명확·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그동안 법령용어 순화정비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법령에서 쓰이는 용어는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울 뿐만 아니라 국민감정과 시대성에 맞는 용어가 되어야 할 것이나, 아직도 우리 법령에 쓰이고 있는 용어 중에는 어려운 한자식 용어, 시대성에 맞지 아니하는 권위적·비민주적 용어, 더 나아가서는 일본식 용어 그 밖에 외래어가 쓰이고 있어 이를 순화·정비하는 작업이야말로 법제의 민주화와 법의 생활화를 위한 기초적인 과제라고 보겠다. 따라서 법제처에서는 그 동안 제정·시행하여 오던 『법령용어정비요강』과 『법령용어순화정비기준』의 내용을 앞으로 계속 적용하되, 이를 보다 체계화·명확화하기 위하여 ①용어의 민주화, ②용어의 평이화, ③용어의 명확화, ④용어의 표준화라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법제의 민주화·법의 생활화를 위한 순화정비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용어의 민주화

우선 법령용어순화정비기준 제3항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권위적이거나 비민주적인 용어와 국민감정이나 시대성에 맞지 아니하는 용어는 다른 말로 바꾸어 쓰며, 민주발전에 따른 시대적 요청에 적합한 용어의 선택 등 『용어의 민주화』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순화·정비를 추진한다.

##### (2) 용어의 평이화

한자용어는 가능한 한 한글용어로 풀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오히려 풀어쓰므로써 그 뜻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대로 쓰며, 또한 중등교육을 받은 정도의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그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바꾸어 쓴다.

##### (3) 용어의 명확화

표현이 너무 간단하여 알기 어려운 용어 또는 간략하게 쓴 약어는 될 수 있는 한 명확한 말로 풀어쓰며, 같은 용어라 하여도 쓰임이 다르거나, 발음이 같고 뜻이 다른 용어(동음이의어)는 될 수 있는 한 그 뜻이 혼동되지 않고 명백해지도록 다른 말로 바꾸어 쓴다.

#### (4) 용어의 표준화

법령용어를 비롯하여 법조문의 문장표현에 있어서 문장부호·띄어쓰기 등 교육부에서 제정, 고시한 『한글맞춤법·표준어규정』에 의하여 표기한다. 외래어는 될 수 있는 한 쓰지 아니하되 바꾸어 쓸 적절한 우리말 용어가 없어서 외래어를 쓸 경우에는 『외래어표기법』에 맞추어 표기하고 고유명사·학술용어·전문용어의 표기는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서 표기한다.

## 2. 세부 추진내용과 실적

### (1) 법령용어순화편람 제1집·제2집 발간

법제처에서는 정부수립 이후 추진하여 오던 법령용어 정비계획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활성화하여야 한다는 대통령지시(국행이 100-98, 1983.2.28)를 근거로 1983년부터 법령용어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일상생활공용법령용어 정비·개선』을 위하여 법제관실로 하여금 소관 법령에 대한 정비대상 용어의 검토를 통한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한편 법령용어정비 총괄담당관(과장)을 반장으로 하고 법제관실 사무관을 반원으로 하며 법제기획관실 사무관을 간사로 하는 법령용어 실무작업반을 두었다. 작업추진은 소관별로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순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개선이 필요한 법령용어는 심의회에 부의하여 심의한 후 그 결과를 확정·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원·부·처와의 공동정비계획을 추진하여 소관법령 검토 및 대체용어를 선정하여 법제처 법령용어심의회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 채택된 용어를 확정·시행하였다. 또한 『고유법령용어의 정비·개선』을 위하여 법령용어정비총괄담당관이 주관하여 고유법령용어 검토 및 대체용어를 선정하는 작업을 추진하여 선정된 용어에 대해 법령용어심의회 제1차 심의와 학계·정책자문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이를 다시 제2차 법령용어심의회를 개최하여 확정·시행하였다.

위와 같은 1983년부터 1984년에 걸친 추진결과를 편람으로 발간하여 법령용어순화정비에 참고로 하며 법령안 심사에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령용어순화편람(법률부문) 제1집』을 발간하였다. 발간내용은 1983년부터 1984년도에 걸쳐 법률에서 추출한 대상용어 1,360여 개의 용어를 가, 나, 다 순으로 정리하여 바꿈말을 재검토하고 조정하여 1,000여 개의 용어를 선정하였다. 또한 바꿈말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들은 후 소책자 형식으로 발간하여 각 법제관실에서 활용하고 각 부·처·청에도 배부·활용토록 하였다.

1986년도에는 정비대상용어를 대통령령에서 대상용어를 선정하는 한편 특히 건설·수산업분야 등 특수전문분야의 법령용어 정비에 주력하였다. 추진방법으로는 각 부처가 소관법령 대상용어를 법제처에 제출하여 법제처가 단일안을 작성하고 이를 법령용어심의회

에 심의하였다. 그리하여 220여 개의 대통령령을 대상으로 각 부처가 선정한 1,700여 개 대상용어 중 이를 검토·보완하여 필요 없는 용어를 제외하고 180여 개의 대상용어를 재 선정하여 법령용어 순화정비안을 마련하였다. 이 결과 1983년부터 1986년도의 추진결과를 총정리한 『법령용어순화편람 제2집(증보판)』을 발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각원·부·처·청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 (2) 법령용어순화편람 제3집 발간

1988년도 이르러 헌법개정을 비롯하여 많은 법령이 새 헌법의 이념에 맞도록 대폭적으로 보완·정비하는 등 법제개혁이 크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법제개혁추진과 병행하여 법령용어뿐만 아니라 법령에서 쓰이는 일상생활용어 및 법령문장의 표기형식도 민주화이념에 맞도록 순화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법제처에서는 중등교육 이상을 받은 수준이면 알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할 것을 목표로 모든 법령(약 3,000건)을 대상으로 비민주적인 용어(권위주의적 용어) 또는 국민감정에 맞지 않는 용어, 한글맞춤법·표준어규정, 외래어표기법 등 맞춤법에 맞지 않는 용어, 같은 뜻이 다르게 표현되는 용어(동의이음어), 외래어·약어·특수전문용어 등 표기가 부정확한 용어 등을 중심으로 『정비대상용어』를 선정하였다. 아울러 법령전산화시스템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상용어의 선정과정을 거친 용어를 키워드검색형식으로 당해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법령명칭·해당조문을 컴퓨터로 검색하여 정비대상용어 745건이 수록된 『법령용어순화정비 대상자료집(안)』을 발간하였다. 한편 법제처에서는 법령용어순화정비 기본계획(법조 02101-1007, 1988.7.2)에 의하여 국회·대법원,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소관법령을 검토하게 하고 정비대상용어를 선정하여 통보하도록 공문서를 발송하였다. 용어정비의 기본방향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용어의 민주화』에 중점을 두고, 권위주의적·비민주적 용어는 대폭적으로 순화·정비하도록 하였다.

법제처에서는 각부처로부터 접수된 정비의견을 통합·정리한 『제1차 정비안』을 중심으로 제1차 법령용어심의회를 개최하여 각 부·처·청의 정비의견을 검토하고 구체적 심의 방법을 논의하는 한편 각부처의 정비의견에 대하여 법제관(부처담당별)으로 하여금 검토케 하여 그 의견을 제출받았다. 이를 토대로 각부처 의견, 법제관실 의견과 상치되는 용어 약 150개에 대해서는 국어학자의 자문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법제관실 검토와 각계 전문가의 자문 및 『법령용어심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용어 1,820여 건('86년이전정비 1,180건, '90년추가 640건)의 용어를 수록하여 법령용어순화편람 제3집을 발간하였다.

## (3) 법령용어순화편람 제4집 발간

1988년부터 1990년까지의 기간 동안 법령용어정비의 기본방향이 용어의 민주화에 중점

을 두고 추진한 것이었다면 1991년부터 1992년의 기간에는 그 기본방향을 어려운 한자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는 「용어의 평이화」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우선 정비방향의 취지에 맞도록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어려운 한자용어를 조사하여 정비대상용어를 선정하였다. 정비대상용어의 선정에서 한자용어의 조사는 국립국어연구원에서 발간한 「국어순화자료집(1988. 12)」을 참고로 순화대상용어 중 현행법령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찾아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래서 일상생활공용법령용어 1,054건,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외래어 122건 등 모두 1,176건을 수록한 「정비대상용어자료집(안)」을 1991년 4월에 발간하였다. 그리고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제시된 외래어표기원칙에 따라 현행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외래어를 다음과 같이 조사하여 모두 122건의 외래어를 정비대상용어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그 동안 법제처에서 발간한 세 차례의 「법령용어순화편람」에는 모두 1,820여 개 용어가 수록되어 있었으나, 그곳에 수록된 많은 용어들은 완전하게 다듬어진 용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동안 법령심사과정에서 직접 사용하는데 적절치 아니한 용어도 있고, 점차로 법령을 쉬운 문장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각계의 요청에 따라 이미 정비된 용어도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말로 풀어쓰도록 재검토작업을 착수하게 되었다. 따라서 1,820여 개 정비용어를 대상으로 총무처에서 발간한 「행정용어순화편람」과 국립국어연구원에서 발간한 「국어순화자료집」등을 중심으로 각부처 정비의견, 법제관 검토의견, 관련연구기관 검토의견, 각계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수집·대비하여 「법령용어정비 각계의견 대비자료집」을 발간하였다. 법제처에서는 이 「각계의견 대비자료집」을 토대로 「법령용어심의회」를 개최하여 집중적인 심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에서 심사한 용어는 2,955건('86년수록 916건, '90년수록 589건, '92년추가 1,450건)으로 매우 방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심사된 용어는 「행정용어바르게쓰기에관한규정(국무총리훈령 제252호)」 제5조 및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처·문화부 등 관련기관 국장급으로 구성된 「행정용어순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보 등에 공고한 다음에 국무회의의 보고를 거쳐 정부차원에서 「행정용어순화편람」을 발간하였다.

#### (4) 법령용어순화편람 제5집·제6집 발간

1993년부터 법제처에서는 제1차계획기간(1988~1990)의 「용어의 민주화」, 제2차계획기간(1991~1992)의 「용어의 평이화」에 이어 「용어의 표준화·명확화」와 「외래어의 정비」에 중점을 두어 순화업무를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법령용어(일상생활용어 포함) 772건 및 1993.2.1 이후 공포된 법령을 대상으로 110건, 외래어 138건 등 모두 1,020건을 선정하여 1993년에는 「법령용어정비대상자료집(안)」을 작성하였다. 법제처에서 작성한 「법령용어정비대상자료집(안)」에 수록된 1,020개 용어(법령용어 882건, 외래어 138건)에 대하여 법제관실에서 법령심사와 관련하여 정밀검토하는 한편, 국회·법원·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등 55개 기관에 이를 발송(조사 01270-114, 1993.7.6)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관실 및 31개 기관에서 2,543건의 용어에 대하여 정밀검토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를 종합·정리하여 『법령용어정비 각계의견 대비자료집』을 작성하였다. 법제처 자체선정 용어인 『법령용어정비대상자료집(안)』을 법제관실,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에 대하여 정밀검토요청을 하고, 법제관실 및 각부처에서 제출한 정밀검토의견을 취합, 이를 종합정리하여 『법령용어정비 각계의견 대비자료집('94.6.2, 조사 01270 -103)』을 발간하였다. 아울러 법제처안과 관련기관의 의견이 다른 용어에 대하여 보다 신중을 기하고, 전문가적 입장에서 보다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 『대비자료집』에 대하여 국어학자 등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후 법제처에서는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실·국장, 관련법제관을 위원으로 하는 법령용어심의회를 개최, 각부처에서 정밀검토한 후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정비대상용어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확정하였다. 법령용어순화편람에는 제1집부터 제4집에 걸쳐서 모두 2,955개의 용어가 정비·수록되었으나 법제처에서는 관련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제5차로 선정된 정비대상용어와 함께 2,955건의 용어에 대하여도 법령용어심의회에서 재검토하였다. 특히 법제처안과 행정용어순화편람('92.12)과 차이가 있는 용어들을 재심사하여 용어심의회에서 확정하였다. 법제처에서는 이 『법령용어순화정비(안)』을 토대로 1994년 12월 법령용어심의회를 개최, 최종적으로 3,880여 건(외래어 282건 포함)을 심의·확정하여 이를 수록한 『법령용어순화편람 제5집』을 발간하고 관련기관 및 연구단체에 배포하였다. 그 후 1996년도에는 제5집에 수록된 내용 중 새로이 정비한 498개 용어를 추가하여 법령용어순화편람 제6집을 발간하였다.

#### IV. 향후 추진방향

법제의 민주화는 우선 법령의 내용면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 합당하여야 함은 물론 더 나아가서 그 형식적인 면에서 법령의 표기가 국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하고, 널리 알려져 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령용어를 쉽게 쓰도록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추진하는 사업이야말로 우리나라 「법제의 민주화」 및 「법의 생활화」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6년 법제처의 직제개정으로 법령용어 순화업무를 담당하던 법제조사국 및 법제연구원 제도가 폐지되면서 이 작업도 중단되었다. 그 이후 법제처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이 법제처의 법령용어 정비사업을 인계하여 계속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경영혁신 및 구조조정,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 등으로 인하여 연구원에서 이 작업을 수행하기가 여의치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법제처에서 법률의 한글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였고, 연구원에서도 이에 부응하여 법령용어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계획하고 있다.

법령용어를 쉽게 표기하고 법령문장을 누구나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법령용어를 비롯하여 법령에 쓰이고 있는 생활용어와 전문용어들은 우리나라 문화가 역사적으로 한자문화권으로서 한자식 표기가 많으며, 근대문명 이후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일본식 표현도 빼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고도로 복잡화되고 있는 산업사회 및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과학·기술분야의 새로운 「전문용어」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고, 이것들이 제도적으로 우리말로 적합하게 표준화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법령문장의 표현은 입법취지에 맞아야 하고, 알기 쉽고 명확하여야 하며, 문장 하나하나가 논리적으로 구성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령 전조문이 논리적·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종합적인 작품으로서 고도의 입법기술을 요구하는 전문적 작업이기도 하다. 법령이 아무리 알기 쉽게 표현되었다 하여도 그 내용에서 정확성이 결여되었다면 입법에서 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고 오히려 혼란만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령용어 정비업무의 추진방향도 이미 학설이나 관행상 정착된 전문 법령용어의 경우 설사 어려운 한자어로 표기되었다 하여도 함부로 풀어쓰지 아니하고 그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연구원에서는 법령용어 정비에 있어서 관련기관의 검토의견을 거쳐서 신중을 기하며, 이를 순화·정비할 경우에는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 제 2 부

### 법령 순화정비 사례(안)



# I. 머리말

## 1. 순화정비의 목표와 방향

법령용어 순화정비의 기본방향은 ①용어의 민주화(하달하다 → 알리다), ②용어의 평이화(구거 → 도랑), ③용어의 명확화(공용 → 공동사용), ④용어의 표준어화(귀절 → 구절)로 요약할 수 있다. 본작업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만, 단순히 ‘법령용어 순화정비’의 뜻을 ‘법령용어’만의 차원이 아니라 법령문장 내지 법령문 전체를 순화하고 정비하는 것으로 그 개념을 확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령문 순화정비’ 혹은 ‘법령 순화정비’로 지칭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그러나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의 관례대로 ‘법령용어 순화정비’라는 용어도 이와 같은 넓은 뜻으로 병행해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순화정비’의 개념을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구분한다면, 넓은 의미에서의 ‘순화정비’는 앞선 시기의 법령 용어, 구, 문장 등 법령문 전체를 현재 또는 미래의 언어감정과 법령 체계에 맞추어 개선하는 모든 작업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좁은 의미에서의 ‘순화정비’는 한자어인 법령 용어를 고유어로 고치는 용어 순화 위주의 작업을 뜻하는 것이라고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구분 하에 그 동안의 법령용어 순화정비를 살펴보면 ‘용어의 순화’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서 한자용어 등을 고유어로 풀어쓰는 용어 순화 작업에 편중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적지 않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 작업의 실효성과 성과가 기대만큼은 실현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한다. 따라서 본작업에서는 일상 한자어의 지나친 풀어쓰기 형태로 된 ‘순화위주’의 작업은 피하고, 잘 쓰이지 않는 어려운 한자어나 한문투의 구절, 일본어투의 영향에 의한 조사의 어색한 사용, 비문법적인 문장 등을 순화정비하였고, 일상 한자어로 여겨지는 용어들은 그대로 두는 태도를 취하였다. 한자어를 모두 풀어쓰는 형태의 과도한 ‘순화위주’ 작업은 실제 법안 작성시에 그 수용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일상 한자어는 고유어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는 방식을 택하였다.

순화정비의 원칙은 ①법률을 현대적인 표기법(맞춤법, 띄어쓰기)으로 정비하여 현대어화하고, ②난해한 한자와 일본어식 표현 등을 현대적인 법령문의 형식으로 순화정비하며, ③법령문의 기본형식 체계(제목, 조항호목의 배열)를 현재의 법령 체계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법령용어 순화정비’의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첫째 기존의 법령 순화정비 작업의 질적 향상을 통한 순화정비 사업의 체계화를 도모한다. 둘째 법령에 대한 이해성과 친숙성을 위한 규율기법을 개발한다. 셋째 입법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순화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이러한 방향에 따른 ‘법령 순화정비’의 최종 목적은 첫째 민주적 법치국가를 실현하고, 둘째 법령의 이해 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준법의식을 확산하며, 셋째 법령의 명확한 표현을 통해 법생활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다.

## 2. 순화정비 대상 법령의 범위

본작업에서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부터 1979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에서 2000년 3월 현재까지 한 번도 개정(부분개정 및 전문개정 포함)되지 않은 법령 112건을 추출하여 그 중에서 법률 22건을 대상으로 순화정비 작업을 수행하였다. 순화정비 대상 법률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법률명	제정연혁	공포번호
1.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	1948.10. 9	6
2. 國慶日에 관한 법률	1949.10. 1	53
3. 赦免法	1948. 8.30	2
4. 法院災難에 基因한 民刑事事件 臨時措置法	1950. 3.22	113
5. 身元保證法	1957.10. 5	449
6. 外國人의 署名捺印에 관한 法律	1958. 7.12	488
7. 民法·民事訴訟法施行에 관한 臨時措置法	1960. 7. 1	556
8. 年號에 관한 法律	1961.12. 2	775
9. 國葬·國民葬에 관한 法律	1967. 1.16	1884
10. 原子力損害賠償補償契約에 관한 法律	1975. 4. 7	2764
11. 在外公館收入金 등 직접 사용에 관한 法律	1964. 9.22	1660
12.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1973. 1.30	2457
13. 財政法規에 依據한 出納會計의 數字 및 記載事項의 訂正에 관한 法律	1961.12.13	841
14. 不當利得稅法	1974.12.21	2688
15. 失火責任에 관한 法律	1961. 4.28	607
16. 非營利法人의 任員處罰에 관한 法律	1961.11.11	772
17. 國家에 歸屬하는 相續財產移轉에 관한 法律	1961.12.23	860
18. 軍用物等 犯罪에 관한 特別措置法	1966. 3.29	1769
19. 大韓民國과 아메리카合衆國間의 相互防衛條約第4條에  의한 施設과 區域 및 大韓民國에서 의 合衆國軍隊의 地位에 관한 協定의 施行에 관한 民事特別法	1967. 3. 3	1902

20. 大韓民國과아메리카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第4條에 의한施設과區域및大韓民國에서의合衆國軍隊의 地位에관한協定の施行에관한刑事特別法	1967. 3. 3	1903
21. 婚姻申告特例法	1968.12.31	2067
22. 航空機運航安全法	1974.12.26	2742

### 3. 순화정비의 일반적 기준

1. 최근 80, 90년대의 법령 문안의 체계를 참고하여 당연히 순화정비해야 할 단어, 구, 문장 등을 순화정비하였다. 그리고 가능한 한 현재의 법률 문체와 체계에 맞는 표현으로 정비하였다.

본작업의 해당 법률이 60-70년대의 법률이므로 최근의 법률 문안과 대비할 때 당연히 정비해야 할 부분들이 나타난다. 특히 60년대에 제정된 법률들은 정비해야 할 부분이 많다. 각조의 제목이 없는 법률, 시대의 변화에 의해 쓰이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하고, 60-70년대 이후에 순화정비가 이루어진 용어를 반영한 것이다.

2. 일본어투 또는 한문투의 용어나 구절을 순화정비하였고, 비문법적인 문장은 문법적인 문장으로 고쳤다.

‘조사의 불필요한 중복사용, 일본어 직역투의 문장, 지나치게 생경한 용어, 한문 문장투의 구절 등에 의해 뜻이 불분명하거나 어색한 표현 또는 어려운 용어를 바로잡았다. 그리고 조사를 잘못 사용하거나, 대등한 명사절의 불균형적인 나열, 부당한 주어나 목적어의 생략 등으로 인한 비문법적인 문장을 문법적인 문장으로 고쳤다.

3. 현재의 법률 문안 작성 관례를 존중하여 급격한 용어순화 작업은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1987이전까지의 자료를 정리한 ‘법령의 한글사용례(종합정리)’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법률용어 순화편람, 법제처(1996)’에 나오는 것과 같이 한자어들을 전면적으로 한글로 풀어쓰는 방식을 따르지 않고, 일반국민이 이해할 만한 일상적인 한자어들은 그대로 두었다. 순화에만 초점을 두고 대부분의 한자어를 고유어로 풀어쓰는 방식은 어의(語意)가 달라지는 문제, 음절수가 길어지는 문제, 또는 한 개의 단어가 2-3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句로 되는 문제 등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4. 한자표기를 한글표기로 정비하는 것은 1990. 12. 1.의 ‘한글·한자 사용기준(550개)’ 내에서만 이루어졌다. 그리고 추가로 한글표기를 해도 될 만한 용어들은 따로 ‘비고란’에 표시하여 검토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한자로 표기된 용어를 한글표기로 바꾸는 것이 ‘한글·한자 사용기준(1990)’ 한도 내에서만 이루어질 때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대체로 법률 용어, 정치·행정 용어, 경제 용어 등은 한글표기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한도 내에서 한글표기를 할 때, 최근의 법률과 같은 정도의 한글표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임의로 한자어를 선정하여 한글표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의 허용 한도 내에서 한글표기 작업을 한 것이다. 따라서 추가로 한글표기를 해도 무방할 것으로 여겨지는 용어들은 ‘비고란’ 하단에 따로 기술하여 검토 의견을 묻기로 하였다.

또한 어느 정도의 추가 한자어를 한글표기가 가능한 어휘로 선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현재의 법령보다 조금 더 한글표기 어휘를 늘리는 것은 어느 정도 장점도 있을 것이지만, 반면 법령의 국한혼용 정책 자체의 의의를 훼손시키는 문제도 발생한다. 법령의 국한혼용 정책 자체가 유지되는 한 한글화 작업의 일정한 한계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생활과의 긴밀성에 여부에 의해 국한혼용 표기를 하는 법률과 한글전용 표기를 하는 법률로 구분해 이원적인 표기법 정책을 취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고 여겨진다. 참고로 본작업이 정비대상으로 삼은 법률 중에서 “12.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 법률”은 한글전용 표기인데도 불구하고 한두 단어를 제외하고는 이해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 규정을 따랐다. 다만 두 단어 이상의 한자어 복합어는 기존관례대로 붙여썼다.

‘허가 등’의 ‘등’을 법령에서는 예외규정을 두어 ‘허가등’으로 붙여써 왔다. 그러나 본작업에서는 모두 띄어썼다. 그리고 ‘이하, 이상, 이내, 내, 미만, 초과 등<sup>15)</sup>의 의존명사도 마찬가지로 띄어서 썼다.

다만 ‘特別赦免, 存續期間, 施行細則’ 등의 두 단어 이상의 한자어 복합어는 맞춤법의 허용 규정에 따라 붙여썼다. 그러나 ‘法務部長官, 原子力事業者, 補償契約金額’ 등은 전문용어와 같은 복합어라기보다는 두 단어 이상의 구로 보이므로 ‘法務部 長官, 原子力 事業者, 補償契約 金額’과 같이 띄어쓰는 것이 바람직하나, 유사어휘들을(예: 原子力損害, 損害賠償措置, 補償契約期間) 모두 띄어쓰게 되면 너무 많은 띄어쓰기가 발생하여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어 현행대로 붙여썼다. 이러한 것들의 상당부분은 한문투의 조어로 보이므로 한문 문장식의 법률문체 자체를 고쳐야 개선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것은 법률 문장 전체를 정비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간단치 않은 문제이다. 법률에 대한 검토와 국어학적 검토가 동시에 병행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현재 상황에서 한문투의 명사구를 단기간에 바꾸는 것은 무리라고 보아 기존관례대로 붙여쓴 것이다.

그러나 한 법률 내에서 혼동이 없거나 분명한 명사구 또는 너무 긴 명사구는 띄어썼다(예: 檢察廳 檢察官, 大韓民國 在外公館, 原子力 損害賠償 責任保險 契約 등을 띄어쓴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형태의 띄어쓰기는 법안 작성시에 적극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15) 이러한 의존명사는 최근의 법령에서 이미 띄어쓰고 있다.

#### 4. 기타 세부 기준

1. 현행 법령에서 ‘管轄區域외, 期間중, 期間내’ 등의 표기는 한자와 한글을 섞어서 쓰므로 ‘복합어는 모두를 한자 또는 한글로 쓴다’는 법안 작성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표기이다. 이러한 것들은 句로 보아 ‘管轄區域 외, 期間 중, 期間 내’로 띄어썼다

2. “허가등”이라고 붙여쓴 ‘등’은 띄어썼다.

법제처(1996 b)의 예외 규정은 ‘한글맞춤법’ 규정과 배치되므로 띄어쓴 것이다. 전자의 예외규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약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붙여쓴다. 예: 허가·인가·신고·승인(이하 “허가등”이라 한다)>

이러한 예외규정의 ‘등’은 불완전 명사이므로 띄어쓰는 것이 옳다.

3. 긴 명사구는 복합어로 보지 않고 띄어썼다. 법제처(1988:2-3쪽)의 예외규정은 다음과 같다.

나. 고유명사 및 전문용어는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예 : 한국 외국어 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재일 동포 모국 방문 > 재일동포모국방문

이 예외규정 중에서 아래의 것은 ‘재일동포의 모국방문’이 가능하므로 명사구로 보아 ‘재일동포 모국방문’으로 쓰는 것이 옳다. 법령에서 대부분의 한자어 명사구를 붙여쓰는 것은, 한문투의 법률 문체에 그 근본 원인이 있겠지만, 이러한 잘못된 예외규정도 한몫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이렇게 긴 명사구는 단위별로 띄어써야 가독성(可讀性)이 높아질 것이다.

‘재일동포 모국방문’의 예는 ‘한글 맞춤법’ 49항의 원칙인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을 ‘한국대학교 사범대학’으로 쓸 것을 허용하는 규정과 같은 예이다. 법률에서는 모든 한자 명사구를 붙여쓰는 관행이 있으므로 이 허용규정처럼 단위별로 띄어쓰는 것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4. 다음 (가)의 예처럼 중심어가 뒤에 나올 때는 한글표기를 하지 않고 앞 단어를 따라 한자로 썼다.

가. 訴訟關係人 → 訴訟 關係人(○), 訴訟 관계인(×)

나. 當該法院 → 당해 法院(○)

5. 부록에 법안 작성과 관련된 참고자료로 ‘법령용어 순화정비 기준’, ‘한글·한자 사용 기준(1990)’, ‘법령의 한글 사용례(종합정리-1987이전까지)’를 실었고, 아울러 「법령입안 심사기준(1996)」에서 법안작성과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여 법안 작성시에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 5. 순화정비 사례

### 가. 단어 차원의 정비

- 현재의 법령 체계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정비한 단어

但 → 다만

本法 → 이 법

看做하다 → 보다

經由하다 → 거치다

- 사회 현실의 변화로 용어가 바뀐 것을 정비한 단어

刑務所 → 矯導所

- 줄임말을 본래의 말로 정비한 단어

-케 → -하게

않다 → 아니하다

- 어려운 용어의 정비

既成의(동사) → 이미 발생한

情狀 → 情況

在監하다 → 收監되어 있다

上申하다 → 建議하다

被傭者 → 被使用者

前渡資金 → 先給金

橫書 → 가로쓰기

併科하다 → 함께 科하다

- 일상적으로 쓰이지 않는 용어의 정비

性行 → 性品과 行實

不適任하다 → 不適格하다

揭記하다 → 제시하다

## 나. 구(句) 차원의 정비

여기서 ‘구’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성분을 말한다.

- ‘-의 -의’로 ‘-의’가 중복되는 표현은 지양<sup>16)</sup>

‘刑의 言渡의 效力 → 刑 宣告의 效力  
刑의 執行猶豫의 言渡를 받은 者 → 刑의 執行猶豫를 宣告 받은 者  
기타의 물건의 → 기타 물건의

- 세로쓰기에 맞추어진 표현은 가로쓰기에 맞추어 정비

左와 같다 → 다음(各號의 1)과 같다  
左에 列記한 者 →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 명사구의 불균형적 나열을 정비

前項의 上申의 申請은 刑의 執行終了日 또는 執行의 免除된 日로부터 3年 →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議의 申請은 刑의 執行이 종료된 날 또는 執行이 면제된 날로부터 3年  
<‘A 또는 B’에서 A와 B는 대등한 성분이어야 한다.>

- 명사구의 띄어쓰기

事件本人이 ... ... 管轄區域外에 居住하는 時 →  
事件本人이 ... ... 管轄區域 外에 居住하는 時  
<‘外’는 의존명사이므로 한글로 쓰면서 띄어 썼다>

- 한문투의 구절을 정비

添加進達하다 → 첨가·보고하다  
爾後刑 → 그 때부터  
賦課決定하여 → 賦課할 것을 決定하여  
軍用に 供하는 → 軍용으로 제공되는  
軍法被適用者 → 軍法の 被適用者  
財産器物을 → 財産과 器物을

- 조사 사용의 오류를 정비

---

16) ‘-의 -의’가 중복되는 경우에도 모든 경우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연스러운 경우나 불가피한 경우는 사용해도 무방할 것이다. 일본어 직역투이므로 피해야 하는 것이지 국어 표현에서 ‘-의 -의’의 중복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規定에 불구하고 → 規定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身元保證人에 通知하여야 한다 → 身元保證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비문법적인 구절을 정비

중사하므로 인하여 → 중사함으로 인하여 (어미 ‘-(으)므로’와 조사 ‘-(으)로’의 오류)

致死傷하게 한 者 → 死傷하게 한 者 (‘致’와 ‘-게 하다’의 사동 의미가 중복된 오류)

다. 문장 차원의 정비

• 명사절의 불균형적인 나열을 정비

復權은 刑의 執行을 종료하지 않은 者 또는 執行의 免除를 받지 않은 者에 對하여는 行하지 않는다 → 復權은 刑의 執行이 종료되지 아니한 者 또는 執行의 免除를 받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행하지 아니한다

<‘A 또는 B’에서 A와 B는 대등한 성분이어야 한다. : 전자는 능동적 의미이고 후자는 수동적 의미여서 이질적이다.>

• 쉬운 표현으로 정비

訴訟記錄의 滅失을 當하였을 境遇 → 訴訟記錄이 滅失되었을 경우

• 부당한 목적어의 생략을 정비

訴를 提起하거나 提起된 때에는 → 訴를 提起하거나 訴가 提起된 때에는

## 6. 순화정비 방향에 대한 제안

1. 복합어가 아니라 한문투의 명사구로 보이는 단위들은 단위별로 띄어써야 할 것이다.

보조금교부사업 → 보조금 교부사업

사업실적보고서 → 사업실적 보고서

行政法規違反 → 行政法規 위반

2. 우리말은 ‘고유어 + 한자어’로 인식되어야 한다. ‘순화’에만 초점을 두는 방식은 일상적인 한자어의 많은 부분을 우리말에서 쓰지 말아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여 고유어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반면, 다른 한 방법은 일상적인 한자어를 우리말로 인정하여 이해하기 어렵거나 잘 쓰이지 않는 한자어만을 순화정비하는 방식이다. 여기에서는 후자의 입장을

취하였다. 이것은 한자어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우리말화된 용어까지 인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다만, 긴 한문투의 표현들은 일본어식 표현의 영향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긴 한문투의 표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법률 문체 자체를 우리말 표현방식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률 문체의 개선이 진행되거나 선행되는 가운데 순화정비 작업이 접목되어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순화정비가 가능할 것이다.

3. 법률에서 한글표기를 지금보다 더 늘리는 방법은 ‘한글·한자 사용기준’의 어휘수를 증가시키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몇몇 어휘를 더 늘린다고 할 때 그 대상의 대부분은 법률 용어, 정치·행정 용어, 경제 용어 중에서 선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한다고 가정할 때 그 선별기준도 문제이지만, 법률에서의 국한혼용 표기체계의 의의 자체를 애매하게 만드는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모든 법률을 한글전용표기로 하기 힘들다면 이원적 표기 체계를 택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즉 지금보다 한글표기 대상 어휘수를 조금 더 늘이는 제한된 방법보다는 국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법률을 선택하여 ‘도로교통법’처럼 전면적인 한글표기를 하는 법률을 확대하는 방식이 나올 것이다.

전면적인 한글표기를 하는 법률 내에서는 순화정비 사업의 목적이 충분히 실행될 수 있게 법령 용어와 문장, 문체 등을 국민감정과 법감정에 맞게 고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한혼용을 허용하는 현대 법령 체계의 틀 내에서 하는 순화정비 사업은 한자표기가 상당수 유지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자표기의 유지는 필연적으로 법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하는 장벽이 될 것이다.

결국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한혼용의 의의도 살리면서 국민의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 시기 동안 국한혼용표기에 의한 법률과 전면적 한글표기에 의한 법률의 이원적 체계가 공존하는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해 보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글전용 표기 법률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 7. 검토 의견

검토 의견은 법령용어 순화 검토작업 및 법령 순화 작업을 해 본 경험이 있는 국립국어연구원의 허철구 학예연구관에게 의뢰하였다. 다만, 이 검토 의견은 국립국어연구원의 공식 검토 의견이 아니고 허철구 박사의 개인 의견임을 밝혀 둔다. 지면을 빌어 고마움을 표한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의뢰한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서’의 내용을 실어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 <검토 의견서>

### ○ 검토 범위

- 검토 범위는 가급적 정비안의 검토 범위를 따랐음.
  - 정비안이 단어 정도의 범위에서 검토 정비하고 문장 전체를 크게 고치거나 수정하지 않았음.
  - 이에 검토안도 문장의 골격을 유지하는 정도에서 단어 사용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수정하는 수준으로 진행하였음.
- 다만, 이상적인 법률안 손질은 문장 전체의 골격도 해체하여 쉽고 명확한 문장으로 새로 기술하는 것임을 밝힘. 이러한 정신에서 문법을 어기거나 지나치게 부자연스러운 문장 등은 다소 큰 범위에서 수정하였음.

#### 예1) 비문법적인 예

受刑者が 收監되어 있는 矯導所長이(‘사면법’ 제12조) → 受刑자가 收監되어 있는 矯導所의 長이

#### 예2) 부자연스러운 예

그 目的한 罪의 實行에 이르기 전(항공기운항안전법 제4조) → 그 目的한 罪를 實行하기 전에

- 기타 어려운 표현 등도 가급적 쉬운 표현으로 고칠 것을 권장함.
  - 예) 燃燒性이 높은 물건(항공기운항안전법 제4조) → 불에 타기 쉬운 물건
- 맞춤법·외래어 표기법·띄어쓰기·기타 단어의 오용 등은 검토 대상에 포함하여 검토함.

### ○ 참고 사항

- 검토 의견의 표기는 대부분 한글로 하였으나 이는 한자를 한글로 바꾸라는 뜻이 아니라 한자 표기를 생략한 것임.
- 다만, 현재 법률에서 한글을 전용하는 원칙에 비추어 가능하다면 한글로 전부 바꾸고 뜻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면 한자를 괄호 안에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구체적인 검토 의견은 ‘법령 순화정비 사례(안)’의 ‘검토 의견’ 난을 참조할 것.

이상의 검토 기준에 의해 행해진 의견은 ‘검토 의견’ 난에 대부분 그대로 정리하여 실어 법안 작성에 관계하는 이들이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검토 의견서에 의한’ 검토 의견을 ‘법령 순화정비(안)’에 모두 반영한 것은 아니고 선택적으로 반영하였다. 그리하여 정비안에 반영하지 않은 검토 의견은 그것을 그대로 기술하여 참고할 수 있게 하였고 정비안에 반영한 의견은 검토 의견 뒤에 ‘(반영)’이라는 표시를 하여 반영한 의견과 반영하지 않은 의견을 구분할 수 있게 하였다.

## II. 순화정비 사례(안)

### 일러두기

한자표기의 한글표기와 현행법 체계에 따른 당연 정비어는 「법령용어순화편람」, 법제처(1996)의 참고자료에 나오는 ‘법령의 한글 사용례(종합정리: 1987까지)’와 ‘한글·한자 사용기준(1990. 12. 1)’을 참고하였다.

#### ○ 정비 용어 및 구절

현행란(이하 앞난)과 정비안란(이하 뒷난) 양쪽에 밑줄을 긋고 비고란에 알파벳을 일련기호로 사용하여 설명을 붙였다.

(예: 刑務所長 → a) 矯導所長 비고란; a) 용어의 변화를 반영  
添加進達하여야 → b) 첨가·보고하여야 비고란; b) ‘添加進達’에서 ‘進達’을 고침)

#### ○ 한자어의 한글표기

앞난의 ‘事項’과 같은 진한 한자어 → 시각적 편의를 고려해 뒷난에 아무 표시 없이 한글표기로 바꾸었다.

(예: 事項 → 사항)

#### ○ 띄어쓰기

띄어쓰기를 한 구절은 앞난과 뒷난 양쪽에 밑줄을 긋고 뒷난에는 \*표를 하였다.

(예: 檢察廳檢察官 → \*檢察廳 檢察官)

#### ○ 현행법 체계에 따른 정비어

현행법 체계에 따른 당연 정비어는 앞난과 뒷난 양쪽에 밑줄을 그어 표시하고 비고란에 따로 설명을 붙이지 않았다.

(예: 本法 → 이 법  
前項의 → 第1項의)

1.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 (신규제정 1948·10·9 법률제6호)

(\* 표시 → 띄어쓰기)

현 행	정 비 안
<p>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u>얼마동안</u>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p> <p>부칙</p> <p>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u>얼마 동안</u>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p> <p>부칙</p> <p>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비 고	검 토 의 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안’은 의존명사이므로 띄어써야 한다.( 그 동안, 겨울 동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기 사항 없음.</li> </ul>

2. 國慶日에關한법률 (신규제정 1949·10·1 法律第53號)

(事項 등 진한 한자 → 한글표기)

현 행	정 비 안
<p>第1條 國家의 慶事로운 날을 記念하기 爲하여 國慶日을 定한다.</p> <p>第2條 國慶日是 左와 같다.</p> <p>3·1節 3月 1日</p> <p>制憲節 7月 17日</p> <p>光復節 8月 15日</p> <p>開天節 10月 3日</p> <p>第3條 本法 施行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附則</p> <p>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p>	<p>第1條 (目的) 國家의 慶事로운 날을 記念하기 爲하여 國慶日을 定한다.</p> <p>第2條 (國慶日) 國慶日是 a)다음과 같다.</p> <p>3·1節 3月 1日</p> <p>制憲節 7月 17日</p> <p>光復節 8月 15日</p> <p>開天節 10月 3日</p> <p>第3條 (施行令) b)이 法 施行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附則</p> <p>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p>



3. 赦免法 (신규제정 1948· 8· 30 法律第2號)

(事項 등 진한 한자 → 한글표기)

(\* 표시 → 띄어쓰기)

현 행	정 비 안
<p>第1條 本法은 赦免, 減刑과 復權에 關한 事項을 規定한다.</p>	<p>第1條 (目的) 이 법은 赦免, 減刑과 復權에 관한 사항을 a)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2條 赦免은 一般赦免과 特別赦免으로 한다.</p>	<p>第2條 (赦免의 구분) 赦免은 一般赦免과 特別赦免으로 한다.</p>
<p>第3條 赦免, 減刑과 復權은 左에 列記한 者에 對하여 行한다.</p> <p>1. 一般赦免은 罪를 犯한 者</p> <p>2. 特別赦免과 減刑은 刑의 言渡를 받은 者</p> <p>3. 復權은 刑의 言渡로 因하여 法令의 定한 바에 依한 資格이 喪失 또는 停止된 者</p>	<p>第3條 (赦免, 減刑 및 復權의 對象者) 赦免, 減刑과 復權은 b)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 행한다.</p> <p>1. 一般赦免은 罪를 범한 者</p> <p>2. 特別赦免과 減刑은 刑의 宣告를 받은 者</p> <p>3. 復權은 刑의 c)宣告로 인하여 d)法令에서 정한 바에 의한 資格이 상실 또는 정지된 者</p>
<p>第4條 行政法規違反에 對한 犯則 또는 科罰과 懲戒法規에 依한 懲戒 또는 懲罰의 免除는 赦免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p>	<p>第4條 (行政法規와 懲戒法規 위반자에 대한 赦免) e) *行政法規 위반에 의한 犯則 또는 科罰과 懲戒法規에 의한 懲戒 또는 懲罰의 免除는 赦免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p>
<p>第5條 ①赦免, 減刑과 復權의 效果는 左와 같다.</p> <p>1. 一般赦免은 刑의 言渡의 效力이 喪失되며 刑의 言渡를 받지 않은 者에 對하여는 公訴權이 喪失된다. 但, 特別한 規定이 있을 때에는 g)예외로 한다.</p>	<p>第5條 (赦免, 減刑 및 復權의 효과) ①赦免, 減刑과 復權의 효과는 다음 各號의 1과 같다.</p> <p>1. 一般赦免은 f)刑 宣告의 效力이 상실되며 刑의 宣告를 받지 않은 者에 대하여는 公訴權이 상실된다. 다만, 特別한 規定이 있을 때에는 g)그러하지 아니하다.</p>

비 고	검 토 의 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조목 괄호 속의 표제 검토요</li> <li>a) 현행법 체계를 따라 고침.</li>   <li>b) 가로쓰기에 맞게 고침(이하 유사항목 설명 생략)</li>   <li>c) 법률용어의 변화를 반영</li> <li>d) 어색한 문투를 고침</li>   <li>e) 의미가 불분명한 구절을 고침</li>   <li>f) ‘~의 ~의’ 중복을 띄어쓰기를 사용해 고침(‘<u>刑의 宣告에 의한 효력</u>, <u>刑을 宣告한 효력</u>’도 가능하나 간명치 않은 문제가 있다).</li> <li>g) 현행 체계를 따름.</li>   <li>• 한글표기 추가어(반대: 밑에 ×표시) <u>規定</u>(1조 등), <u>者</u>, <u>罪</u>, <u>免除</u>(4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 ‘... 者에 대하여 → 者에게’ (‘-에 대하여’를 남용하지 말 것. 적절한 조사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대체할 것)</li>   <li>• <u>行政法規</u> → <u>行政法規</u></li> <li>• <u>懲戒法規</u> → <u>懲戒法規</u></li>   <li>• e) → ‘행정 법규/징계 법규를 위반한(어긴) 행위에 대한’</li>   <li>• 5조 1: ‘...者에 대하여는 → ...者の 경우에는’</li> </ul>

(事項 등 진한 한자 → 한글표기)

현 행	정 비 안
<p>2. 特別赦免은 刑의 執行이 免除된다. 但, 特別한 事情이 있을 때에는 爾後刑의 言渡의 效力을 喪失케 할 수 있다.</p> <p>3. 一般에 對한 減刑은 特別한 規定이 없는 境遇에는 刑을 變更한다.</p> <p>4. 特定한 者에 對한 減刑은 刑의 執行을 輕減한다. 但, 特別한 事情이 있을 때에는 刑을 變更할 수 있다.</p> <p>5. 2)復權은 刑의 言渡의 效力으로 因하여 喪失 또는 停止된 資格을 回復한다. ②刑의 言渡에 依한 既成의 效果는 赦免, 減刑과 復權으로 因하여 變更되지 않는다.</p>	<p>2. 特別赦免은 刑의 執行이 免除된다. 다만, 特別한 事情이 있을 때에는 a)特別赦免을 행한 때로부터 b)刑 宣告의 效力을 喪失하게 할 수 있다.</p> <p>3. 一般에 대한 減刑은 特別한 規定이 없는 경우에는 刑을 변경한다.</p> <p>4. 특정한 者에 대한 減刑은 刑의 執行을 輕減한다. 다만, 特別한 事情이 있을 때에는 刑을 변경할 수 있다.</p> <p>5. 復權은 c)刑 宣告의 效力으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資格을 회복한다. ②刑의 宣告에 d)의하여 이미 발생한 效果는 赦免, 減刑과 復權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p>
<p>第6條 復權은 刑의 執行을 終了하지 않은 者 또는 執行의 免除를 받지 않은 者에 對하여는 行하지 않는다.</p>	<p>第6條 (復權의 제한) 復權은 e)刑의 執行이 종료되지 아니한 者 또는 執行의 免除를 받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行하지 아니한다.</p>
<p>第7條 刑의 執行猶豫의 言渡를 받은 者에 對하여는 刑의 言渡의 效力을 喪失케 하는 特別赦免, 刑을 變更하는 減刑 또는 그 猶豫期間을 短縮할 수 있다.</p>	<p>第7條 (執行猶豫 宣告者에 대한 赦免 등) f)刑의 執行猶豫를 宣告받은 者에 대하여는 g)刑 宣告의 效力을 喪失하게 하는 特別赦免, 刑을 변경하는 減刑 또는 h)그 猶豫期間의 단축을 행할 수 있다.</p>
<p>第8條 ①一般赦免, 罪 또는 刑의 種類를 定하여 行하는 減刑과 一般으로 行하는 復權은 大統領令으로 行한다. ②一般赦免은 罪의 種類를 定하여 行한다.</p>	<p>第8條 (施行細則) ①一般赦免, 罪 또는 刑의  종류를 정하여 행하는 減刑 i)또는 一般으로 행하는 復權은 大統領令으로 i')정한다. ②一般赦免은 罪의  종류를 정하여 행한다.</p>

비 고	검 토 의 견
<p>• 각조목 괄호 속의 표제 검토요</p> <p>a) ‘爾後’는 우리말 큰사전에 ‘그 뒤’로 풀이되어 있다.</p> <p>b) ‘~의 ~의’ 중복을 고침.</p> <p>c) 위의 b)와 같다.</p> <p>d) 잘 쓰지 않는 용어를 풀어씀.</p> <p>e) ‘A 또는 B’에서 A와 B는 대등한 성분이어야 한다. : 전자는 능동적 의미이고 후자는 수동적 의미여서 이질적이다</p> <p>f) ‘~의 ~의’와 ‘言渡’를 고침</p> <p>g) c)와 같다.</p> <p>h)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 ‘A, B 또는 C할 수 있다 → A, B 또는 C를 행할 수 있다’</p> <p>i), i’) 현행법 체계에 따라 명사구 나열에 ‘또는’을 사용했고, ‘정한다’로 고침.</p> <p>**8조는 내용상 뒤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p>	<p>• 6조: ‘者에 대하여는 → 者에게는’</p> <p>• 7조: 유예기간 → 유예 기간</p> <p>• 8조: 시행세칙 → 시행 세칙</p> <p>• 8조: ‘減刑 또는 → 減刑, 또는’ (법률에서 여러 항목을 나열할 경우 ‘A, B, C 또는 D’으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또는 D’도 다른 하나의 항목이므로 ‘A, B, C, 또는 D’처럼 쉼표( , )로 분리해야 함)</p>

(事項 등 진한 한자 → 한글표기)

(\* 표시 → 띄어쓰기)

현 행	정 비 안
<p>第9條 特別赦免, 特定한 者에 對한 減刑과 復權은 大統領이 行한다.</p>	<p>第9條 (特別赦免 등의 權限) 特別赦免, 特定한 者에 對한 減刑과 復權은 大統領이 行한다.</p>
<p>第10條 特別赦免, 特定한 者에 對한 減刑과 復權은 法務部長官이 大統領에게 上申한다.</p>	<p>第10條 (特別赦免 등의 建議) 特別赦免, 特定한 者에 對한 減刑과 復權은 法務部長官이 大統領에게 a)建議한다.</p>
<p>第11條 檢察總長은 職權, 刑의 執行을 指揮한 檢察廳檢察官의 報告 또는 受刑者가 在監하는 刑務所長의 報告에 依하여 法務部長官에게 特別赦免 또는 特定한 者에 對한 減刑의 上申을 할 것을 申請할 수 있다.</p>	<p>第11條 (特別赦免 등의 申請) 檢察總長은 職權, 刑의 執行을 指揮한 *檢察廳 檢察官의 보고 또는 受刑者가 b)收監되어 있는 c)矯導所의 長의 보고에 依하여 法務部長官에게 特別赦免 또는 特定한 者에 對한 減刑의 建議를 할 것을 申請할 수 있다.</p>
<p>第12條 ①刑의 執行을 指揮한 檢察廳의 檢察官과 受刑者의 在監하는 刑務所長이 特別赦免 또는 特定한 者에 對한 減刑을 提請코자 하는 때에는 第14條에 規定한 書類를 添附하고 事由를 갖추어 檢察總長에게 報告할 수 있다. ②刑務所長이 前項의 報告書를 提出하는 境遇에는 刑의 執行을 指揮한 檢察廳의 檢察官을 經由하여야 한다.</p>	<p>第12條 (特別赦免 등의 보고) ①刑의 執行을 指揮한 檢察廳의 檢察官과 受刑者가 收監되어 있는 矯導所의 長이 特別赦免 또는 特定한 者에 對한 減刑을 d)提請하고자 하는 때에는 第14條에 規定한 서류를 첨부하고 사유를 갖추어 檢察總長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矯導所長이 第1項의 報告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刑의 執行을 指揮한 檢察廳의 檢察官을  거쳐야 한다.</p>

비 고	검 토 의 견
<p>• 각조목 괄호 속의 표제 검토요</p> <p>a) 잘 쓰이지 않는 어려운 용어를 고침. 이후에도 6번 더 나오는 것을 설명 없이 고침(11조, 15조, 16조, 20조). 다만, 이후에는 '대통령에게'가 생략된 형태로 'X의 上申'이 많이 나오므로 이 법에서의 'X의 建議'는 항상 앞에 '대통령에게'가 생략된 의미라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음.(각주 참조)</p> <p>b) 한문투를 고침</p> <p>c) 용어의 변화를 반영</p> <p>d) 준말 '-코자'를 본래의 말로 고침</p> <p>• 한글표기 추가어(반대: 밑에 ×표시) 指揮, 申請 (이상 11조)</p>	<p>• 11조: '보고, 또는'으로 쉽표 넣을 것.</p> <p>• 11조, 12조: '수형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장'은 의미가 통하지 않는 비문법적 문장이다. '-의'의 반복이 나타나더라도 문법적으로 수정해야 함.(반영)</p>

각주 a) '建議'라는 용어로 정비한 것은 계엄법 제2조6항의 “~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를 참조함. '提請하다'도 고려해 보았으나 이 용어는 이 법에 많이 나오는 '申請하다'와 혼동될 우려가 있어 피했다.

(事項 등 진한 한자 → 한글표기)

(\* 표시 → 띄어쓰기)

현 행	정 비 안
<p>第13條 檢察官이 前條第2項의 <u>書類</u>를 接受한 때에는 第14條第3號에 規定한 事項을 調査하여 그에 對한 意見을 添加進達하여야 한다.</p>	<p>第13條 (檢察官의 서류 접수와 보고) 檢察官이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第14條第3號에 規定한 사항을 調査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a)첨가·보고하여야 한다.</p>
<p>第14條 特別赦免 또는 特定한 者에 對한 減刑의 上申을 申請하는 書狀에는 左의 書類를 添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判決書의 謄本 또는 抄本</li> <li>2. 刑期計算書</li> <li>3. 犯罪의 情狀, 本人의 性行, 受刑中의 行狀, 將來의 生計 其他 參考될 事項에 關한 調査書類</li> </ol>	<p>第14條 (特別赦免 등의 建議 申請書) 特別赦免 또는 特定한 者에 대한 b)減刑의 建議을 申請하는 申請書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判決書의 謄本 또는 抄本</li> <li>2. 刑期 計算書</li> <li>3. 犯罪의 c)情況, 本人의 性品과 行實, 受刑 중의 태도, 장래의 生計 기타 참고될 사항에 關한 調査 書類</li> </ol>
<p>第15條 ①檢察總長은 職權, 刑의 執行을 指揮한 檢察廳의 檢察官의 報告 또는 事件本人의 出願에 依하여 法務部長官에게 特定한 者에 對한 復權의 上申을 할 것을 申請할 수 있다.</p> <p>②前項의 <u>上申의 申請은 刑의 執行終了日 또는 執行의 免除된 日로부터 3年이 經過하지 않으면 하지 못한다.</u></p>	<p>第15條 (復權의 建議 申請) ①檢察總長은 職權, 刑의 執行을 指揮한 *檢察廳 檢察官의 보고 또는 事件 本人의 出願에 의하여 法務部長官에게 特定한 者에 대한 復權의 建議을 할 것을 申請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議의 申請은 d)刑의 執行이 종료된 날 또는 執行이 免除된 날로부터 3年이 經過하지 아니하면 e)할 수 없다.</p>
<p>第16條 復權의 上申을 申請하는 書狀에는 左의 書類를 添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判決書의 謄本 또는 抄本</li> </ol>	<p>第16條 (復權의 建議 申請書) f)復權의 建議을 申請하는 申請書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判決書의 謄本 또는 抄本</li> </ol>

비 고	검 토 의 견
<p>• 각조목 괄호 속의 표제 검토요</p> <p>a) '添加進達'에서 '進達'을 고침</p> <p>b) '법률의 한글사용례(종합정리)'에 書狀'은 '서류'로 쓰기로 되어있으므로 문맥에 따라 고쳤다.</p> <p>c) '情狀, 性行, 行狀' 등의 잘 쓰지 않는 말을 고침</p> <p>d) 'A 또는 B'에서 A와 B를 대등한 성분으로 고침</p> <p>e) 표현을 바꿈.</p> <p>f) b)와 같다.</p> <p>• 한글표기 추가어(반대: 밑에 ×표시) 第12條第2項(13조 등)</p>	<p>• 14조 2: 형기계산서 → 형기 계산서(반영)</p> <p>• 14조 3: 장래의 생계, 기타 (법률에서 여러 항목을 나열할 경우 'A, B, C 기타'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기타'도 또 하나의 항목이므로 'A, B, C, 기타'처럼 쉼표( , )로 분리해야 함)</p> <p>• 14조 3: 조사 서류(띄어쓰기) (반영)</p> <p>• 15조 1항: 사건 본인(띄어쓰기) (반영)</p> <p>• 15조 2항: '경과하지 → 지나지'</p>

(事項 등 진한 한자 → 한글표기)

( \*표시 → 띄어쓰기)

현 행	정 비 안
<p>2. 刑의 執行終了 또는 執行의 免除된 것을 證明하는 書類</p> <p>3. 刑의 執行終了後 또는 執行이 免除된 後의 本人의 行狀, 現在와 將來의 生計 其他 參考될 事項에 關한 調査書類</p> <p>4. 事件本人이 出願한 때에는 그 出願書</p> <p>第17條 特定한 資格에 對한 復權의 出願에는 回復코자 하는 資格의 種類를 明記하여야 한다.</p> <p>第18條 復權을 事件本人이 出願하는 境遇에는 刑의 執行을 指揮한 檢察廳의 檢察官을 經由하여야 한다.</p> <p>第19條 檢察官이 前條의 書類를 받은 때에는 第16條第3號에 規定한 事項을 調査하여 그에 對한 意見을 添加進達하여야 한다.</p> <p>第20條 ①特別赦免, 減刑 또는 復權上申의 申請이 理由없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法務部長官은 그 뜻을 檢察總長에게 通知한다.</p> <p>②檢察總長은 前項의 事由를 關係檢察廳의 檢察官, 刑務所長 또는 事件本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p>	<p>2. 刑의 a)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것을 證明하는 서류</p> <p>3. 刑의 b)執行이 종료된 후 또는 執行이 免除된 後의 本人의 行實, 현재와 장래의 生計 기타 참고될 사항에 關한 調査書類</p> <p>4. 事件本人이 出願한 때에는 그 出願書</p> <p>第17條 (特定 資格에 대한 復權의 出願) 특정한 資格에 대한 復權의 出願에는  회복하고자 하는 資格의 종류를 明記하여야 한다.</p> <p>第18條 (復權 出願의 節次) 復權을 事件本人이 出願하는 경우에는 刑의 執行을 指揮한 檢察廳의 檢察官을 거쳐야 한다.</p> <p>第19條 (檢察官의 書類 調査 등) 檢察官이 第18條의 서류를 받은 때에는 第16條第3號에 規定한 사항을 調査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c)첨가·보고하여야 한다.</p> <p>第20條 (特別赦免 등의 建議 거부의 통지) ① d)法務部長官은 e)特別赦免, 減刑 또는 復權의 建議에 대한 申請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뜻을 檢察總長에게 통지한다.</p> <p>②檢察總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유를 통보받은 때에는 )*關係 檢察廳의 檢察官, 矯導所長 또는 事件本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비 고	검 토 의 견
<p>• 각조목 괄호 속의 표제 검토요</p> <p>a) ‘A 또는 B’에서 A와 B를 대등한 성분으로 고치고, 연결어미를 ‘-거나’로 고침.</p> <p>b) ‘A 또는 B’에서 A와 B를 대등한 성분으로 고침.</p> <p>c) ‘添加進達’에서 ‘進達’을 고침.</p> <p>d) 주어를 앞으로 이동함.</p> <p>e) [[특별사면, 감형 또는 복권] 상신]으로 ‘上申’이 전체의 피수식어이므로 붙여 쓸 수 없다.</p>	<p>• 16조 3: 생계, 기타</p> <p>• 16조 3: 조사 서류(띄어쓰기) (반영)</p> <p>• 16조 4, 18조: 사건 본인(띄어쓰기) (반영)</p> <p>• 19조: ‘제16조 제3호에’(법률에서 조·항·호 등을 붙여쓰는 것은 잘못된 관행)</p> <p>• 20조: ‘특별사면, 감형, 또는 복권의’( ①A 또는 B ②A, B, 또는 C ③A, B 또는 C ②는 A, B, C가 대등한 자격을 지닌 경우이다. ③은 (A)와, (B 또는 C)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12조는 ②로 표기되어야 한다.</p>

(事項 등 진한 한자 → 한글표기)

(\* 표시 → 띄어쓰기)

현 행	정 비 안
<p>第21條 大統領으로부터 特別赦免, 減刑 또는 復權의 命이 있을 때에는 法務部長官은 檢察總長에게 赦免狀, 減刑狀 또는 復權狀을 送付한다.</p>	<p>第21條 (赦免狀 등의 송부) a)法務部長官은 大統領으로부터 特別赦免, 減刑 또는 復權의 命이 있을 때에는 檢察總長에게 赦免狀, 減刑狀 또는 復權狀을 송부한다.</p>
<p>第22條 檢察總長이 赦免狀, 減刑狀 또는 復權狀을 接受한 때에는 關係檢察廳의 檢察官을 經由하여 遲滯없이 事件本人에게 付與한다. 事件本人이 在監中인 때에는 刑務所長을 經由한다.</p>	<p>第22條 (赦免狀 등의 통지) 檢察總長이 赦免狀, 減刑狀 또는 復權狀을 접수한 때에는 *關係 檢察廳의 檢察官을 거쳐 지체없이 事件 本人에게 傳達한다. 事件 本人이 *收監 중인 때에는 矯導所長을 거친다.</p>
<p>第23條 ①檢察官이 執行停止中 또는 假出所中에 있는 者에 對한 赦免狀, 減刑狀 또는 復權狀을 接受한 때에는 그 뜻을 事件本人이 在監하던 刑務所長과 監督警察官署에 通知하여야 한다.</p>	<p>第23條 (赦免狀 등의 통지) ①檢察官이 *執行停止 중 또는 *假出所 중에 있는 者에 대한 赦免狀, 減刑狀 또는 復權狀을 접수한 때에는 그 뜻을 事件 本人이 收監되어 있던 矯導所의 長과 *監督 警察官署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②執行猶豫中에 있는 者에 對한 特別赦免, 減刑 또는 復權이 있는 境遇에는 監督警察官署에 通知하여야 한다.</p>	<p>②b)*執行猶豫 중에 있는 者에 대한 特別赦免, 減刑 또는 復權이 있는 경우에는 *監督 警察官署에 통지하여야 한다.</p>
<p>第24條 ①事件本人이 刑의 執行을 指揮한 檢察廳의 管轄區域外에 居住하는 때에는 赦免狀, 減刑狀 또는 復權狀의 付與를 그 居住地를 管轄하는 檢察廳의 檢察官에게 囑託할 수 있다.</p>	<p>第24條 (特別赦免狀 등의 촉탁) ①事件 本人이 刑의 執行을 指揮한 檢察廳의 c)*管轄 區域 外에 居住하는 때에는 赦免狀, 減刑狀 또는 復權狀의  부여를 그 居住地를 管轄하는 檢察廳의 檢察官에게 촉탁할 수 있다.</p>
<p>②前項의 境遇에 第23條에 規定한 事項은 囑託받은 檢察廳의 檢察官이 行한다.</p>	<p>②第1項의 경우에 第23條에 規定한 사항은 촉탁받은 檢察廳의 檢察官이 행한다.</p>

비 고	검 토 의 건
<p>• 각조목 괄호 속의 표제 검토요</p> <p>a) 주어를 문두로 이동시킴.</p> <p>b), c) 현행대로 '執行猶豫중에'와 '管轄區域외에'로 표기하는 방식은 한자·한글을 혼용한다는 문제점이 있고, 붙여쓰는 것은 한 단어(복합어)로 처리하는 것인데 이는 句로 보는 것이 옳다. 그러므로 한글표기를 하면서 띄어쓴 것이다.</p>	<p>• 21조: 감형, 또는 복권의(씽표 첨가)</p> <p>• 22조: 사건 본인 (띄어쓰기) (반영) *** 참조</p> <p>• 22조: '부여한다 → 전달한다' (현행의 '付與'가 모호함. '附與'는 추상적인 권한, 임무 등에 쓰는 말임. 내용으로 보아 '賦與'일 가능성이 있음. 의미에 맞게 '전달한다, 건네준다' 등 새로운 표현으로 손질할 것) (검토 의견 반영; 다만, '傳達한다'로 바꾸어 반영했음)</p> <p>• 23조: 수감되어 있던 교도소의 장 (반영)</p> <p>• 24조: 관할 구역(띄어쓰기) (반영)</p> <p>• 24조: 관할구역 외에 → 관할 구역 밖에('외에'는 보통 except의 의미로 굳어져 쓰임)</p>

\*\*\* 이하 검토 의견에 의하여 띄어쓰기를 반영한 곳은 '현행'란에는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고 '정비안'란에 밑줄만 긋고 띄어썼다.

(事項 등 진한 한자 → 한글표기)

(\* 표시 → 띄어쓰기)

현 행	정 비 안
<p>第25條 ①赦免, 減刑 또는 復權이 있을 때에는 刑의 執行을 指揮한 檢察廳의 檢察官은 判決原本에 그 事由를 附記하여야 한다.</p> <p>②特別赦免, 減刑과 復權에 關한 書類는 訴訟記錄에 編綴한다.</p> <p>第26條 檢察官이 赦免狀, 減刑狀 또는 復權狀을 事件本人에게 付與한 때에는 遲滯없이 法務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p> <p>第27條 軍事法廷에서 刑의 言渡를 받은 者에 對하여는 法務部長官의 職務는 國防部長官이 行하고 檢察總長과 檢察官의 職務는 刑을 言渡한 軍事法廷에서 檢察官의 職務를 行한 法務官이 行한다.</p> <p>附則</p> <p>本法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p>	<p>第25條 (서류 등의 기록·保管) ①赦免, 減刑 또는 復權이 있을 때에는 刑의 執行을 指揮한 檢察廳의 檢察官은 判決原本에 그 사유를 附記하여야 한다.</p> <p>②特別赦免, 減刑과 復權에 관한 서류는 訴訟記錄과 a)함께 보관한다.</p> <p>第26條 (赦免狀 등의 통지 후 報告) 檢察官이 赦免狀, 減刑狀 또는 復權狀을 事件 本人에게 傳達한 때에는 지체없이 法務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第27條 (軍事法定에서의 적용 등) 軍事法廷에서 刑의 宣告를 받은 者에 대하여 赦免, 減刑 또는 復權을 行할 경우 法務部長官의 職務는 國防部長官이 行하고 檢察總長과 檢察官의 職務는 刑을 宣告한 軍事法廷에서 檢察官의 職務를 行한 法務官이 行한다.</p> <p>附則</p> <p>이 법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p>

비 고	검 토 의 건
<p>a) 어려운 용어를 고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조: 감형, 또는 복권(선표 첨가)</li> <li>• 25조: 판결 원본, 소송 기록(띄어쓰기)</li> <li>• 26조: 부여한 → 전달한(반영. 다만, ‘傳達한’으로 반영)</li> <li>• 27조: ‘군사법정’은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고 붙여쓸 수도 있다.</li> <li>• 27조: ‘... 者에게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행할 경우’(뜻을 쉽게 알 수 있게 명확히 기술함)(반영)</li> </ul>

#### 4. 法院災難에基因한民刑事事件臨時措置法

(신규제정 1950·3·22 法律第113號)

(事項 등 진한 한자 → 한글표기)

(\* 표시 → 띄어쓰기)

현 행	정 비 안
<p>第1條 本法은 法院이 火災, 事變 其他 災難으로 因하여 3)訴訟記錄의 滅失을 當하였을 境遇의 民刑事訴訟事件의 迅速處理를 하기 爲한 臨時措置를 目的으로 한다.</p>	<p>第1條 (目的) 이 法은 法院이 火災, 事變 기타 災難으로 인하여 a)訴訟 記錄이 滅失되었을 경우에 民刑事訴訟事件을 b)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c)臨時措置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2條 前條의 ___ 災難이 發生할 때에는 訴訟關係人及檢事는 6月以內에 1)當該法院에 對하여 左의 節次를 取하여야 한다.</p> <p>1. 原告, 申請人, 申立人 또는 上訴人은 訴狀, 申請書, 申立書 或은 上訴狀의 副本及 事件繫屬의 疏明方法의 提出</p> <p>2. 檢事는 公訴事實과 그 維持에 對한 資料의 提出</p>	<p>第2條 (節次 등) 第1條에서 規定한 災難이 d)발생한 때에는 e)*訴訟 關係人 및 檢事는 *6月 이내에 *당해 法院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節次를 취하여야 한다.</p> <p>1. 原告, 申請人, f)申告人 또는 上訴人은 訴狀, 申請書, f')申告書 또는 上訴狀의 g)副本 및 事件과 관련된 疏明 方法의 제출</p> <p>2. 檢事는 公訴事實과 그 유지에 대한 資料의 제출</p>
<p>第3條 前條의 ___ 訴訟關係人 또는 檢사가 前條所定期間에 前條所定の 節次를 取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訴, 申請, 申立, 上訴는 取下로, 公訴는 取消로 看做한다.</p>	<p>第3條 (節次 不履行時의 擬制) 第2條의 *訴訟 關係人 또는 檢사가 h)第2條에서 規定한 期間과 節次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訴, 申請, f')申告, 上訴는 取下로, 公訴는 取消로 i)본다.</p>

비 고	검 토 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조목 괄호 속의 표제 검토요.</li> <li>a) 쉬운 표현으로 고침.</li> <li>b) 한문투를 고침.</li> <li>c) 현재의 법안 표현으로 고침.</li> <li>d) 시제를 사건시 기준 현재로 고침.</li> <li>e.) A及B → A 및 B. 그리고 ‘소송’이 [관계인 및 검사]를 수식하므로 띄어썼다. 이하의 동일용어도 같다.</li> <li>f), f'), f'') ‘우리말 큰사전’과 ‘법제처(1996)’에는 ‘申請’으로 풀이되어 있어 바로 앞 단어인 ‘申請’과 구분이 안된다. (일단 ‘申告(人)’로 고쳤으나, 법률적 검토요망)</li> <li>g) A及B → A 및 B. 그리고 ‘繫屬’을 고침.</li> <li>h) 條의 중복을 합치고 ‘所定’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함. ‘정한’은 ‘정하여진’으로도 가능.</li> <li>i) 한자어를 고유어로 고침.</li> </ul> <p>• 한글표기 추가어(반대: 밑에 ×표시) 節次(2조 3행), 資料(2조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조: ‘이 법은 화재, 사변,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법원의 소송 기록이 멸실 되었을/없어졌을 경우에 민형사 소송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써야 함) (참고해 반영)</li> <li>• 2조: ‘당해 → 그’로 쉽게 씀.</li> <li>• 2조 1: 소명 방법(띄어쓰기) (반영)</li> <li>• 2조 2: 공소 사실(띄어쓰기)</li> </ul>

(事項 등 진한 한자 → 한글표기)

(\* 표시 → 띄어쓰기)

현 행	정 비 안
<p>第4條 第1條의 災難이 發生한 때에는 當該 法院長은 第2條의 訴訟關係인이 提出할 具體的인 疏明方法及提出期日을 當該 法院管轄의 地方法院所在地에서 發刊하는 日刊新聞에 2回以上 公告하여야 한다.</p> <p>附則</p> <p>第5條 本法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p> <p>第6條 本法은 本法 施行前에 法院災難의 境遇에도 適用한다. 但, 第2條의 期間은 本法 施行日부터 4月로 한다.</p>	<p>第4條 (公告) 第1條에 規定한 災難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法院長은 第2條에 規定한 *訴訟 關係인이 제출할 구체적인 a)疏明 方法 및 提出 期日을 當해 法院 管轄의 *地方法院 所在地에서 發刊하는 日刊 新聞에 *2回 이상 公告하여야 한다.</p> <p>附則</p> <p>b)①이 法은 b')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p> <p>②c)이 法 *施行 전에  발생한 法院 災難에 基因하여 행한 처분, 節次 기타 행위는 이 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第2條의 기간은 이 法을 施行한 날로부터 4月로 한다.</p>

비 고	검 토 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조목 괄호 속의 표제 검토요</li> <li>a) A及B → A 및 B</li> <li>b), b') 현행법 체계를 따름.</li> <li>c) 현행법 문체에 따른 정비.</li> <li>• 한글표기 추가어(반대: 밑에 ×표시) 2回(4조 4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조: 당해 → 그</li> <li>• 4조: 소명 방법(반영) 제출 기일(반영) 일간 신문(반영) 법원 재난(반영) 이상 띄어쓰기임.</li> <li>• 부칙 2항: 절차, 기타 행위는(선표 첨가)</li> </ul>

5. 身元保證法 (신규제정 1957·10·5 法律第449號)

(事項 등 진한 한자 → 한글표기)

(\* 표시 → 띄어쓰기)

현 행	정 비 안
<p>第1條 (目的과 定義) ①本法은 身元保證關係를 適切히 規律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p> <p>②本法에서 身元保證契約이라 함은 引受, 保證 其他 名稱의 如何를 不問하고 被用者의 行爲로 因하여 使用者가 받은 損害를 賠償하는 것을 約定하는 契約을 말한다.</p>	<p>第1條 (目的) 이 法은 *身元保證關係를 適切히 規律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2條 (定義) 이 法에서 *身元保證 契約"이라 함은 引受, 保證 기타 a)名稱이 어 떠한가를 불문하고 b)被使用者의 行위로 인하여 使用者가 받은 損害를 c)身元保證人이 賠償할 것을 約定하는 契約을 말한다.</p>
<p>第2條 (身元保證契約의 存續期間) 期間을 定하지 아니한 身元保證契約은 그 成立日로부터 3年間 그 效力을 가진다. 但, 技能習得者의 身元保證契約期間은 5年으로 한다.</p>	<p>第3條 (契約의 d)存續 期間) ①d')기간을 定하지 아니한 *身元保證 契約은 그 成立日로부터 3年間 e) 效力을 가진다. 但, 技能習得者의 *身元保證 契約期間은 5年으로 한다.</p>
<p>第3條 (同前) ①身元保證契約의 期間은 5年을 超過하지 못한다. 이보다 長期間을 定한 때에는 그 期間은 이를 5年으로 短縮한다.</p> <p>②身元保證契約은 이를 更新할 수 있다. 但, 그 期間은 更新時부터 5年을 超過하지 못한다.</p>	<p>②*身元保證 契約의  기간은 5年을  초과하지 못한다. f)5年을  초과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은  이를  5年으로  분다.</p> <p>③*身元保證 契約은  이를  更新할  수  있다.  但,  그  기간은  g)更新한  때로부터  5年을  초과하지  못한다.</p>
<p>第4條 (使用者의 通知義務) 使用者는  다음의 境遇에는 遲滯없이 身元保證人에 通知하여야 한다.</p> <p>1. 被用者가 業務上 不適任하거나 不誠實한 事跡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身元保證人의 責任을 惹起할 念慮가 있음을 안 때</p> <p>2. 被用者의 任務 또는 任地를 變更함으로써 身元保證人의 責任을 加重하거나 또는 그 監督이 困難하게 될 때</p>	<p>第4條 (使用者의 通知義務) 使用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身元保證人h)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1. 被使用者가 業務上 i)不適格하거나 不誠實한 i')行跡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身元保證人의 責任을 惹起할  염려가 있음을 안 때</p> <p>2. 被使用者의 任務 또는 任地를 변경함으로써 身元保證人의 責任을 加重하거나 또는 그 監督이  곤란하게  될  때</p>

비 고	검 토 의 건
<p>** 1~3조와 각항목의 배열을 고침.</p> <p>a) 쉬운 말로 풀어씀.</p> <p>b) ‘被用者’는 어려운 용어이다. ‘우리 말 큰사전’에도 등재되지 않고, 오석락(1993) ‘법률학 사전’에도 실려 있지 않은 어휘이다. 후자에 ‘被用者特許’라는 용어는 나온다. → ‘被使用者’로 고침.(이하 5번 더 나옴)</p> <p>c) ‘배상하다’의 주어를 보충해 의미를 분명히 하고, 시제를 미래로(賠償하는 → 賠償할) 고침.</p> <p>d), d’) ‘期間’의 표기: ‘存續期間’이나 ‘身元保證 契約期間’일 때는 앞 단어와의 통일을 위해 한자로 표기했고, ‘기간’이 한 단어로 쓰이는 경우는 한글로 표기함. (‘通知義務’와 ‘통지’의 차이도 마찬가지다.)</p> <p>e) ‘그’의 중복으로 삭제.</p> <p>f) 법률 문체로 고침.</p> <p>g) 한문투를 풀어썼다.</p> <p>h) ‘有情性’에 쓰이는 ‘-에게’로 조사를 고침.</p> <p>i), i’) 쓰이지 않는 용어를 쉬운 용어로 고침(각주 참조).</p> <p>• 한글표기 추가어(반대: 밑에 ×표시) 目的, 責任, 惹起 (이상 4조 1)</p>	<p>• ‘身元保證(6번 사용)’은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고 붙여쓸 수도 있음.</p> <p>• 3조: 존속 기간(반영) 기능 습득자(반영) 계약 기간(반영) 통지 의무(반영) 이상 띄어쓰기임.</p> <p>• 3조: 초과하지, 초과한 → 넘지, 넘는</p> <p>• 4조 1: ‘신원 보증인이 책임질 일을 야기할/일으킬’(자연스럽고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함)</p>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CD(법제연구원 1998)’ 검색결과 ‘不適任’은 전체 법령에서 6번만 쓰임(담보부사채신탁법: 1개, 민법: 1개, 상법: 3개, 신원보증법 1개).

현 행	정 비 안
<p>第5條 (保證人の 契約解止權) ①身元保證人は 前條의 通知를 받은 때에는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身元保證人이 스스로 前條第1號와 第2號의 事實이 있음을 안 때 도 또한 같다.</p> <p>②被用者の 故意 또는 過失이 있는 行爲로 發生한 損害를 身元保證人이 賠償한 때에는 身元保證人は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p> <p>第6條 (保證責任의 限度) 法院은 身元保證人の 損害賠償의 責任과 그 金額을 定함에 있어 被用者の 監督에 關한 使用者의 過失의 有無, 身元保證人이 身元保證을 하게 된 事由 및 이를 함에 있어서 注意를 한 程度, 被用者の 任務 또는 身元의 變化 其他 一切의 事物을 參酌한다.</p> <p>第7條 (身元保證契約의 相續性) 身元保證契約은 保證人の 死亡으로 그 效力을 喪失한다.</p> <p>第8條 (不利益禁止) 本法의 規定에 反하는 特約으로서 身元保證人에 不利益한 것은 모두 이를 無效로 한다.</p> <p>附則</p> <p>①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p> <p>②本法은 本法 施行前에 成立한 身元保證契約에도 이를 適用한다.</p> <p>③本法 施行當時의 他法令에서 身元保證에 關한 法律이라 함은 本法을 指稱하는 것으로 한다.</p> <p>④朝鮮民事令 第1條第3의2號는 이를 削除한다.</p>	<p>第5條 (保證人の 契約解止權) ①身元保證人は 第4條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身元保證人이 스스로 第4條 a)各號의 規定에 의한 사실이 있음을 안 때 도 또한 같다.</p> <p>②被使用者의 故意 또는 過失이 있는 行위로  발생한 損害를 身元保證人이 賠償한 때에는 身元保證人は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p> <p>第6條 (保證 責任의 限度) 法院은 身元保證人の 損害賠償의 責任과 그 金額을 定함에 있어 被使用者의 監督에 關한 使用者의 過失의 有無, 身元保證人이 身元保證을 하게 된 사유 및 이를 함에 있어서 주의를 한 정도, 被使用者의 임무 또는 身元의 變化 기타 일체의 b)事情을 參酌한다.</p> <p>第7條 (*身元保證 契約의 相續性) *身元保證 契約은 保證人の 死亡으로 그 效力을 喪失한다.</p> <p>第8條 (불이익금지) 이 法의 規定에 反하는 特約으로서 身元保證人c)에게 불이익한 것은 모두 이를 無效로 한다.</p> <p>附則</p> <p>①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p> <p>②이 法은 이 法 施行 전에 成立한 *身元保證 契約에도 이를  적용한다.</p> <p>③이 法 *施行 d)당시에 다른 法令에서 身元保證에 關한 法律이라 함은 이 法을 指稱하는 것으로 한다.</p> <p>④朝鮮民事令 第1條第3의2號는 이를 削除한다.</p>

비 고	검 토 의 견
<p>a) 법률적 문체로 바꿈.</p> <p>b) 일상적으로 쓰이지 않는 용어를 바꾼 것.</p> <p>c) ‘有情性’에 쓰이는 ‘-에게’로 조사를 고침.</p> <p>d) ‘-의’를 ‘-에’로 고침.</p> <p>• 한글표기 추가어(반대: 밑에 ×표시)  <b>變化</b>(6조 5행), <b>死亡</b>(7조), <b>無效</b>(8조), <b>施行</b>(부칙 1 등), <b>指稱</b>(부칙 3), <b>削除</b>(부칙 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원 보증(인)’ (총 8번) 붙여쓸 수 있음.</li> <li>• 5조 제목: 계약 해지권(띄어쓰기)</li>   <li>• 6조: 보증 책임(띄어쓰기)(반영)</li> <li>• 6조: 신원의 변화, 기타(쉼표 첨가)</li> </ul>

6. 外國人의 署名捺印에 關한 法律 (신규제정 1958· 7· 12 法律第488號)

(事項 등 진한 한자 → 한글표기)

(\* 표시 → 띄어쓰기)

현 행	정 비 안
<p>法令의 規定에 依하여 署名捺印(記名捺印)도 包含한다. 以下 같다)하여야 할 境遇나 또는 捺印만을 하여야 할 境遇에 外國人은 署名만으로써 <u>이에</u> 代身할 수 있다. 但, 그 外國人이 署名捺印의 制度를 가지는 國家에 屬하는 때에는 <u>本法</u>를 適用하지 아니한다.</p> <p>附則</p> <p>① <u>本法</u>은 公布한 날로부터 <u>이를</u> 施行한다.</p> <p>② 朝鮮民事令 第1條第15號는 <u>이를</u> 削除한다.</p>	<p>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署名捺印(記名捺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할 경우나 또는 捺印만을 하여야 할 경우에 外國人은 署名만으로써 <u>이를</u> 대신할 수 있다. <u>다만</u>, 그 外國人이 署名捺印의 制度를 가지는 國家에 속하는 때에는 <u>이法</u>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附則</p> <p>① <u>이 法</u>은 公布한 날로부터 a)___ 施行한다.</p> <p>② 朝鮮民事令 第1條第15號는 削除한다.</p>

비 고	검 토 의 견
<p>a) 불필요한 부분 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글표기 추가어(반대: 밑에 ×표시) 規定, 制度</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명 날인, 기명 날인(붙여쓸 수도 있다.)</li> <li>• 부칙 2항: ‘이름’ 삭제(반영)</li> </ul>

## 7. 民法・民事訴訟法施行에關한臨時措置法

(신규제정 1960· 7· 1 法律第556號)

(事項 등 진한 한자 → 한글표기)

(\* 표시 → 띄어쓰기)

현 행	정 비 안
<p>檀紀 4293年 1月 1日부터 施行되는 民法과 檀紀 4293年 7月 1日부터 施行되는 民事訴訟法の 施行에 關하여 他法律에서 廢止된 民法과 民事訴訟法の 條項을 引用한 境遇에는 그에 代置하여 民法 또는 民事訴訟法の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看做한다.</p> <p>附則</p> <p>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p>	<p>西紀 1960年 1月 1日부터 施行되는 民法과 西紀 1960年 7月 1日부터 施行되는 民事訴訟法の a)施行과 관련하여 다른 法律에서 廢止된 民法과 民事訴訟法の 條項을 인용한 경우에는 b)그것과 代置된 새로운 民法 또는 民事訴訟法の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附則</p> <p>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p>

비 고	검 토 의 견
<p>a), b) 두 곳 모두 문맥의 의미가 불확실한 것을 고침.</p> <p>• 한글표기 추가어(반대: 밑에 ×표시)  年, 月, 日, 廢止(3행), 代置(4행), 施行(부칙)</p>	<p>• 특기 사항 없음.</p>

8. 年號에關한法律 (신규제정 1961·12·2 法律第775號)

(事項 등 진한 한자 → 한글표기)

(\* 표시 → 띄어쓰기)

현 행	정 비 안
<p>大韓民國의 公用年號는 西曆紀元으로 한다.</p> <p>附則</p> <p>①本法은 西紀 1962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p> <p>②法律 第4號 年號에關한法律은 이를 廢止한다.</p> <p>③本法 施行當時의 公文書中 檀紀로 表示된 年代는 當該 檀紀年代에서 2333年을 減하여 이를 西曆年代로 看做한다.</p> <p>④年代訂正에 있어서는 公文書訂正에 關한 他法令의 規定에 不拘하고 當該 公文書의 書式에 適合하도록 年代訂正印을 使用하여 訂正할 수 있다.</p>	<p>大韓民國의 公用 年號는 西曆紀元으로 한다.</p> <p>附則</p> <p>①이 法은 西紀 1962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p> <p>②法律 第4號 年號에關한法律은 廢止한다.</p> <p>③이 法 *施行 당시의 *公文書 中 檀紀로 표시된 年代는 當해 *檀紀 年代에서 2333年을 減하여 이를 *西曆 年代로 본다.</p> <p>④*年代 訂正에 있어서는 *公文書 訂正에 관한 다른 法令의 a)規定에도 불구하고 當해 公文書의 書式에  적합하도록 *年代 訂正印을 사용하여 訂正할 수 있다.</p>

비 고	검 토 의 견
<p>a)規定에 불구하고 → 規定에도 불구하고 : 어색한 어투를 고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용 연호(띄어쓰기)(반영)</li> <li>• 부칙 2항: '이름'의 삭제(반영)</li> <li>• 부칙 3, 4항: 당해 → 그</li> <li>• 부칙 3항: 감하여 → 빼어(서)</li> </ul>

9. 國葬・國民葬에 관한法律 (신규제정 1967· 1· 16 法律第1884號)

(事項 등 진한 한자 → 한글표기)

(\* 표시 → 띄어쓰기)

현 행	정 비 안
<p>第1條 (目的) 이 法은 國家 또는 社會에 現저한 功勳을 남김으로써 國民의 推仰을 받는 者가 逝去한  때에 그 葬儀를 敬虔하고 嚴肅하게 執行하는데  필요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1條 (目的) 이 法은 國家 또는 社會에 現저한 功勳을 남김으로써 國民의 推仰을 받는 者가 逝去한  때에 그 葬儀를 敬虔하고  엄숙하게 a)*執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2條 (葬儀區分) 이 法에 의한 葬儀는 國葬과 國民葬으로 區分한다.</p>	<p>第2條 (b)葬儀 區分) 이 法에 의한 葬儀는 國葬과 國民葬으로 구분한다.</p>
<p>第3條 (國葬 및 國民葬 對象者)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逝去한  때에는 主務部長官의 提請으로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이 決定하는  바에 따라 이를 國葬 또는 國民葬으로 할 수 있다.</p> <p>1. 大統領의 職에 있었던 者</p> <p>2. 國家 또는 社會에 現저한 功勳을 남김으로써 國民의 推仰을 받은 者</p>	<p>第3條 (國葬 및 國民葬 對象者)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逝去한  때에는 主務部長官의 提請으로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이 決定하는  바에 따라 이를 國葬 또는 國民葬으로 할 수 있다.</p> <p>1. 大統領의 職에 있었던 者</p> <p>2. 國家 또는 社會에 現저한 功勳을 남김으로써 國民의 推仰을 받은 者</p>
<p>第4條 (葬儀委員會의 設置) ①國葬 및 國民葬의 葬儀를 執行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國葬 또는 國民葬葬儀委員會를 둘 수 있다.</p> <p>②葬儀委員會의 構成과 運用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4條 (葬儀委員會의 設置) ①國葬 및 國民葬의 葬儀를 執行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國葬 또는 c)*國民葬 葬儀委員會를 둘 수 있다.</p> <p>②葬儀委員會의  구성과 運用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비 고	검 토 의 건
<p>a) 불완전 명사 ‘데’이다.</p> <p>b) ‘葬儀 구분’으로 할 수 있으나, 다른 조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한자를 그대로 두고 붙여썼다.(검토의견을 따라 띄어쓰)</p> <p>c) ‘國葬’과도 대응하므로 띄어써야 한다.</p> <p>• 한글표기 추가어(반대: 밑에 ×표시)  <b>敬虔</b>(1조: ‘虔’은 잘 쓰이지 않음),  <b>執行</b>(1조), <b>決定</b>(3조), <b>設置</b>(4조 표제)</p>	<p>• 1조, 2조 2: 현저한 → 뚜렷한(반영)</p> <p>• 2조 제목: 장의 구분(띄어쓰기)(반영)</p> <p>• 3조 2행: 주무부 장관(띄어쓰기)(반영)</p>

(事項 등 진한 한자 → 한글표기)

(\* 표시 → 띄어쓰기)

현 행	정 비 안
<p>第5條 (葬儀費用) ①國葬에 소요되는 費用은 그 全額을 國庫에서 부담한다.</p> <p>②國民葬에 소요되는 費用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그 一部를 國庫에서 補助할 수 있다.</p>	<p>第5條 (葬儀 費用) ①國葬에 소요되는 費用은 그 全額을 國庫에서 부담한다.</p> <p>②國民葬에 소요되는 費用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그 일부를 國庫에서 보조할 수 있다.</p>
<p>第6條 (弔旗揭揚) ①國葬期間중과 國民葬日에는 弔旗를 揭揚한다.</p> <p>②國葬日에는 官公署는 休務한다.</p>	<p>第6條 (弔旗 揭揚) ①*國葬 期間 중과 國民葬日에는 弔旗를 揭揚한다.</p> <p>②國葬日에는 官公署는 休務한다.</p>
<p>第7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7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附則</p>	<p>附則</p>
<p>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p>	<p>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p>

비 고	검 토 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글표기 추가어(반대: 밑에 ×표시) 費用(5조 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조 제목: 장의 비용(띄어쓰기)(반영)</li> <li>• 6조 제목: 조기 계양(띄어쓰기)(반영)</li> <li>• 6조 1항: 계양한다 → 단다(반영)</li> </ul>

## 10. 原子力損害賠償補償契約에 관한法律

(신규제정 1975· 4· 7 法律第2764號)

(事項 등 진한 한자 → 한글표기)

(\* 표시 → 띄어쓰기)

현 행	정 비 안
<p>第1條 (目的) 이 法은 原子力損害賠償法 (이하 "賠償法"이라 한다) 第9條의 規定에 의한 <u>原子力損害賠償補償契約</u>(이하 "補償契約"이라 한다)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原子力損害의 被害者를 保護하고 原子力事業의 健全한 발전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原子爐의 <u>運轉등</u>"이라 함은 賠償法 第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原子爐의 <u>運轉등</u>을 말한다.</li> <li>2. "原子力損害"라 함은 賠償法 第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原子力損害를 말한다.</li> <li>3. "原子力事業者"라 함은 賠償法 第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原子力事業者를 말한다.</li> <li>4. "損害賠償措置"라 함은 賠償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措置를 말한다.</li> <li>5. "賠償措置額"이라 함은 賠償法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賠償措置額을 말한다.</li> <li>6. "保險契約"이라 함은 賠償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u>原子力損害賠償責任保險契約</u>을 말한다.</li> </ol> <p>第3條 (補償契約) 政府는 原子力事業者와 補償契約를 締結할 수 있다.</p>	<p>第1條 (目的) 이 法은 原子力損害賠償法 (이하 "賠償法"이라 한다) 第9條의 規定에 의한 a)*<u>原子力 損害賠償 補償契約</u>(이하 "補償契約"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原子力損害의 被害者를 보호하고 <u>原子力 事業</u>의 健全한 발전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原子爐의 *<u>運轉 등</u>"이라 함은 賠償法 第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原子爐의 *<u>運轉 등</u>을 말한다.</li> <li>2. "<u>原子力 損害</u>"라 함은 賠償法 第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原子力損害를 말한다.</li> <li>3. "<u>原子力 事業者</u>"라 함은 賠償法 第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u>原子力 事業者</u>를 말한다.</li> <li>4. "<u>損害賠償 措置</u>"라 함은 賠償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u>損害賠償 措置</u>를 말한다.</li> <li>5. "<u>賠償 措置額</u>"이라 함은 賠償法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u>賠償 措置額</u>을 말한다.</li> <li>6. "保險契約"이라 함은 賠償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b)*<u>原子力 損害賠償 責任保險契約</u>을 말한다.</li> </ol> <p>第3條 (補償契約) 政府는 <u>原子力 事業者</u>와 補償契約를 체결할 수 있다.</p>

비 고	검 토 의 견
<p>a) 이러한 명사구는 길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안 하면 可讀性이 떨어진다.</p> <p>b) a)와 같다.</p> <p>• 한글표기 추가어(반대: 밑에 ×표시)  <b>**定義(2조 표제), 用語(2조 1행)</b>  <b>***'定義'와 正義 등과의 의미구분은 문맥에 의해 가능하다. 법률에서의 '定義'는 대개 법률의 시작부분에 나타나면서 개념을 규정하는 데 사용되므로 혼동될 염려는 없다.</b></p>	<p>• 원자력 손해배상, 원자력 손해, 원자력 사업자, 원자력 사업, 손해배상 조치, 배상 조치액 등 ('원자력+X'형의 띄어쓰기) (모두 반영)</p> <p>• 손해 배상, 보상 계약, 보험 계약, 책임 보험 계약(띄어쓰는 것이 원칙이나 붙여쓸 수 있다)</p> <p>• 2조 1: '제2조 제1항'과 같은 어절(띄어써야 한다. 법률에서 붙여쓰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다)</p> <p>• 3조: 체결할 → 맺을</p>

(事項 등 진한 한자 → 한글표기)

(\* 표시 → 띄어쓰기)

현 행	정 비 안
<p>第4條 (補償損失) 政府가 補償契約에 의하여 補償하는 損失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原子力損害를 原子力事業者가 賠償함으로써 생기는 損失(이하 "補償損失"이라 한다)로 한다.</p> <p>1. 大統領令이 정하는 <u>正常運轉</u>등으로 인하여 생긴 原子力損害</p> <p>2. 第1號 이외의 損害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原子力損害</p> <p>第5條 (補償契約金額) 補償契約의 契約金額(이하 "補償契約金額"이라 한다)은 賠償措置額에 상당하는 金額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額으로 한다. 다만, 原子力事業者가 原子力損害에 대한 損害賠償措置로서 保險契約 및 補償契約 이외의 措置를 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措置에 의하여 原子力損害의 賠償에 充당할 수 있는 金額 또는 다른 補償契約을 締結하고 있는 때에는 그 다른 補償契約에 의하여 原子力損害의 賠償에 充당할 수 있는 金額을 控除한 金額으로 한다.</p> <p>第6條 (補償契約의 期間) 補償契約의 期間은 그 契約을 締結한 날로부터 당해 補償契約에 관한 原子爐의 <u>運轉</u>등을 廢止하는 날까지로 한다.</p>	<p>第4條 (補償損失) 政府가 補償契約에 의하여 補償하는 損失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原子力 損害를 原子力 事業者가 賠償함으로써 생기는 損失(이하 "補償損失"이라 한다)로 한다.</p> <p>1. 大統領令이 정하는 *<u>正常 運轉</u> 등으로 인하여 생긴 原子力 損害</p> <p>2. 第1號 이외의 損害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原子力 損害</p> <p>第5條 (補償契約 金額) 補償契約의 契約金額(이하 "補償契約 金額"이라 한다)은 賠償 措置額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原子力 事業者가 原子力 損害에 대한 損害賠償 措置로서 保險契約 및 補償契約 이외의 措置를 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措置에 의하여 原子力 損害의 賠償에 充당할 수 있는 금액 또는 다른 補償契約을  체결하고 있는 때에는 그 다른 補償契約에 의하여 原子力 損害의 賠償에 充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p> <p>第6條 (補償契約의  기간) 補償契約의  기간은 그 契約을  체결한 날로부터 당해 補償契約에 관한 原子爐의 *<u>運轉</u> 등을 廢止하는 날까지로 한다.</p>

비 고	검 토 의 견
<p>• 한글표기 추가어(반대: 밑에 ×표시)  補償, 損失(이상 4조), 損害(4조 2),  措置(5조 5행), 契約, 廢止(이상 6조)</p>	<p>• 원자력 손해배상, 원자력 손해,  원자력 사업자, 원자력 사업,  손해배상 조치, 배상 조치액,  보상계약 금액, 계약 금액 등(‘원자  력+X’형의 띄어쓰기) (모두 반영)</p> <p>** 이하 같은 유형은 밑줄로 표시  하고 띄어썼다.</p> <p>• 손해 배상, 보상 계약(띄어쓰는  것이 원칙이나 붙여쓸 수 있다)</p> <p>• 5조, 6조: 당해 → 그  • 5조, 6조: 체결하고 → 맺고  체결한 → 맺은</p>

(事項 등 진한 한자 → 한글표기)

(\* 표시 → 띄어쓰기)

현 행	정 비 안
<p>第7條 (補償料) 補償料의 <b>金額</b>은 補償契約金額에 補償損失이 생길 <b>可能性</b>과 補償契約에 관한 政府의 <b>事務處理費</b>등을 <b>勘案</b>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料率을 곱하여 얻은 <b>金額</b>에 상당하는 <b>金額</b>으로 한다.</p>	<p>第7條 (補償料) 補償料의 금액은 補償契約金額에 補償損失이 생길 가능성과 補償契約에 관한 政府의 *<b>事務處理費</b> 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料率을 곱하여 얻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p>
<p>第8條 (補償契約의 <b>締結</b>등) 補償契約의 <b>締結</b>, 補償料의 納入時期·納入方法 및 補償金の <b>支給期間·支給方法</b>에 관하여 필요한 <b>事項</b>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8條 (補償契約의 *<b>체결</b> 등) 補償契約의 <b>체결</b>, 補償料의 <u>納入 時期·納入 方法</u> 및 補償金の <u>지급 기간·지급 방법</u>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9條 (補償金額) 政府가 補償契約에 의하여 補償하는 <b>金額</b>은 당해 補償契約期間중에 原子爐의 <b>運轉</b>등으로 인하여 생긴 原子力損害의 補償損失에 대한 <b>補償契約金額</b>이내로 한다.</p>	<p>第9條 (補償 金額) 政府가 補償契約에 의하여 補償하는 금액은 당해 *<b>補償契約</b>期間 중에 原子爐의 *<b>運轉</b> 등으로 인하여 생긴 原子力 損害의 補償損失에 대한 *<b>補償契約 金額</b> 이내로 한다.</p>
<p>第10條 (補償契約締結의 <b>限度</b>) 政府가 1會計年度내에 <b>締結</b>하는 補償契約의 補償契約金額은 그 合計額이 會計年度마다 國會의 議決을 얻은 <b>金額</b>이내로 한다.</p>	<p>第10條 (補償契約 締結의 한도) 政府가 *<b>1會計年度</b> 내에 체결하는 補償契約의 補償契約 金額은 그 合計額이 會計年度마다 國會의 議決을 얻은 *<b>금액</b> 이내로 한다.</p>
<p>第11條 (보고) 原子力事業者는 補償契約을 <b>締結</b>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原子爐의 <b>運轉</b>등에 관한 중요한 <b>事項</b>을 政府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b>事項</b>에 <b>變更</b>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p>	<p>第11條 (보고) 原子力 事業者는 補償契約을 체결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原子爐의 *<b>運轉</b>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政府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p>

비 고	검 토 의 견
<p>• 한글표기 추가어(반대: 밑에 ×표시)  <b>納入時期, **納入方法, 補償金</b>  (이상 8조)  ** ‘方法’은 현재에도 한글표기 대상  임.</p>	<p>• (‘원자력+X’형 등의 띄어쓰기) (모  두 반영)</p> <p>• 보상 계약(10회 사용), 1회계 연도,  회계 연도(띄어쓰는 것이 원칙이나  붙여쓸 수 있다)</p> <p>• 9조: 당해 → 그</p> <p>• 10조, 11조: 체결하는 → 맺는  체결할 → 맺을</p>

(事項 등 진한 한자 → 한글표기)

(\* 표시 → 띄어쓰기)

현 행	정 비 안
<p>第12條 (時效) 補償金의 支給을 받을 權利는 그 權利를 行使할 수 있는 날로부터 2年間 이를 行使하지 아니할 때에는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p> <p>第13條 (代位등) 政府는 補償契約에 의하여 補償한 경우에는 補償契約의 相對方인 原子力事業者가 第三者에 대하여 求償權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補償한 金額의 限度에서 당해 權利를 取得한다. 原子力事業者가 求償權의 行使에 의하여 支給을 받은 때에는 政府는 그 支給을 받은 金額의 限度에서 補償義務가 免除된다.</p> <p>第14條 (補償金의 返還) 政府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原子力損害에 관한 補償損失에 대하여 補償金を 支給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原子力事業者로 하여금 이를 返還하게 한다.</p> <p>1. 補償契約의 相對方인 原子力事業者가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僞의 보고를 한 경우에, 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僞의 보고를 한 事項에 起因한 原子力損害</p> <p>2. 政府가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補償契約을 解止한 경우에 原子力事業者가 그 解止의 通告를 받은 날로부터 解止의 效力이 생기는 날의 前날까지의 사이에 있어서의 原子爐의 運轉등으로 인한 原子力損害</p>	<p>第12條 (時效) 補償金의 지급을 받을 權利는 그 權利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2年間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p> <p>第13條 (*代位 등) 政府는 補償契約에 의하여 補償한 경우에는 補償契約의 相對方인 原子力 事業者가 第三者에 대하여 求償權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補償한 金額의 限度에서 당해 權利를  취득한다. 原子力 事業者가 求償權의  행사에 의하여 지급을 받은 때에는 政府는 그 지급을 받은 金額의 限度에서 補償 義務가 免除된다.</p> <p>第14條 (補償金의 반환) 政府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原子力 損害에 관한 補償損失에 대하여 補償金を 지급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原子力 事業者로 하여금 이를  반환하게 한다.</p> <p>1. 補償契約의 相對方인 原子力 事業者가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경우에, 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사항에 起因한 原子力 損害</p> <p>2. 政府가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補償契約을 解止한 경우에 原子力 事業者가 그 解止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解止의 a)효력이 생기는 날의 前날까지 사이에 原子爐의 *運轉 등으로 인하여 생긴 原子力 損害</p>

비 고	검 토 의 견
<p>a) ‘~의 ~의 ~의 ~의’의 중복을 고침.</p> <p>• 한글표기 추가어(반대: 밑에 ×표시)  <b>權利, 消滅</b> (이상 12조), <b>免除</b>(13조 끝행), <b>**相對方</b>(14조 1)  <b>**‘相對方’</b>은 ‘相對’가 현재 한글표기를 허용하고 있는 것 참고.</p>	<p>• 원자력 손해, 원자력 사업자, 보상 의무 등(‘원자력+X’형 등의 띄어쓰기) (모두 반영)</p> <p>• 보상 계약 등(띄어쓰는 것이 원칙이나 붙여쓸 수 있다)</p> <p>• 13조, 14조: 당해 → 그</p> <p>• 14조 1: 허위의 → 허위(반영)</p>

(事項 등 진한 한자 → 한글표기)

(\* 표시 → 띄어쓰기)

현 행	정 비 안
<p>第15條 (補償契約의 解止) ①政府는 補償契約의 相對方인 原子力事業者가 당해 補償契約 및 保險契約에 의한 損害賠償措置 이외의 損害賠償措置를 한 때에는 그 補償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당해 原子力事業者가 그 補償契約의 解止를 申請한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政府는 補償契約의 相對方인 原子力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補償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賠償法 第5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때</li> <li>2. 補償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li> <li>3.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偽의 보고를 한 때</li> <li>4. 原子爐의 運轉등을 위한 施設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保安措置를 하지 아니한 때</li> <li>5. 原子力損害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 損害의 減少 또는 防止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지 아니한 때</li> <li>6. 第1號 내지 第5號 이외에 補償契約에 정한 解止事由가 생긴 때</li> </ol> <p>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契約의 解止는 그 補償契約의 相對方인 原子力事業者가 解止의 通告를 받은 날로부터 90日이 경과한 날에 그 效力이 생긴다.</p>	<p>第15條 (補償契約의 解止) ①政府는 補償契約의 相對方인 原子力事業者가 당해 補償契約 및 保險契約에 의한 損害賠償措置 이외의 損害賠償措置를 한 때에는 그 補償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당해 原子力事業者가 그 補償契約의 解止를 申請한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政府는 補償契約의 相對方인 原子力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補償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賠償法 第5條第1項의 規定을 위반한 때</li> <li>2. 補償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li> <li>3.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때</li> <li>4. 原子爐의 *運轉 등을 위한 施設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保安措置를 하지 아니한 때</li> <li>5. 原子力 損害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 損害의 감소 또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지 아니한 때</li> <li>6. 第1號 내지 第5號 a)이외에 補償契約에서 정한 解止事由가 생긴 때</li> </ol> <p>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契約의 解止는 그 補償契約의 相對方인 原子力事業者가 解止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90日이 경과한 날에 그 效力이 생긴다.</p>

비 고	검 토 의 건
<p>a) ‘~에 ~에’의 중복을 고침.</p> <p>• 한글표기 추가어(반대: 밑에 ×표시)  <b>申請</b>(15조 1항 5행), <b>施設</b>(15조 2항 4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력 손해, 원자력 사업자 등(띄어쓰기) (모두 반영)</li> <li>• 손해 배상, 보상 계약(띄어쓰는 것이 원칙이나 붙여쓸 수 있다)</li> <li>• 15조 1항, 2항: 당해 → 그</li> <li>• 15조 2항 1: 규정을 위반한/어긴(조사 ‘-에’를 고침)(반영)</li> <li>• 15조 2항 3: 허위의 → 허위(반영)</li> <li>• 15조 2항 6: 내지 → 부터  ‘내지’는 흔히 ‘또는’의 의미로 쓰이므로 오늘날 ‘-부터 -까지’로 해독하기 어려움.</li> <li>• 15조 3항: 해지의 → 해지(불필요한 속격 ‘-의’를 쓰지 말 것-일본어/일본 법령의 영향)(반영)</li> <li>• 15조 3항: 경과한 → 지난</li> </ul>

(事項 등 진한 한자 → 한글표기)

(\* 표시 → 띄어쓰기)

현 행	정 비 안
<p>第16條 (承認등) ①補償契約의 相對方인 原子力事業者는 原子爐의 運轉등으로 인하여 생긴 原子力損害의 被害者에 대하여 그 賠償責任의 全部 또는 一部를 承諾하고자 할 때에는 政府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p> <p>②補償契約의 相對方인 原子力事業者는 原子爐의 運轉등으로 인하여 原子力損害가 생긴 때 또는 그 原子力損害에 대한 賠償責任에 관하여 訴를 提起하거나 提起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政府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承認과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17條 (過怠料) ①政府는 補償契約의 相對方인 原子力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原子力事業者가 補償金の 支給을 받은 후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金額의 過怠料를 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原子力損害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 損害의 減少 또는 防止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지 아니한 때</li> <li>2.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承認을 얻지 아니한 때</li> <li>3.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偽의 보고를 한 때</li> </ol>	<p>第16條 (*承認 등) ①補償契約의 相對方인 原子力 事業者는 原子爐의 *運轉 등으로 인하여 생긴 原子力損害의 被害者에 대하여 그 賠償責任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고자 할 때에는 政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②補償契約의 相對方인 原子力 事業者는 原子爐의 *運轉 등으로 인하여 原子力 損害가 생긴 때 또는 그 原子力 損害에 대한 賠償 責任에 관하여 a)訴를 제기하거나 訴가 제기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政府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과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17條 (過怠料) ①政府는 補償契約의 相對方인 原子力 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原子力 事業者가 補償金の 지급을 받은 후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금액의 b)過怠料에 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原子力 損害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 損害의 감소 또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지 아니한 때</li> <li>2.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li> <li>3.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때</li> </ol>

비 고	검 토 의 견
<p>a) 목적어(訴를)가 동일 성분이 아닌 데 생략한 오류 : “訴를 提起하거나 (訴를) 提起된 때”는 비문법적이므로 “訴를 提起하거나 <u>訴가</u> 提起된 때”가 맞는 표현임.</p> <p>b) 최근 법률 표현으로 고침.</p> <p>• 한글표기 추가어(반대: 밑에 ×표시)  <b>科하다</b>(17조 1항 끝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력 손해, 원자력 사업자 등(띄어쓰기) (모두 반영)</li> <li>• 보상 계약(붙여쓸 수 있다)</li> <li>• 16조 2항: 이를(삭제 가능 - 두어도 좋음)</li> <li>• 17조 1항: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 보상금을 지급받은(자연스러운 국어로 표현함)</li> <li>• 17조 1항: 科한다 → 지운다/매긴다.</li> <li>• 17조 1항 3: 허위의 → 허위(반영)</li> <li>• 17조 1항 2, 3: 제16조 제1항(띄어쓰기) - 이하 이러한 유형은 생략함.</li> </ul>

(事項 등 진한 한자 → 한글표기)

(\* 표시 → 띄어쓰기)

현 행	정 비 안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金額은 다음 各號의 區分에 의한 金額이내로 한다.</p> <p>1. 第1項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補償金額의 10分の 1에 해당하는 金額</p> <p>2. 第1項第3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補償金額의 1,000分の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5萬원미만인 때에는 이를 5萬원으로 한다.</p> <p>第18條 (業務의 管掌) 이 法에 의한 政府의 業務는 科學技術處長官이 管掌한다.</p> <p>第19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附則</p> <p>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金額은 다음 各號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내로 한다.</p> <p>1. 第1項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補償金額의 10分の 1에 해당하는 금액</p> <p>2. 第1項第3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補償金額의 1,000分の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5萬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5萬원으로 한다.</p> <p>第18條 (業務의 管掌) 이 法에 의한 政府의 業務는 科學技術處長官이 管掌한다.</p> <p>第19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附則</p> <p>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p>

비 고	검 토 의 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글표기 추가어(반대: 밑에 ×표시) 5萬(17조 2항 2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기 사항 없음.</li> </ul>

# 11. 在外公館收入金등 직접사용에 관한法律

(신규제정 1964· 9· 22 法律第1660號)

(事項 등 진한 한자 → 한글표기)

(\* 표시 → 띄어쓰기)

현 행	정 비 안
<p>第1條 (目的) 이 法은 大韓民國在外公館(이하 "在外公館"이라 한다)의 收入金 및 前渡資金使用殘額(이하 "收入金등"이라 한다)을 당해 在外公館에서 직접 사용하게 함으로써 國庫에의 納入에 따르는 事務의 煩雜을 避하고 外貨의 效率的인 사용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1條 (目的) 이 法은 *大韓民國 在外公館(이하 "在外公館"이라 한다)의 收入金 및 a)*先給金 使用殘額(이하 "*收入金 등"이라 한다)을 당해 在外公館에서 직접 사용하게 함으로써 b)國庫로 納入하는데 따르는 事務의  번잡함을 避하고 外貨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2條 (收入金등의 직접 사용) 外務部長官은 豫算會計法 第9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在外公館의  長으로  하여금  당해  在外公館에  配定된  豫算의  범위안에서  그  收入金등을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前渡資金使用殘額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p>	<p>第2條 (*收入金 등의 직접 사용) 外務部長官은 豫算會計法 第9條第1項의 c)規定에  에도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在外公館의  長으로  하여금  당해  在外公館에  配定된  豫算의  *범위  안에서  그  d)收入金を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a')*先給金 使用殘額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p>
<p>第3條 (직접 사용한 收入金の 代替納入) 外務部長官은  在外公館에  資金을  送金할  때에는  당해  在外公館의  長이  前條의  規定에  의하여  직접  사용한  收入金등에   상당하는  金額을  送金할  金額에서  控除하여  이를  國庫에  納入하여야  한다.</p>	<p>第3條 (직접 사용한 收入金の 代替 納入) 外務部長官이  在外公館에  資金을  送金할  때에는  당해  在外公館의  長이  第2條의  規定에  의하여  직접  사용한  *收入金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送金할  금액에서  공제하여  國庫에  納入하여야  한다.</p>
<p>附則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p>	<p>附則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p>

비 고	검 토 의 견
<p>a), a') '前渡'를 “법령용어순화편람(1996)”에서는 ‘미리줌, 선급, 선지급’ 등으로 고쳤으나, 여기에서는 ‘先給金’으로 고침.</p> <p>b) 어색한 표현을 고침.</p> <p>c) b)와 같음.</p> <p>d) 제1조의 ‘수입금 등’의 규정에 따르면 바로 뒤의 ‘선급금사용잔액’이 잉여적이므로 ‘수입금’이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 (검토요)</p> <p>• 한글표기 추가어(반대: 밑에 ×표시)  *收入金, 避하다(이상 1조), 配定(2조 4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외 공관(붙여쓸 수도 있다)</li> <li>• 1조, 2조: 사용 잔액(띄어쓰기)</li> <li>• 1조: ‘국고로의 납입에 따르는 → 국고로 납입하는 데 따르는’(자연스러운 국어 표현으로 수정함)(반영)</li> <li>• 1조: 번잡을 → 번잡함을(‘번잡’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번잡함’이 더 자연스럽게 일반적임.)</li> <li>• 3조: 대체 납입(띄어쓰기)(반영)</li> <li>• 1조, 2조, 3조: 당해 → 그 (이하 생략)</li> <li>• 3조: 외무부장관은 → 외무부장관이(‘-은/는’ 주제화의 중복을 피함)(반영)</li> <li>• 3조: ‘이를’ 삭제(불필요한 목적어)(반영)</li> </ul>

12.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신규제정 1973· 1· 30 법률제2457호)

(事項 등 진한 한자 → 한글표기)

(\* 표시 → 띄어쓰기)

현 행	정 비 안
<p>제1조 (목적) 이 법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착용 또는 사용과 그 제조 및 판매를 규제함으로써 군수품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방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군복"이라 함은 군인복제에서 규정된 군모·제복·군화·계급장·표지장과, 특수군복(별표 1에 <u>게기된</u> <u>물품중에서</u> 국방부장관이 그 제식을 고시한 것에 한한다)을 말한다.</p> <p>2. "군용장구"라 함은 군용의 표지가 있는 개인장구·수품·장비류중 별표 2에 <u>게기된</u> 것으로 국방부장관이 그 형태, 색상 및 <u>구조등을</u> 고시한 물품을 말한다.</p> <p>3. "유사군복" 또는 "유사군용장구"라 함은 군용의 표지가 없거나 군복 또는 군용장구와 형태, 색상 및 <u>구조등이</u> 유사하여 외관상 군복 또는 군용장구와 식별이 극히 곤란한 물품을 말한다.</p> <p>제3조 (군복 및 군용장구의 착용·사용금지) 군인이 아닌 자는 <u>정당한 이유없이</u>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1조 (목적) 이 법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착용 또는 사용과 그 제조 및 판매를 규제함으로써 군수품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방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군복"이라 함은 군인복제에서 규정된 군모·제복·군화·계급장·표지장과, 특수군복(별표 1에 a)<u>제시된</u> *<u>물품 중</u>에 <u>서</u> 국방부장관이 그 제식을 고시한 것에 한한다)을 말한다.</p> <p>2. "군용장구"라 함은 군용의 표지가 있는 개인장구·b)<u>수품</u>·*<u>장비류</u> 중 별표 2에 c)<u>제시된</u> 것으로 국방부장관이 그 형태, 색상 및 *<u>구조 등을</u> 고시한 물품을 말한다.</p> <p>3. "유사군복" 또는 "유사군용장구"라 함은 군용의 표지가 없거나 군복 또는 군용장구와 형태, 색상 및 *<u>구조 등이</u> 유사하여 외관상 군복 또는 군용장구와 <u>식별하기가</u> 극히 곤란한 물품을 말한다.</p> <p>제3조 (군복 및 군용장구의 착용·<u>사용</u>금지) 군인이 아닌 자는 <u>정당한</u> *<u>이유 없이</u>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된다.</p>

비 고	검 토 의 견
<p>a) 쉬운 용어로 고침.</p> <p>b) ‘수품’의 의미를 알기 어려우므로 다른 표현으로 순화정비 요.</p> <p>c) a)와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용 장구, 군인 복제, 특수 군복, 유사 군복, 유사 군용 장구(띄어쓰는 것이 원칙이고 붙여쓸 수도 있다)</li>   <li>• 2조 2: 개인 장구(띄어쓰기)</li>   <li>• 2조 3: 식별이 → 식별하기가/식별하는 것이(‘군용장구와’라는 성분이 있으므로 명사는 쓸 수 없고 동사가 뒤이어 호응해야 함)(반영)</li>   <li>• 3조 제목: 사용금지(띄어쓰기)(반영)</li> <li>• 3조: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 사용하거나 지녀서는(쉬운 표현으로 수정)</li> </ul>

(事項 등 진한 한자 → 한글표기)

(\* 표시 → 띄어쓰기)

현 행	정 비 안
<p>제4조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허가) ①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산회계법과 동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따른 계약에 의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조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u>판매허가</u>) ①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산회계법과 동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따른 계약에 의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국방부장관이 <u>전항의</u> 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②국방부장관이 <u>제1항의</u> 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제5조 (유사군복 및 <u>유사군용장구등</u>) ①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거나 유사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5조 (유사군복 및 *<u>유사군용장구 등</u>) ①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거나 유사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누구든지 유사군복 또는 유사군용장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누구든지 유사군복 또는 유사군용장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6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u>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u>에 처한다.</p>	<p>제6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u>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u>에 처한다.</p>
<p>1. 제4조의 <u>규정에 위반하여</u>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p>	<p>1. 제4조의 a)<u>규정을 위반하여</u>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p>
<p>2.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p>	<p>2.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p>

비 고	검 토 의 견
<p>a) 어색한 표현을 고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용 장구, 유사 군복, 유사 군용 장구(띄어쓰는 것이 원칙 이고 붙여쓸 수도 있다)</li>   <li>• 4조 제목: 판매 허가(띄어쓰기)(반 영)</li>   <li>• 4조 1항: 동법에 → 같은 법에(쉬 운 표현으로 수정)</li>   <li>• 5조 1항: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 사용하거나 지녀서는(쉬운 표현 으로 수정)</li>             <li>• 6조 1: 위반하여 → 어기어</li> </ul>

(事項 등 진한 한자 → 한글표기)

(\* 표시 → 띄어쓰기)

현 행	정 비 안
<p>3. 제5조제2항의 <u>규정에 위반한 자</u>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u>10만원 이하의</u>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p> <p>1. 제3조의 <u>규정에 위반한 자</u>  2. 제5조제1항의 <u>규정에 위반한 자</u></p> <p>제7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부칙</p> <p>이 법은 <u>공포후</u>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3. 제5조제2항의 a)<u>규정을 위반한 자</u>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u>10만원 이하의</u>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p> <p>1. 제3조의 a')<u>규정을 위반한 자</u>  2. 제5조제1항의 a")<u>규정을 위반한 자</u></p> <p>제7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부칙</p> <p>이 법은 *<u>공포 후</u>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비 고	검 토 의 견
<p>a), a'), a") “규정에 위반한 자”보다는 “규정을 위반한 자”가 자연스럽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반한 → 어긴(3회 사용)</li> </ul>

### 13. 財政法規에 依據한 出納會計의 數字 및 記載事項의 訂正에 關한 法律

(신규제정 1961·12·13 法律第841號)

(事項 등 진한 한자 → 한글표기)

(\* 표시 → 띄어쓰기)

현 행	정 비 안
<p>第1條 (數字의 字體) 財政法規에 依據한 出納計算에 關한 諸書類 및 帳簿에 記載하는 金額 其他의 數量으로써 [一], [二], [三], [十]의 數字는 [壹], [貳], [參], [拾]의 字體를 使用하여야 한다. 但 橫書를 할 때에는 아라비아數字를 使用할 수 있다.</p> <p>第2條 (變改, 挿入, 削除 및 訂正) ①財政法規에 依據한 出納計算에 關한 諸書類 및 帳簿의 記載事項은 本法에 定하는 節次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變改할 수 없다.</p> <p>②前項에 規定하는 諸書類 및 帳簿의 記載事項中 數字에 對하여 訂正, 挿入 또는 削除를 할 때에는 朱色으로 =線을 그어 削除하고 그 右側 또는 上位에 正書를 하여야 한다. 但 削除한 數字는 明確하게 解讀할 수 있도록 그 字體를 남겨야 하며 作成者가 捺印하여야 한다.</p> <p>③前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金錢 또는 物品의 授受에 關한 諸證書의 數字는 이를 變改할 수 없다.</p> <p>④數字以外의 記載事項에 對하여 訂正, 挿入 또는 削除를 하였을 때에는 그 字數를 欄外에 記載하고 1)그를 作成한 者가 이에 捺印하여야 한다.</p>	<p>第1條 (數字의 字體) 財政法規에 의거한 出納計算에 關한 a)모든 서류 및 帳簿에 기재하는 금액 기타의 數量을 표시하는 문자로서 [一], [二], [三], [十]의 數字는 [壹], [貳], [參], [拾]의 字體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b)가로쓰기를 할 때에는 아라비아數字를 사용할 수 있다.</p> <p>第2條 (變改, 挿入, 削除 및 訂正) ①財政法規에 의거한 出納計算에 關한 모든 서류 및 帳簿의 기재사항은 c)이 法에서 정한 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變改할 수 없다.</p> <p>②d)第1項에서 規定한 모든 서류 및 帳簿의 *기재사항 중 數字에 대하여 訂正, 挿入 또는 削除를 할 때에는 e)붉은색으로 =線을 그어 削除하고 그 오른쪽 또는 윗부분에 正書를 하여야 한다. 다만, 削除한 數字는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 字體를 남겨야 하며 作成者가 捺印하여야 한다.</p> <p>③第2項의 f)規定에도 불구하고 金錢 또는 物品의 授受에 關한 모든 證書의 數字는 變改할 수 없다.</p> <p>④*數字 이외의 기재사항을 訂正, 挿入 또는 削除를 하였을 때에는 그 字數를 欄外에 기재하고 g)그것을 작성한 者가 여기에 捺印하여야 한다.</p>

비 고	검 토 의 건
<p>a) 한문투를 풀어쓰(이하 같다).</p> <p>b) 쉬운 고유어로 바꿈.</p> <p>c) ‘-에 -에’를 고침. 그리고 ‘정한’으로 시제를 고침.</p> <p>d) ‘~에 규정하는’을 ‘~에서 규정한’으로 고침( 조사와 시제를 고침).</p> <p>e) 쉬운 말로 고침.</p> <p>f) 어색한 표현을 고침.</p> <p>g) 어색한 표현을 고침(‘여기에’는 생략 가능).</p> <p>• 한글표기 추가어(반대: 밑에 ×표시) 帳簿(1조 2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 범위, 출납 회계(띄어쓰는 것이 원칙, 붙여쓰는 것도 허용)</li> <li>• 기재 사항(3회)(띄어쓰기)</li> <li>• 금액, 기타의(나열할 때 쉼표 사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조: ‘수량으로써 → 수량을 표시하는 문자로서’(‘금액, 수량’이 <u>도구</u>의 의미가 아니므로 ‘-로써’를 사용할 수 없고, ‘금액, 기타 수량을 표시하는 데 쓰이는 문자의 자격으로’이므로 ‘-로서’를 사용해야 함)(반영)</li> <li>• 2조 1항, 3항: ‘이름’의 삭제(반영)</li> <li>• 2조 2항: 우측 또는 상위에 → 오른쪽 또는 윗부분에(반영)</li> <li>• 2조 2항: 해독할 → 알아볼(반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조 4항: 기재사항에 대하여 → 기재 사항을(반영)</li> </ul>

(事項 등 진한 한자 → 한글표기)

(\* 표시 → 띄어쓰기)

현 행	정 비 안
<p>附則</p> <p>①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p> <p>②會計法規에 基한 出納計算의 數字 및 記載事項의 訂正에 關한 件은 廢止한다.</p>	<p>附則</p> <p>①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p> <p>②會計法規에 基한 出納計算의 數字 및 記載事項의 訂正에 關한 件은 廢止한다.</p>

비 고	검 토 의 견
• 특기 사항 없음.	

14. 不當利得稅法 (신규제정 1974·12·21 法律第2688號)

(事項 등 진한 한자 → 한글표기)

(\* 표시 → 띄어쓰기)

현 행	정 비 안
<p>第1條 (納稅義務者) ①物價安定에 관한 法律이나 기타 法律에 의하여 政府가 決定·指定·承認·認可 또는 許可하는 物品의 價格, 不動産이나 <u>기타의 物件</u>의 賃貸料 또는 料金(手數料와 使用料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最高額을 <u>基準</u>으로 去來段階別·地域別 기타의 <u>區分</u>에 따라 國稅廳長이 따로 정하는 價額(이하 "基準價格"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去來를 함으로써 不當한 利得을 얻은 者는 不當利得稅를 納付할 義務를 진다.</p> <p>②國稅廳長이 第1項의 基準價格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p>	<p>第1條 (納稅義務者) ①物價安定에 관한 法律이나 기타 法律에 의하여 政府가 決定·指定·承認·認可 또는 許可하는 物品의 價格, 不動産이나 a)기타 物건의 賃貸料 또는 料金(手數料와 使用料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最高額을 기준으로 去來 段階別·地域別 기타의 구분에 따라 國稅廳長이 따로 정하는 價額(이하 "基準價格"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去來를 함으로써 不當한 利得을 얻은 者는 不當利得稅를 납부할 義務를 진다.</p> <p>②國稅廳長이 第1項의 基準價格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p>
<p>第2條 (課稅標準) 不當利得稅의 課稅標準은 實際로 去來한 價格·賃貸料 또는 料金에서 基準價格을 差減한 金額으로 한다.</p>	<p>第2條 (課稅標準) 不當利得稅의 課稅標準은 실제로 去來한 價格·賃貸料 또는 料金에서 基準價格을 b)뺀 金額으로 한다.</p>
<p>第3條 (稅率) 不當利得稅의 稅率은 第2條의 規定에 의하여 不當利得稅의 課稅標準인 金額의 100分の 100으로 한다.</p>	<p>第3條 (稅率) 不當利得稅의 稅率은 第2條의 規定에 의하여 不當利得稅의 課稅標準인 金額의 100分の 100으로 한다.</p>
<p>第4條 (賦課와 徵收) ①不當利得稅는 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이 <u>隨時로 이를 賦課決定</u>하여 納稅告知書를 發付한다.</p> <p>②不當利得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納稅告知書를 發付한 날로부터 <u>15日내에</u> 이를 徵收한다.</p>	<p>第4條 (賦課와 徵收) ①不當利得稅는 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이 수시로 c) 賦課할 것을 決定하여 納稅告知書를 발부한다.</p> <p>②不當利得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納稅告知書를 발부한 날로부터 *15日 內에 徵收한다.</p>
<p>第5條 (納稅地) ①不當利得稅의 納稅地는 法人에 있어서는 法人稅의 納稅地로 하고 <u>個人에 있어서는 그 個人의 事業場 所在地</u>로 한다.</p>	<p>第5條 (納稅地) ①不當利得稅의 納稅地는 d)法人의 경우에는 法人稅의 納稅地로 하고 d')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의 事業場 所在地로 한다.</p>

비 고	검 토 의 견
<p>a) ‘~의 ~의’가 중복된 것을 고침.</p> <p>b) 쉬운용어로 풀어씀.</p> <p>c) 한문투의 조어를 풀어씀.</p> <p>d), d’) 일본어투의 문장을 고침.</p> <p>• 한글표기 추가어(반대: 밑에 ×표시)  <b>物品, 使用料, 基準價格</b>(基準은 한글표기 중), <b>利得, 義務</b> (이상 1조 1항), <b>事業場, 所在地</b> (이상 5조 1항).</p>	<p>• 납세 의무자, 기준 가격, 과세 표준, 납세 고지서(띄어쓰는 것이 원칙, 붙여쓰는 것도 허용)</p> <p>• 1조 1항: 거래 단계별(띄어쓰기)(반영)</p> <p>• 1조 1항: 초과하여 → 넘어</p> <p>• 4조 1항, 2항: ‘이름’ 삭제(반영)</p>

(事項 등 진한 한자 → 한글표기)

(\* 표시 → 띄어쓰기)

현 행	정 비 안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納稅地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者의 納稅地는 納稅義務者의 所在地 또는 <u>居所</u> 한다.</p> <p>第6條 (質問檢査權) ①稅務公務員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職務를 遂行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u>稅務義務者 그밖의 關係人</u>에게 質問을 하거나 <u>그 業務에 관한 書類 그밖의 物件</u>을 檢査할 수 있다.</p> <p>②稅務公務員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할 수 있는 物件을  제출하도록 要求하고  제출된 物件은 이를 領置할 수 있다.</p> <p>③國稅徵收法 第25條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이를 適用한다.</p> <p>第7條 (다른 稅法과의 關係) 이 法에 의하여 賦課하는 租稅는 國稅로 하고, 이 法에 의하여 納付한 不當利得稅는 法人稅法 또는 所得稅法에 의한 所得計算에 있어서 必要經費 또는 損金에 算入한다.</p> <p>第8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附則</p> <p>①(施行日) 이 法은 197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p> <p>②(經過措置) 이 法 <u>施行당시</u>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할 不當利得稅에 관하여는  종전의 例에 의한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納稅地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者의 納稅地는 納稅義務者의 所在地 또는 a)<u>居住地</u>로 한다.</p> <p>第6條 (質問檢査權) ①稅務公務員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職務를 遂行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b)<u>稅務義務者 또는 그밖의 關係人</u>에게 質問을 하거나 b')<u>그 業務에 관한  서류 또는 그밖의 物件</u>을 檢査할 수 있다.</p> <p>②稅務公務員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할 수 있는 物件을  제출하도록 要求하고  제출된 物件은 이를 領置할 수 있다.</p> <p>③國稅徵收法 第25條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적용한다.</p> <p>第7條 (다른 稅法과의 關係) 이 法에 의하여 賦課하는 租稅는 國稅로 하고, 이 法에 의하여 納付한 不當利得稅는 法人稅法 또는 所得稅法에 의한 <u>所得</u> 計算에 있어서 必要經費 또는 損金에 算入한다.</p> <p>第8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附則</p> <p>①(施行日) 이 法은 197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p> <p>②(經過措置) 이 法 c)*<u>施行</u>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할 不當利得稅에 관하여는  종전의 例에 의한다.</p>

비 고	검 토 의 견
<p>a) ‘居所’는 한문투의 비일상적 용어임.</p> <p>b), b’) 비문법적인 명사 나열을 고침.</p> <p>c) 한자와 한글 혼용표기는 띄어써야 한다.</p> <p>• 한글표기 추가어(반대: 밑에 ×표시)  <b>質問, 檢査</b> (이상 6조 1항), <b>納付</b>(7조).</p>	<p>• 납세 의무자, 질문 조사권, 세무 공무원, 세무 의무자, 필요 경비(띄어쓰는 것이 원칙, 붙여쓰는 것도 허용)</p> <p>• 6조 3항: ‘이를’ 삭제(반영)</p> <p>• 7조: 소득 계산(띄어쓰기)(반영)</p> <p>• 부칙 2항: 경과 조치(띄어쓰기)</p>

15. 失火責任에關한法律 (신규제정 1961·4·28 法律第607號)

(事項 등 진한 한자 → 한글표기)

(\* 표시 → 띄어쓰기)

현 행	정 비 안
<p>民法 第750條의 規定은 失火의 境遇에는 重大한 過失이 있을 때에 限하여 <u>이를 適用</u>한다.</p> <p>附則</p> <p>①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p> <p>②朝鮮民事令 第1條第4號는 <u>이를 削除</u>한다.</p> <p>③本法 施行當時의 他法令에서 失火의 責任에關한法律이라 함은 <u>本法</u>을 指稱하는 것으로 한다.</p>	<p>民法 第750條의 規定은 失火의  경우에 重大한 過失이 있을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p> <p>附則</p> <p>①<u>이 法</u>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p> <p>②朝鮮民事令 第1條第4號는 削除한다.</p> <p>③<u>이 法</u> *<u>施行 당시의 a)</u>다른 法令에서 失火의 責任에關한法律이라 함은 <u>이 法</u>을 指稱하는 것으로 한다.</p>

비 고	검 토 의 견
<p>a) 한문투를 고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글표기 추가어(반대: 밑에 ×표시) 規定, 施行, 削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우에는는 → 경우(‘... 규정은 ... 경우에는는’으로 ‘-은/는’ 주제화가 중복되어 수정(‘경우에’로 반영)</li> <li>• 본문, 부칙 2항: ‘이를’ 삭제(반영)</li> <li>• 부칙 3항: 지칭하는 → 가리키는</li> </ul>

16. 非營利法人의任員處罰에關한法律 (신규제정 1961·11·11 法律第772號)

(事項 등 진한 한자 → 한글표기)

(\* 표시 → 띄어쓰기)

현 행	정 비 안
<p>非營利法人의 業務를 執行하는 理事, 監事 또는 그 職務를 代行하는 者나 社員으로서 刑事訴追 또는 刑의 執行을 免하기 爲하여 合併 其他의 方法으로 非營利法人을 消滅시킨 者는 5年以下의 懲役に 處한다.</p> <p>附則</p> <p>①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檀紀 4228年 法律 第18號를 朝鮮等に 施行하는 件은 이를 廢止한다.</p>	<p>非營利法人의 業務를 執行하는 理事, 監事 또는 그 職務를 代行하는 者나 社員으로서 刑事訴追 또는 刑의 執行을 免하기 爲하여 a)合併 또는 기타의 方法으로 非營利法人을 消滅시킨 者는 *5年 이하의 懲役に 處한다.</p> <p>附則</p> <p>①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b)西紀 1895年 法律 第18號를 朝鮮等に 施行하는 件은 이를 廢止한다.</p>

비 고	검 토 의 견
<p>a) 비문법적인 명사 나열을 고침.</p> <p>b) 檀紀를 西紀로 고침.</p> <p>• 한글표기 추가어(반대: 밑에 ×표시)  <b>業務, 職務, 者, 社員, 免하다, 消滅, 處하다</b></p>	<p>• 비영리 법인, 형사 소추(띄어쓰는 것이 원칙, 붙여씀도 허용)</p> <p>• 감사, 또는(쉼표 추가)</p>

## 17. 國家에歸屬하는相續財産移轉에關한法律

(신규제정 1961·12·23 法律第860號)

(事項 등 진한 한자 → 한글표기)

(\* 표시 → 띄어쓰기)

현 행	정 비 안
<p>第1條 (國內에서 財産移轉) 民法 第1058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國家에 歸屬하는 相續財産의 管理人은 被相續人의 住所地를 管轄하는 稅務署長에게 遲滯없이 그 相續財産의 管理를 移轉하여야 한다.</p> <p>第2條 (國外에서의 財産移轉) 前條의 境遇에 被相續人의 住所가 外國인 때에는 領事 또는 領事の 職務를 行하는 者에게 遲滯없이 그 相續財産의 管理를 移轉하여야 한다.</p> <p>附則</p> <p>①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p> <p>②檀紀 4232年 勅令 第409號 相續人이 曠缺하였을 때 國庫에 歸屬하는 財産의 引渡에 關한 件은 이를 廢止한다.</p>	<p>第1條 a)(國內에서의 財産 移轉) 民法 第1058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國家에  귀속하는 相續財産의 管理人은 被相續人의 住所地를 管轄하는 稅務署長에게  지체없이 그 相續財産의  관리를 移轉하여야 한다.</p> <p>第2條 (國外에서의 財産 移轉) 第1條의  경우에 被相續人의 住所가 外國인 때에는 領事 또는 領事の 職務를 行하는 者에게  지체없이 그 相續財産의  관리를 移轉하여야 한다.</p> <p>附則</p> <p>①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p> <p>② 西紀 1899年 勅令 第409號 相續人이 曠缺하였을 때 國庫에 歸屬하는 財産의 引渡에 關한 件은 이를 廢止한다.</p>

비 고	검 토 의 견
<p>a) 표제가 어색한 명사구이므로 ‘-의’를 넣어 고침. (제2조 제목과 비교됨)</p> <p>• 한글표기 추가어(반대: 밑에 ×표시)  <b>管理人</b>(참고: ‘管理’는 한글표기 가능), <b>住所地</b>(1조 3행), <b>住所, 職務, 者</b>(이상 2조), <b>廢止</b>(부칙 2항).</p>	<p>• 재산 상속(띄어쓰기, 붙여쓰기 허용)</p> <p>• 1조, 2조: 재산 이전(띄어쓰기)(반영)</p>

18. 軍用物等犯罪에 관한特別措置法 (신규제정 1966·3·29 法律第1769號)

(事項 등 진한 한자 → 한글표기)

(\* 표시 → 띄어쓰기)

현 행	정 비 안
<p>第1條 (目的) 이 法은 軍用物等에 대한 犯罪의 處罰等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1條 (目的) 이 法은 *軍用物 등에 대한 犯罪의 *處罰 등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2條 (適用範圍) ①이 法은 國軍 및 駐韓國際聯合軍의 軍用物等에 대한 行爲에 適用한다. ②이 法에서 "軍用物"이라 함은 別表에 揭記한  것(構成品·部分品 및 原料로서 軍用的 標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p>	<p>第2條 (적용 범위) ①이 法은 國軍 및 駐韓國際聯合軍의 *軍用物 등에 대한 行爲에  적용한다. ②이 法에서 "軍用物"이라 함은 別表에 a)제시한   것(構成品·部分品 및 原料로서 軍用的 標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p>
<p>第3條 (軍用物犯罪에 대한 刑의 加重) ① 軍用物에 관하여 刑法 第2編第38章 또는 第41章의 罪를 犯한 者는 無期 또는 1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다만, 軍用物中 軍糧·軍服等 및 軍用油類에 관하여는 集團的 또는 常習的으로 犯行하거나 物品價額이 10萬원이상이거나 1,000킬로그램이상의 物品 또는 10드람이상의 油類인  때에 限하여 이를 適用한다. ②前項의 罪에 대하여는 20萬원이하의 罰金を 併科할 수 있다.</p>	<p>第3條 (*軍用物 犯罪에 대한 刑의 加重) ① 軍用物에 관하여 刑法 第2編第38章 또는 第41章의 罪를 범한 者는 無期 또는 *1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다만, *軍用物 중 *軍糧·軍服 b)등과 軍用 油類에 관하여는 集團的 또는 常習的으로 犯行하거나 物品 價額이 *10萬원 이상이거나 *1,000킬로그램 이상의 物品 또는 *10드람 이상의 油類인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第1項에 規定한 罪에 대하여는 *20萬 원 이하의 罰金を c)함께 科할 수 있다.</p>
<p>第4條 (軍用施設等侵入) ①軍要塞陣營 또는 軍用に 供하는 艦船·航空機·工場·建造物·設備와 軍用的 標識가 있는 場所에 侵入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前項의 場所에서 退去要求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③前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p>	<p>第4條 (d)*軍用施設 등의 侵入) ①*軍要塞 陣營 또는 e)軍用으로  제공되는 艦船·航空機·工場·建造物·設備와 軍用的 標識가 있는 場所에 侵入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1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第1項에 規定한 場所에서 退去 要求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者도 第1項에 規定한 刑과 같다. ③第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p>

비 고	검 토 의 견
<p>a) 어려운 단어를 고침.</p> <p>b) ‘-等 및’이 어색하여 고침.</p> <p>c) 도로교통법 115조(刑의 併科)에 “형을 함께 과할 수 있다”가 있어 참고함.</p> <p>d) ‘-의’를 보충함.</p> <p>e) 한문투의 말을 고침. (‘군용으로 사용하는’도 가능할 듯)</p> <p>• 한글표기 추가어(반대: 밑에 ×표시)  <b>標識</b>(2조 2항; ‘표지’인데 ‘표식’으로 읽을 우려가 있음.), <b>集團的, 犯行</b> (이상 3조 1항 5행), <b>罰金</b>(3조 2항), <b>工場, 場所, 侵入</b> (이상 4조 1항), <b>處罰</b> (4조 3항).</p>	<p>• 2조: 주한 국제 연합군(띄어쓰기)</p> <p>• 적용 범위(2조), 군용 유류, 물품 가액(이상 3조 1항), 퇴거 요구 등(모두 띄어쓰기)(반영)</p> <p>• 3조 1항: 킬로그램 →킬로그램  드람 → 드림(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수정함)(반영)</p> <p>• 3조 2항: 과할 → 지을/매길</p>

(事項 등 진한 한자 → 한글표기)

(\* 표시 → 띄어쓰기)

현 행	정 비 안
<p>第5條 (다른 法과의 관계) 이 法에 規定된 刑보다 重한 刑이 다른 法에 規定되어 있을 때에는 그 重한 刑으로 處罰한다.</p> <p>第6條 (檢事の 搜查指揮等) ①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 행하는 者는 軍法被適用者가 아닌 이 法 違反被疑者(이하 "被疑者"라 한다)에 대한 犯罪搜查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檢事の 指揮를 받아야 하며 檢事の 職務上  발한 命令에 服從하여야 한다. 다만, 現行犯人  경우와 緊急을 要하여 미리 指揮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事後에 지체없이 檢事の 指揮를 받아야 한다.</p> <p>②地方檢察廳 檢事長 또는 支廳長은 被疑者에 대한 不法拘束의 有無를 調査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所屬檢事로 하여금 管下軍搜查機關의 被疑者の 拘束場所를 監察하게 하며 監察하는 檢事는 被疑者를 審訊하고 拘束에 관한 書類를 調査할 수 있다.</p> <p>③檢事は 被疑者가 不法으로 拘束된 것이라고 疑心할만한  상당한 理由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被疑者에 관한 事件을 檢察에 送致할 것을 命할 수 있다.</p> <p>附則</p> <p>이 法은 公布後 3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p>	<p>第5條 (다른 法과의 관계) 이 法에 規定된 刑보다 중한 刑이 다른 法에 規定되어 있을 때에는 그 중한 刑으로 處罰한다.</p> <p>第6條 (檢事の *搜查·指揮 등) ①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 행하는 者는 a)軍法の 被適用者가 아니면서 이 法을 위반한 被疑者(이하 "被疑者"라 한다)에 대한 犯罪搜查를 b)할 때에는 미리 檢事の 指揮를 받아야 하며 c)檢事가 職務上  발한 命令에 服從하여야 한다. 다만, 現行犯人  경우와  긴급을 요하여 미리 指揮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檢事の 指揮를 받아야 한다.</p> <p>②地方檢察廳 檢事長 또는 支廳長은 被疑者에 대한 不法拘束의 有無를 調査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所屬 檢事로 하여금 d)*管下 軍搜查機關에 있는 被疑者の 拘束場所를 監察하게 하며, 監察하는 檢事는 被疑者를 審問하고 拘束에 관한  서류를 調査할 수 있다.</p> <p>③檢事は 被疑者가 不法으로 拘束된 것이라고 *疑心할 만한  상당한 理由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被疑者에 관한 事件을 檢察에 送致할 것을 命할 수 있다.</p> <p>附則</p> <p>이 法은 *公布 후 3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p>

비 고	검 토 의 견
<p>a) 한문투를 고침.</p> <p>b), c) 더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고침.</p> <p>d) ‘-의 -의’ 중복표현을 고침.</p> <p>• 한글표기 추가어(반대: 밑에 ×표시)  <b>搜查, 指揮, 命令, 服從</b> (이상 6조 1항), <b>拘束</b>(6조 2항 끝부분), <b>不法, 疑心, 事件</b> (이상 6조 3항).</p>	<p>• 사법 경찰 관리(6조 1항),  군 수사 기관(6조 2항) (띄어쓰기 원칙, 붙여쓰기도 허용)</p> <p>• 6조 1항: 범죄 수사(띄어쓰기)(반영)</p> <p>• 6조 2항: 불법 구속(띄어쓰기)</p> <p>• 6조 2항: 소속 검사(띄어쓰기)(반영)</p> <p>• 6조 2항: ‘감찰하게 하며’ 다음에 문맥 이해를 위한 쉽표 추가(반영)</p> <p>• 6조 2항: 심신하고 → 심문하고(‘심신審訊’은 ‘심문審問’의 구용어)(반영)</p>

19. 大韓民國과아메리카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第4條에 의한施設과區域  
및大韓民國에서 의合衆國軍隊의地位에 관한協定の施行에 관한民事特別法  
(생략)

20. 大韓民國과아메리카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第4條에 의한施設과區域  
및大韓民國에서 의合衆國軍隊의地位에 관한協定の施行에 관한刑事特別法  
(생략)

21. 婚姻申告特例法 (신규제정 1968·12·31 法律第2067號)

(事項 등 진한 한자 → 한글표기)

(\* 표시 → 띄어쓰기)

현 행	정 비 안
<p>第1條 (目的) 이 法은 戰爭 또는 事變에 있어서 戰鬥에 <b>參加</b>하거나, 戰鬥遂行을 위한 公務에 <b>중사</b>하므로 인하여 婚姻申告를 <b>當事者雙方</b>이 하지 못하고 그 <b>一方</b>이 死亡한 경우에 관한 特則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1條 (目的) 이 法은 戰爭 또는 事變에 있어서 戰鬥에 참가하거나 戰鬥 遂行을 위한 公務에 a)중사함으로써 인하여 婚姻申告를 *<b>當事者 雙方</b>이 하지 못하고 그 b)<b>한쪽</b>이 死亡한 경우에 관한 特則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2條 (婚姻申告) <b>婚姻申告義務者</b>의 <b>一方</b>이 前條의 規定에 의한 事由로 死亡한 경우에는 生存하는 當事者가 家庭法院의  확인을 얻어 單獨으로 婚姻申告를 할 수 있다.</p>	<p>第2條 (婚姻申告) *<b>婚姻申告 義務者</b>의 b) <b>한쪽</b>이 第1條의 規定에 의한 사유로 死亡한 경우에는 生存하는 當事者가 家庭法院의  확인을 얻어 單獨으로 婚姻申告를 할 수 있다.</p>
<p>第3條 (確認裁判<b>管轄</b>) 前條의  확인은 死亡한 當事者의 <b>最後</b>의 <b>住所</b>지가 속하는 家庭法院에서 <b>管轄</b>한다.</p>	<p>第3條 (*<b>確認裁判 관할</b>) 第2條의  확인은 死亡한 當事者의  최후의 c)<b>住所</b>지에 속하는 家庭法院에서 관할한다.</p>
<p>第4條 (申告의 效力) 第2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있는 때에는 <b>申告義務者 一方</b>의 死亡時에 <b>申告</b>가 있는 것으로 본다.</p>	<p>第4條 (申告의 效力) 第2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있는 때에는 *<b>申告 義務者</b> b) <b>한쪽</b>의 死亡時에 d)<b>申告</b>를 한 것으로 본다.</p>
<p>第5條 (<b>適用範圍</b>) 第1條의 規定에 의한 戰鬥 또는 戰鬥遂行을 위한 公務에 관한 <b>事項</b>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5條 (<b>적용 범위</b>) 第1條의 規定에 의한 戰鬥 또는 戰鬥遂行을 위한 公務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附則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p>	<p>附則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p>

비 고	검 토 의 견
<p>a) ‘중사하므로’는 이유를 말할 때 쓰므로 틀린 용법이다. ‘중사함으로’가 맞다. 전자의 ‘-(으)므로’는 용언어간에 붙는 어미이고, 후자의 ‘-(으)로’는 명사에 붙는 조사이다.</p> <p>b) 한글사용례(종합정리)에 의거해 고쳤다.(이하 같다)</p> <p>c) ‘住所地’의 영역을 넓은 의미로 해석해 ‘-가’를 ‘-에’로 고침.</p> <p>d) 과거시제를 현재시제로 쓴 오류. ‘있은’은 거의 안 쓰므로 ‘~ 한’으로 대체하여 고침.</p> <p>• 한글표기 추가어(반대: 밑에 ×표시) * 婚姻申告, 雙方, 死亡 (이상 1조), 申告(4조)</p>	<p>• 혼인 신고, 확인 재판, 가정 법원 (띄어쓰는 것이 원칙, 붙여쓰는 것도 허용)</p> <p>• 전투 수행(1조, 5조), 특칙 사항(1조), 적용 범위(5조 제목) (이상 모두 띄어쓰기) (반영)</p> <p>• 1조: ‘사변에 있어서 → 사변을 맞아’(여기의 ‘-에 있어서’는 모호한 표현임)</p> <p>• 2조: ‘참가하거나’ 바로 뒤의 쉼표 삭제(‘ [참가하거나 ... 중사하] +口+으로’의 구성이므로 쉼표를 넣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반영)</p>

22. 航空機運航安全法 (신규제정 1974·12·26 法律第2742號)

(事項 등 진한 한자 → 한글표기)

(\* 표시 → 띄어쓰기)

현 행	정 비 안
<p>第1條 (目的) 이 法은 運航중인 航空機를 拉致하여 航空機와 그 搭乗者의 安全을 威脅하고, 航空機내의 財産器물을 危殆롭게 하거나 할  염려가 있는 行爲 기타 機內의 秩序 및 規律을 害하는 行動을 防止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p> <p>1. "航空機拉致"라 함은 暴力 또는 脅迫 기타의 方法으로 運航중인 航空機를 强奪하거나 또는 그 運航을 强制하는 것을 말한다.</p> <p>2. "運航중"이라 함은 乗客이 搭乗한 후 航空機의 모든 門이 닫힌 때부터 下機를 위해 門을 열 때까지를 말한다.</p> <p>第3條 (適用範圍) 이 法은 "航空機내에서 犯한犯罪및기타行爲에관한協約" 第1條의 規定에 의한 모든 犯罪行爲에 適用한다.</p> <p>第4條 (禁止事項) 航空機에는 武器, 刀劍類, 爆發物, 毒劇物, 燃燒성이 높은 物件 등을 携帶·搭乗 하거나 搭載할 수 없다.</p>	<p>第1條 (目的) 이 法은 *運航 중인 航空機를 拉致하여 航空機와 그 搭乗者의 安全을 威脅하고, *航空機 내의 a)財産과 器물을 危殆롭게 하거나 할  염려가 있는 行爲 기타 機內의 秩序 및 規律을 害하는 行動을 防止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p> <p>1. "*航空機 拉致"라 함은 暴力 또는 脅迫 기타의 方法으로 *運航 중인 航空機를 强奪하거나 또는 그 運航을 强制하는 것을 말한다.</p> <p>2. "*運航 중"이라 함은 乗客이 搭乗한 후 航空機의 모든 門이 닫힌 때부터 下機를 위해 門을 열 때까지를 말한다.</p> <p>第3條 (적용 범위) 이 法은 "航空機내에서 犯한犯罪및기타行爲에관한協約" 第1條의 規定에 의한 모든 犯罪行爲에 適用한다.</p> <p>第4條 (금지 사항) 航空機에는 武器, 刀劍類, 爆發物, 毒劇物, 燃燒성이 높은 *물건 등을 b)휴대하고 搭乗하거나 搭載할 수 없다.</p>

비 고	검 토 의 견
<p>a) ‘財産器物’은 복합어라고 보기 힘들므로, 조사 ‘-과’를 첨가.</p> <p>b) 문맥의미를 고려해 잘못 쓰인 가운뎃점과 ‘하거나’의 띄어쓰기 교정.</p> <p>• 한글표기 추가어(반대: 밑에 ×표시)  <b>拉致, 安全, 威脅, 危殆, 秩序, 規律</b> (이상 1조), <b>用語</b>(2조 1행), <b>暴力, 脅迫</b> (이상 2조 1), <b>乘客, 門</b> (이상 2조 2), <b>武器, 爆發物, 毒劇物, 燃燒性</b> (이상 4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조: 적용 범위(띄어쓰기)(반영)</li> <li>• 3조: 범죄 행위(띄어쓰기)</li> <li>• 4조: 금지 사항(띄어쓰기)(반영)</li>   <li>• 4조: 연소성이 높은 → 불에 타기 쉬운(쉬운 표현으로 수정)</li>   <li>• 4조: 휴대하고 → 휴대한 채/지닌 채/지니고(‘정비안’은 양호함. 다만, 혹시 ‘휴대하다’와 ‘탑승하다’가 대등한 행위의 나열로 오해할 여지도 없지 않아 위와 같이 고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음)(정비안을 그냥 두어도 좋음)</li> </ul>

(事項 등 진한 한자 → 한글표기)

(\* 표시 → 띄어쓰기)

현 행	정 비 안
<p>第5條 (機長の 權限) ①機長은 <u>運航중인 航空機의 安全을 害치고, 人命財産에 危害를 주며, 機内の 秩序를 紊亂시키거나 機内の 規律에 違反하는 行爲를 하려고 하는 者에 대하여 그 行爲를 沮止시키기 위한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u></p> <p>②航空機내에 있는 者는 第1項의 措置에 關하여 機長の 要請이 있는 때에는 協助를 하여야 한다.</p> <p>③機長은 第1項의 行爲를 한 者를 拘束한  경우 航空機가 着陸한 때에는 拘束된 者가 拘束된 狀態로 계속 搭乘을 同意하거나 下機시킬 수 없는 事由가 있는  경우외에는 拘束한 狀態로 離陸하여서는 아니된다.</p>	<p>第5條 (機長の 權限) ①機長은 *<u>運航 중인 航空機의 安全을 害치고, a)人命과 財産에 危害를 주며, 機内の 秩序를 紊亂시키거나 機内の 規律에  위반하는 行爲를 하려고 하는 者에 대하여 그 行爲를 沮止시키기 위한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u></p> <p>②*<u>航空機 내에 있는 者는 第1項의 措置에 關하여 機長の  요청이 있는 때에는 協助를 하여야 한다.</u></p> <p>③機長은 <u>第1項의 行爲를 한 者를 拘束한 狀況에서 航空機가 着陸한  경우 拘束된 者가 拘束된  상태로 계속 搭乘을 同意하거나 下機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拘束한  상태로 離陸하여서는 아니된다.</u></p>
<p>第6條 (犯人の 引渡引受) ①航空機의 <u>運航중에 罪를 犯한 犯人을 機長이 引渡할 때에는  직접 또는  해당關係公務員을 통하여 警察官에게 引渡하여야 한다.</u></p> <p>②犯人을 <u>引受한 機長이 그 航空機안에서 拘束을 계속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關係公務員에게 遲滯없이 引渡하여야 한다.</u></p>	<p>第6條 (犯人の 引渡·引受) ①航空機의 *<u>運航 중에 罪를 犯한 犯人을 機長이 引渡할 때에는  직접 또는 *해당 關係公務員을 통하여 警察官에게 引渡하여야 한다.</u></p> <p>②犯人을 b)<u>拘束한 機長이 그 *航空機 안에서 拘束을 계속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關係 公務員에게  지체없이 引渡하여야 한다.</u></p>
<p>第7條 (豫備調査) ①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犯人을 引渡받은 때에는  다음과 같이 措置를 할 수 있다.</p> <p>1. 犯行의 調査 및 證據品の <u>提出要求</u></p> <p>2. 犯人에  대한 證人과 證據品の <u>提示의 要求</u></p> <p>②第1項의 豫備調査를  위해  당해 航空機 運航을  부당하게 遲延시켜서는 아니된다.</p>	<p>第7條 (豫備調査) ①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犯人을 引渡받은 때에는  다음과 같이 措置를 할 수 있다.</p> <p>1. 犯行의 調査 및 證據品の c)<u>제출 요구</u></p> <p>2. 犯人에  대한 證人과 證據品の c')<u>제시 요구</u></p> <p>②第1項의 豫備調査를  위해  당해 航空機 運航을  부당하게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p>

비 고	검 토 의 견
<p>a) ‘人命財産’은 복합어라고 보기 힘들므로, 조사 ‘-과’를 첨가.</p> <p>b) 문맥상 ‘引受’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경찰 등의 외부에서 범인의 이동을 목적으로 기장이 범인을 ‘引受’했다는 의미일 것 같지 않다. 그래서 ‘拘束’으로 정정함. (법률적 검토 요)</p> <p>c), c’) 둘은 대응되는 구절이므로 같은 형식을 사용해야 하며, ‘-의’는 중복되어 사용되므로 피했다. 그리고 수식관계가 [犯行의 調査 및 證據品の 提出]이 [要求]를 수식하는 관계이므로 띄어썼다.</p> <p>• 한글표기 추가어(반대: 밑에 ×표시)  <b>害치다</b>(‘害하다’는 현재 한글표기 가능), <b>沮止</b>, <b>措置</b> (이상 5조 1항), <b>協助</b> (5조 2항), <b>着陸</b>, <b>同意</b>, <b>離陸</b> (이상 5조 3항), <b>引渡</b>, <b>引受</b> (이상 6조 1항), <b>豫備調査</b>, <b>調査</b>, <b>證據品</b>, <b>證人</b> (이상 7조).</p>	<p>• 5조 3항: ‘제1항의 ... 착륙한 때에는 →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를 구속한 상황에서 항공기가 착륙한 경우’ (어색한 문장을 의미를 해독하기 쉬운 표현으로 수정)(반영)</p> <p>• 5조 3항: 탐승을 → 탐승하는 것에(자연스러운 표현으로 고침)</p> <p>• 5조 3항: 하기시킬 → 그를 내리게 할(쉬운 표현으로 수정)</p> <p>• 6조: 관계 공무원(띄어쓰기)(반영)</p> <p>• 6조 제목: ‘인도인수’ 사이에 가운뎃점)(반영)</p> <p>• 정비안의 b)가 타당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법령 전문가에게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여 신중히 결정할 것.</p> <p>• 7조 2항: 당해 → 그</p>

현 행	정 비 안
<p>第8條 (航空機 拉致罪) ①暴力 또는 脅迫 기타의 方法으로 運航중인 航空機를 拉致한 者는 無期 또는 7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②第1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p>	<p>第8條 (航空機 拉致罪) ①暴力 또는 脅迫 기타의 方法으로 *運航 중인 航空機를 拉致한 者는 無期 또는 *7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②第1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p>
<p>第9條 (拉致·致死傷) 第8條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致死傷하게 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に 處한다.</p>	<p>第9條 (拉致·a)致死傷) 第8條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b)死傷하게 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に 處한다.</p>
<p>第10條 (航空機拉致 豫備陰謀) 第8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に 處한다. 다만, 그 目的한 罪의 實行에 이르기전 自首한 者는 그 刑을 減刑 또는 免除한다.</p>	<p>第10條 (*航空機 拉致 豫備·陰謀) 第8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に 處한다. 다만, 그 目的한 罪를 實行하기 *전에 自首한 者는 그 刑을 減刑 또는 免除한다.</p>
<p>第11條 (航空機運航沮害罪) 僞計 또는 威力을 사용하여 運航중인 航空機의 航路를 變更하게 하여 正常運航을 沮害한 者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に 處한다.</p>	<p>第11條 (*航空機 運航 沮害罪) 僞計 또는 威力을 사용하여 *運航 중인 航空機의 航路를  변경하게 하여 正常 運航을  沮해한 者는 *1年 이상 *10년 이하의 懲役に 處한다.</p>
<p>第12條 (航空機危險物件搭載罪) 第4條의 規定에 의한 航空機에 搭載禁止된 物件을 搭載하거나 他人에게 所持하게 한 者는 2年이상 5年이하의 懲役に 處한다.</p>	<p>第12條 (c)*航空機 위험물건 搭載罪) 第4條의 規定에 의한 航空機에 搭載 禁止된 物건을 搭載하거나 他人에게  소지하게 한 者는 2年 이상 5年 이하의 懲役に 處한다.</p>
<p>附則</p> <p>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p>	<p>附則</p> <p>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p>

비 고	검 토 의 견
<p>a) 어려운 말이므로 ‘死傷’도 가능할 것.</p> <p>b) ‘致死傷하게 하다’의 ‘致’에 ‘-게 하다’의 뜻이 있어 의미가 중복되므로 ‘致’를 뺐. (또는 ‘致死傷한 者’도 가능)</p> <p>c) 한자와 한글 혼용이 어색하면, ‘航空機 危險物件 搭載罪’도 가능할 것.</p> <p>• 한글표기 추가어(반대: 밑에 ×표시) 處하다 (8조 등), 自首(10조 끝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상 운항(11조), 위험 물건(12조 제목), 탑재 금지(12조) (모두 띄어쓰기)(모두 반영)</li> <li>• 10조 제목: 가운데점 추가(반영) 본문 내용으로 보아 ‘예비한 음모’의 뜻이 아니라 ‘예비 또는 음모’이므로 가운데점을 써야 함)</li> <li>• 10조: ‘그 목적인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 → 그 목적인 죄를 실행하기 전에’(자연스러운 국어로 수정함) (반영)</li> </ul>



# 附 錄



## 법령용어 순화정비 기준

1. 한자용어는 가능한 한 한글용어로 풀어쓴다. 그러나 한글로 풀어쓰므로써 오히려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대로 쓴다.
2. 일상생활 공용용어는 중등교육을 받은 정도의 사람이면 누구나 그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는 가능한 한 쉬운 용어로 바꾸어 쓴다.
3. 권위적이거나 비민주적인 용어와 국민감정이나 시대성에 맞지 아니하는 용어는 다른 말로 바꾸어 쓴다.
4. 표현이 너무 간단하여 알기 어려운 용어 또는 간략하게 쓴 약어는 가능한 한 알맞게 풀어쓴다.
5. 발음이 같고 뜻이 다른 용어는 가능한 한 서로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다른 적절한 말로 바꾸어 쓴다.
6. 같은 용어라도 쓰는 곳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용어는 가능한 한 그 뜻이 명백해지도록 다른 말로 바꾸어 쓴다.
7. 고유명사는 학술·기술분야의 전문용어로서 우리의 언어감정에 맞지 아니하는 것은 관계부처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이에 맞는 적절한 용어로 바꾸어 쓴다.
8. 외래어는 가능한 한 쓰지 아니한다. 그러나 바꾸어 쓸 적절한 우리말 용어가 없는 것은 그대로 쓴다.
9. 문화체육부 기타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국어순화운동에 의하여 결정된 용어는 검토를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쓴다.

## 법령에서의 한글·한자사용기준

이 기준은 법제처에서 국회와 협의하여(1984. 8.21) 확정된 용어와 헌법 기타 다른 법률의 한글사용례를 추가하여 「법령용어심의회」에서 채택한(1990.12.20) 기준임.

한글·한자사용기준(1990. 12. 1)	
(550개)	
가	可能 各 各各 各種 干涉 間接 堪當 減少 勘案 減縮 講究 降下 …個 改良 個人 客觀的 距離 拒否 拒絕 健康 健全 乾燥 揭記 揭示 揭載 堅固 結果 兼任 兼하다 經過 輕微 經營 境遇 經由 繫留 繼續 繼承 高價 考慮 困難 鞏固 共同 共用 公認 公正 控除 貢獻 過去 關係 關係人 關聯 管理 關與 關하여 管轄 交付 區分 具備 構成 具體的 求하다 勸告 歸屬 規模 均等 均衡 極히 根據 勤務 金額 禁止 禁하다 急迫 急速 期間 期待 基本 羈束 寄與 記載 既存 基準 基礎 其他 忌避 期하다 機會 緊急
나	濫用 納付 朗讀 …內 內部 內容 乃至 努力 漏泄 能率的
다	多年間 多數 但 短縮 達成 達하다 擔當 答辯 當選 當時 當然 當初 當하다 當該 對備 對象 代身 對應 代替 對하다 到來 逃亡 圖謀 同等 同類 同時 同一 …等
마	磨勘 滿了 每年 每月 每日 面積 滅失 名目 明白 明示 名稱 明確 命하다 募集 紊亂 問題 物件 未達 未來 未滿 未備 未洽 密接
바	返納 反駁 反復 反映 反하다 返還 發見 發給 發達 發付 發生 發展 發表 發하다 發行 發揮 方法 防止 妨害 翻譯 繁雜 範圍 犯하다 變更 變動 別途 報告 報告書 保管 保有 保障 保全 補助 保存 補佐 保證 保護 服從 本來 附近 負擔 不當 不得已 部分 附與 不適當 不可避 不可抗力 不拘 不利 不問 不發 不服 不分明 不備 不誠實 不應 不意 不利益 不出席 不便 不必要 比較 備置 比하다

사	事實 事業 使用 事由 事前 事情 寫真 事項 事後 …性 …上 上記 相當 相對 常時 喪失 相應 狀態 相互 相互間 生기다 省略 善良 選定 說明 誠實 性質 所管 消極的 所屬 所要 所定 所持 屬하다 送達 送付 樹立 隨時 授與 水準 受驗 遂行 順序 純粹한 承諾 承服 承認 …時 始作 迅速 實施 實際 甚하다
아	兒童 案 安定 斡旋 若干 約定 嚴肅 嚴正 與否 餘裕 如何 延長 列舉 念慮 領收證 永遠 營爲 影響 例 例外 完了 完遂 完全 …外 外部 要件 要求 要求書 要旨 要請 要하다 容易 憂慮 于先 優先 優先的 運營 違反 委任 委囑 爲하다 危險 原因 原則 圓滑 有利 有無 類似 唯一 維持 育成 隱匿 應答 應分 應하다 依據 意見 意見書 依賴 意思 依하다 以內 以上 以外 利用 理由 利益 以前 以下 理解 履行 以後 隣近 引用 隣接 認定 因하여 一部 一時 一定 一切 立脚 任務 任意
자	自己 姿勢 自身 自由 作成 將來 再發 抵觸 沮害 …的 積極 適當 適用 適切 適正 適合 …前 前面 前日 專門 專門性 全部 前後 接受 正當 程度 整理 停止 政策 定하다 正確 除去 提供 提起 提示 除外 提出 制限 條件 存在 尊重 從來 終了 種類 種類別 從事 從前 主觀的 注意 遵守 準하다 …中 中斷 重大 中毒者 重要 重点 中止 卽席 卽時 增加 證據 證明 證明書 支給 指名 持續 遲延 支援 支障 指定 遲滯 直前 直接 進行
차	差等 差別 參加 參考 參席 參與 參酌 處理 處分 添記 添附 貼付 締結 超過 招來 促求 促進 囑託 攝影 最近 最大 最大限 最小 最小限 最終 最初 最後 追加 抽象的 推進 推薦 出庫 出席 充當 衝突 充分 充用 充足 取扱 取得 趣旨 取下 取하다 侵害
타	妥當 打破 怠慢 通告 通過 通報 通常 通用 通知 通하다 特別 特殊 特定 特히
과	破壞 破棄 把握 判斷 判定 便利 便宜 廢棄 拋棄 包裝 包含 表面 表示 豐富 必要
하	…下 限度 限하여 割當 涵養 合理的 合하다 恒久的 恒常 該當 害하다 行動 行使 行爲 行하다 向上 許容 虛僞 現在 顯著 協助 形便 湖水 確固 確立 確實 確認 確定 擴充 還付 回復 回附 效力 效率的 …後 毀損 攜帶 吸煙 希望 犧牲

※ 위 표에 없는 용어의 한글·한자표기기준

- ① 위 표에 없는 용어도 한글전용원칙에 따라 가급적 한글로 쓴다. 다만, 한글로 표기할 경우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용어는 한자로 쓸 수 있다.
- ②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의 법령에서는 한글·한자혼용기준이 통일되어야 한다.<sup>17)</sup>
- ③ 복합어는 모두를 한자 또는 한글로 쓴다(보기 : 利害關係 또는 이해관계).
- ④ 중간점으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일반혼용원칙에 따라 혼용한다(예 : 보고·檢査).
- ⑤ 위 표에 없는 용어는 한자·한글표기는 명백한 잘못이 없는 한 제안자의 의도에 따르기로 하고, 심의과정에서는 되도록 바꾸지 아니하기로 한다.

---

17) 이것은 단서조항으로 하나의 법률에서 복합어의 성분과 독립된 단어는 다르게 적을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契約期間’의 ‘期間’이 전문용어의 성분이라면 한자로 써야 하지만 독립된 단어인 ‘期間’은 ‘기간’의 한글표기가 가능하므로 한글로 써야 할 것이다.

## 법령의 한글사용례(종합정리)

이 자료는 법령의 한글화에 참고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수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법령용어정비』를 추진함에 있어서 한자식 표기를 한글로 바꾸어 사용하도록 법제처에서 채택하여 사용한 자료와 『현행 헌법』의 한글사용례를 통합하여 편집한 것임.

※근거자료 : 법령의 한글화 작업시 채택한 용어(1969)

법령용어의 통일(1974)

한글·한자사용기준(1984)

제6공화국헌법의 한글사용례(1987)

(ㄱ)부

(총 782건)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各各	각각	勘案	참작
架橋	교량	減資	자본의 감소
可能	가능	減縮하다	감축하다(줄이다)
假病	피병	講究	강구
加하고	보태고	降下하지	내리지
各種	각종	改良	개량
干涉(不干涉)	간섭(불간섭)	改善	개선
(…로)看做하다	(…로)보다	個人	개인
間接	간접	改過	(잘못을)뇌우침
看做한다	본다	開裝하다	포장을 풀다
堪當	감당	開坑當初	갱을 처음 사용하
減耗	줄어듦, 닳음		기 시작할 때
鑑하여	비추어, 살피어	介護를	보호를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客觀的	객관적	繼承	계승
거마비(車馬費)	교통비	繼承할 수 있다	계속할 수 있다
拒否	거부	계출(屆出)	신고
拒絕	거절	高價인	비싼
健康한	건강한	考慮	고려
健全	건전	苦味	쓴맛
鍵錠	자물쇠	困難	곤란
乾燥	말리다	鞏固	공고
揭記	계기	空船	빈배
揭示	게시	供與하다	제공하다
掲載하다	실다	共用	공동사용
犬	개	公正	공정
堅固한	튼튼한	控除한	뺀
結果	결과	公認된 計理	공인회계
兼하다	겸하다	士の 保證	士の 인증
經過	경과	貢獻	공헌
輕微한	경미한	共히	같이, 함께
經營	경영	過去	과거
境遇	경우	課하다	과하다
經由	거처	(過半數의 贊成으	(과반수의 찬성으
警標	경고표시	로써)決定하다	로써)의결하다
繫留된	계류된	課金	요금
繼續	계속	罐	통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關係	관계	均衡	균형
關係人	관계인	極히	극히
關聯	관련	根據	근거
關與	관여	勤務	근무
管理케	관리하게	金額	금액
寬恕	(쓰지 않기로 함)	禁止	금지
官有財産	국유재산	及	및
管入	관에 넣음	急迫	급박
關한	관한	증하는	걸치는
管轄, 所轄	관할	既納額	이미 납부한 금액
交付하다	교부하다	既納한	이미 납부한
橋梁	다리	寄與	기여
溝渠	도랑	寄留抄本	주민등록표 초본
救命筏	구명벌(뗏목)	記載	기재
區分(區分하여)	나누다(나누어)	既存	기존
具備하여야	구비하여야	起終點	시발점과 종점
構成	구성	基礎	기초
具體的	구체적	其他	기타
求한다	구한다	其他人	그외 사람
軌條	레일	忌避	기피
卷尾	책끝(명부 끝)	既히	이미
歸屬	귀속	期한다	기한다
均等	균등	緊急	긴급

(ㄴ)부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裸麥	쌀보리	乃至	내지
落下	낙하, 떨어지다	冷후	식힌 후
難溶이고	잘 녹지 않고	努力	노력
納付토록	납부하도록	龔啞	귀머거리 아이
內徑	안지름	漏水하지 아니하	물이 새지 아니하
內에	...안에	도록	도록
內容	내용	能率的	능률적

(ㄷ)부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多年間	다년간	當하다	당하다
多大한	다대한	當該	당해
但	다만	大豆	콩
端數	우수리	大麥	(겉)보리
擔當	담당	對備	대비
答辯	답변	對象	대상
擔保에 供하다	담보로 제공하다	大聲을	큰 소리를
畚	논	大錢	대금
當時	당시	對應	대응
當然	당연	代替	대체
當月	그달	代하는	갈음하는
當日	그날	對한	대한
當初	당초	徒過	경과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到來	도래	同時	동시
逃亡	도망	(他)圖書館	(다른) 도서관
圖謀	도모	同額의	같은 액의
島嶼	섬	同一한	같은
豚	돼지	同一戶籍	같은 호적
同等한	동등한	等	등

(口)부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馬	말	名稱	이름
滿了	만료	明確	명확
每葉의 丁數를	장마다 매수를	募集	모집
末尾	끝	目睹하다	보다
網	그물	猫	고양이
每年(日)	매년(일)	錨銷	닻줄
每月	매달	紊亂	문란
盲兒	눈먼아이	問題	문제
名變更(名義變更)	이름변경	物件	물건
綿量	솜량	물色해서는	색을 나타내서는
面積	넓이	未達하는	달하지 못하는
滅失	멸실	米糠	쌀겨
名目	명목	未滿	미만
明白	명백	未備	미비
明示	명시	未洽	미흡
憫諒	동정받을 만한	密接한	밀접한

(ㄷ)부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剝離하지	벗기지	發行	발행
返納	반납	發揮	발휘
返戻하다	반려하다	方法	방법
反駁	반박	防止	방지
反復	반복	妨害	방해
返附	도로 돌려보냄	背面	뒷면
返附返還하다	다시 돌려보내다	白色	흰색
反映	반영	翻譯	번역
反하여	반하여	範圍	범위
返還	반환	犯罪事項	범죄사실
發見	발견	犯하다	범하다
發給	발급	變更	변경
發達	발달	別段의	다른
發付	발부	別途	따로
發生	발생	報告	보고
發生한 地	발생한 곳	保管	보관
發展	발전	寶玉石	보석과 옥석
發表	발표	保有	보유
發하다	내리다	保障	보장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保全	보전	分界하다	구분하게 하다
保存	보존	分명한	분명한
補佐하다	보조하다	(의) 分은	(의) 몫은
補綴	보수	分野	분야
保持	유지	分하여	나누어
保清衣	위생의	不可避	불가피
補하다	보하다	不拘	불구
保護	보호	拂戾하다	환급하다
普通話聲을	보통 이야기 소리를	不問	불문
服從	복종	不發	불발
本旨	본뜻	不服	불복
附近	부근	不備	불비
負擔	부담	不意	불의
不當	부당	不利益	불이익
不得已	부득이	拂入	납입
部分	부분	不知	(쓰지 않기로 함)
附與	부여	不便	불편
部印	청인	崩落	무너져 내림
不正	부정	鼻	코
不足	부족	比較	비교
附하다	붙이다	備置	비치
附合	부합	比하여	비하여

(八)부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思料하는	생각하는	狀態	상태
四捨五入	반올림	相互間	상호간
砂礫	자갈	霜害	서리피해
事實	사실	生긴다	생긴다
事業部分	사업부문	省略	생략
使用	사용	生枝	(생)나뭇가지
詐僞의 方法으로	사기나 위계의 방법으로	生한	있는
事由로 因하여	사유로 말미암아	書類標目	서류목록
事前에	미리	緒尾	처음과 끝
事項	사항	書式○○號	별지서식 ○○호 서식
祥記	자세히 기재함	暑熱한	덥고 뜨거운
上記者	위 사람은	書狀	서류
相當	상당	鼠族	쥐
相對	상대	石礫	자갈
桑樹	뽕나무	選定	선정
喪失, 失하다	잃다	設示	(쓰지 않기로 함)
上午	오전	誠實히	성실히
上位部	윗부분	所管	소관
相違없이	틀림없이	消極	소극
相應	상응	所屬	소속
桑田	뽕나무 밭	所要하는	필요로 하는
上肢	팔	小滴	작은 방울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所定の	소정의	受驗	응시하다
掃除	청소	數回	몇번
所持하고	가지고	純粹한	순수한
所轄	관할	習癖	나쁜 습성 버릇
屬한다	속한다	承諾	승낙
送達	송달	承服	승복
送付	송부	承認	승인
松脂	소나무진	乘한	곱한
隧道	터널	(俸給)時에	(봉급) 때에
受領時에	받는 때에	始作	시작
修了한 자	수료한 자	示顯한	나타낸
收得하다	받다	食料	음식물
樹立	수립	申込證	청약서
數枚	여러 장	迅速	신속
手續	절차	新型	새로운 형
樹實	나무열매	實施	실시
授與	수여	實際	실제
受有者는	갖고 있는 자는	十指를	열손가락을
水準	수준	十趾를	열발가락을
手指	손가락		
遂行	수행		

(○)부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蛾	나방	念慮	염려
兒童遊園	어린이 놀이터	獵具	사냥도구
啞兒	병어리 아이	獵期	사냥시기
啞者	병어리	領收濟	영수필
案	안	永遠히	영원히
斡旋	알선	營爲	영위
約定	약정	影響	영향
兩眼	양쪽눈	例에	예에
兩耳	두귀	例外	예외
魚油	물고기 기름	瓦斯	가스
堰	둑	完了	완료
嚴肅	엄숙	完了日	마친 날
餘望	(쓰지 않기로 함)	完了치	완료하지
與否	여부	完本	완금
女壻	사위	完遂	완수
餘裕	여유	完全한	완전한
如何한	어떠한	外	외
鉛	납	外徑	바깥지름
役員	임원	要件	요건
煙瓦	벽돌	要件을 闕하다	요건을 갖추지 못
延長	연장		다
煙草	담배	要求	요구
列舉	열거	腰部	허리부분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要旨	요지	有故時	사고가 있을 때
要請	요청	留念하다	유념하다
要한다	요한다	有恕	용서
容易하며	쉬우며	乳牛	젖소
憂慮	우려	遺漏	빠뜨림
牛馬	소와 말	有無	유무
右上側의	오른쪽 위의	類似的	비슷한
優先하여	우선하여	有恕하다	용서하다
優遇上	후하게 대접하는	有熱의	열이 있는
雨裝	비옷	唯一	유일
郵便料	우편요금	維持	유지
運營	운영	陸稻	밭벼
原因	원인	育成	육성
原則	원칙	隱匿	은닉
垣柵	울타리	應答	응답
圓滑	원활	應하여	따라
月當	매월	意見	의견
違反	위반	依하여	따라
圍繞	둘러싸인	耳孔	귓구멍
委囑	위촉	移記하여야	옮겨 적어야
委員會의 答問	위원회의 자문	以內	이내
爲한다	위한다	裏面(背面)	뒷면
危險	위험	以上	이상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利息	이자	隣近管轄支廳長	가까운 관할
耳語	귓속말		지청장
易燃性の	불붙기 쉬운	忍容	(쓰지 않기로 함)
以外	이외	隣佑人	이웃사람
利用	이용	隣接	인접
理由	이유	認定	인정
利益(不利益)	이익(불이익)	因한다	인한다
移積하다	옮겨 쌓다	인환증의 類	인환증 따위
以前	이전	一方이	한쪽이
異種의	다른 종류의	一部	일부
以下	이하	一束으로	한묶음으로
履行(不履行)	이행(불이행)	一定한	일정한
以後	이후	逸出할	달아날
2位	두자리	1	하나
2條의 橫線不分明	두줄의 橫선 分明	1滴	한 방울
함으로	하지 아니함으로	任務	직무
翌年(度)	다음해	臨席하다	출석하다
翌月	다음달	任地	근무지
翌日	다음날	任意로	임의로
翌會計年度	다음 회계연도	立脚	입각
隣近	인근	入浴	목욕
		孕胎	잉태

(ㄱ)부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子	자, 아들	適當(不適當)	적당(부적당)
自己	자기	摘要欄, 備考欄	참고란
自力으로 自辯	자력으로 자변	適切	적절
하다	하다	適正	적정
姿勢	자세	適合(不適合)	적합(부적합)
自身	자신	…前	…전
磁製	도자기제	田	밭
自~至	~부터 ~까지	栓	마개
作成	작성	前價로 放賣	짓가로 방매
殘餘의	남은(나머지의)	前面	앞면
殘刑期	남은 형기	專門性	전문성
蠶病	누에병	全部	전부
蠶體	누에	轉寫	복사
蠶兒	누에	丁數	장수
蠶品種	누에의 품종	呈色해서는	색을 나타내서는
雜用水用器	물통	呈示	제시
將來	장래	停止	정지
掌理하다	처리하다	呈하고	나타내고
再發	재발	定한다	정한다
低減하다	(쓰지 않기로 함)	正確	정확
抵觸	저촉	除去	제거
沮害	저해	提供	제공
積極	적극	諸關節	모든 관절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提起	제기	朱線	붉은선
諸般	모든	注意	주의
提示	제시	舟車馬	배와 차와 말
除外	제외	遵守	준수
提出	제출	準하다	준한다
除한	나눈	…中	…중
制限	제한	重激한	무겁고 힘든
條件	조건	中斷	중단
足跡	발자국	重大	중대
足指	발가락	中毒者	중독자
尊重	존중	重敍하다	(풀어 쓰기로 함)
縱	세로	重要的	중요한
終了	종료	重點的	중점적
種類	종류	中止	중지
從事	종사	重하다	중하다
從前	종전	卽席	즉석
左記事項	다음 각호의 사항	卽時	즉시
左側胸	왼쪽 가슴	證據	증거
主觀的	주관적	證明	증명
朱 抹	붉은 색으로 말소 하다	(證票)를 提出하다	(증표)를 제시하다
周壁	주위벽	遲達된다고	늦게 배달된다고
朱書	홍색글씨	持續	지속
		指示를 發하다	지시를 내리다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支援	지원	直立停止하게	바로 서게
支障	지장	直前	직전
池井	연못, 샘	直接	직접
指定의 件	지정령	塵芥	티끌, 먼지
遲滯없이	지체없이	眞菌	곰팡이
紙片	종이조각	塵埃	티끌, 먼지
地穴	땅굴	塵垢	먼지와 때
直徑	지름	執行除刑	이미 집행한 형기

(㉔)부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次年度	다음연도	菜田	채소밭
此等	이들	柵垣	울타리
遮面施設	풀어쓰도록 함	處理	처리
差別	차별	脊椎	등뼈
次式에	다음식에	尺數	척수
借主	차용인	尺柱	자의 기둥
此旨를	이를	天盤	천정판
此限이 아니다	예외로 한다	料程	거리(잇수)
參加	참가	添附	첨부
參考	참고	添書, 添記	첨기
參席	참석	綴目에	사이에
參酌	참작	締結	체결
參與	참여	遞傳의(방법)	(쓰지 않기로 함)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草根	풀뿌리	出庫	출고
超過	초과	出席	출석
硝子	유리	充當	충당
促求	촉구	衝突	충돌
囑託	촉탁	充分	충분
攝影	촬영	充用	충용
最近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	充足	충족
最大	최대	取扱	취급
最小	최소	取得	취득
最直近間	가장 가까운 시기	取渡할	받아넘길
最初	최초	趣旨를	뜻을
最後	최후	取下	취하
追加	추가	取하다	취하다
抽象的	추상적	値	값
推進	추진	齒磨用品	치솔, 치약
推薦	추천	侵奪	(쓰지 않기로 함)
		侵害	침해
		秤	저울

(ㄷ)부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唾具	침뱉는 그릇	他處	다른 곳
他局	다른 국	打破	타파
他物	다른 물건	脫漏	누락, 빠짐
怠慢하다	게을리 하다	通知	통지
兎	토끼	通하여	통하여
土砂	흙과 모래	特別	특별
通告	통고	特殊	특수
通報	통보	特定	특정
通常	통상	特히	특히
通用	통용		

(교)부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破棄	파기	包含	포함
把握	파악	幅員	너비
判斷	판단	表面	앞면
判定	판정	表示	표시
便利	편리	標札	표시판, 표쪽지
便宜한	편리한	豊富	풍부
廢棄	폐기	皮革	가죽
平易한	쉬운	必要	필요
拋棄	포기	畢하지	마치지
包裝	포장	必히	반드시

(ㅎ)부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下記와 如히	아래와 같이	下腹部	아랫배 부분
下端	아래쪽 끝	…下에서	…아래에서
下落하여	떨어져	下午	오후
荷物, 貨物	화물	하자(瑕疵)	흠
荷造	포장	現在	현재
下肢	다리	顯著히	현저히
下請	하도급	血痕	핏자국
限	한	狹小한	협소한
寒冷한	춥고 차가운	亨受與否	(쓰지 않기로 함)
限한다	한한다	形便上	형편상
割當	할당	湖水	호수
涵養	함양	呼唱하다	호창하다
恒久的	항구적	靴類	구두따위
恒常	항상	確立	확립
海	바다	確保	확보
該當	해당	確實	확실
懈怠	태만	確認	확인
害하다	해하다	確定	확정
行動	행동	擴充	확충
行使	행사	還付하다	반환하다
行爲	행위	繪具	그림 그리는 도구
行하다	행하다	回附	회부
向上	향상	回復	회복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본래의 용어	바꾼 용어
許與	풀어쓰도록 함	廻行할	거쳐서 올
虛僞의	거짓의	橫	가로
許容	허용	橫道	건널목
革	가죽	效率的	효율적
後	후	欠缺	흠
後面肩部	뒤쪽 어깨부분	吸煙	흡연
後側양팔굽	뒤쪽 양팔꿈치	希望	희망
毀損	훼손	犧牲	희생
携帶	휴대		

『법령입안심사기준, 법제처(1996)』 : 163-177쪽 정리

아래 정리사항 중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진한 글씨로 표시하고 각주에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법령의 경우에는 한글·한자를 혼용한다. 법령의 用字는 한글을 전용한다.
- 띄어쓰기 기준은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따르는 것이 원칙.
- 준말은 쓰지 않음 (예: 위해→위하여, ~코자→~하고자, 앓고→아니하고)
- 인용시 “○○법 제4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 등으로 한다.
- ‘등’은 불완전 명사로 쓰이므로 띄어쓴다. (다만 약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붙여 쓴다.  
예: 허가·인가·신고·승인 (이하 “허가등”이라 한다))<sup>18)</sup>
- 알기 쉬운 용어의 사용 및 표현의 통일 (평이한 용어,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것은 대체)
  - 간주한다 → 본다
  - ‘有故時’ 또는 ‘사고가 있을 때’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 경유하여 → 거쳐
  - 구두 → 구술
  - 되려고 → 되고자, 하려고 → 하고자
  - ‘내’는 시간(예 : 기간내에), ‘안’은 지역이나 범위(예 : 범위안에)로 구별해 사용.<sup>19)</sup>
  - 일정한 기간은 ‘○월’과 ‘○개월’이 있으나 ‘○월’로 한다.
  - ‘위치란(난), 우란(난), 좌란(난), 명칭란(난), 동란(난), 적용례(예)’는 ‘위치란, 오른쪽란, 왼쪽란,<sup>20)</sup> 명칭란, 동란, 적용례’로 한다.
  - 위원회 등 기구 설치 표현 : ‘하게 하기 위하여 → 하기 위하여’
  - 재량권을 준 인상 피하기 위해 ‘처할 수 있다 → 처한다’로 한다.
  - 호에서는 ‘~할 것’ 등을 쓰고 ‘~한다’ 등의 형식은 쓰지 않는 것이 원칙.
  - 시제에서는 원칙적으로 현재형 ‘~하는 때 또는 ~되는 때’를 사용. 미래형과 과거형은 문맥상 분명한 경우만 사용. (단 ‘~하였을 때’와 ‘~되었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
  - 능동문 사용이 원칙이고, 더 객관적인 표현인 ‘판단되는’과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 수동문을 쓴다.
  - 괄호 속에서는 마지막 문장의 끝에 마침표(온점)를 쓰지 않는다.
  - 유사한 의미의 단어는 가운데점을 쓰고 ‘및, 또는’을 쓰지 않는다. (총괄·조정, 조사·연구, 심사·분석, 관리·운영)
  - 업무상 선후관계 등의 단어는 가운데점을 쓰고 ‘및, 또는’을 쓰지 않는다. (수립·시행, 수집·분석)

18) ‘등’은 의존명사이므로 띄어써야 한다.

19) ‘기간 내에’와 ‘범위 안에’가 띄어쓰기에 맞다. 특히 한자와 한글이 섞인 경우 ‘期間 내에, 範圍 안에’가 맞다.

20) 맞춤법상으로는 한 성분이 고유어나 외래어인 복합어면, ‘어린이난, 펜팔난’식으로 ‘오른쪽난, 왼쪽난’이 맞다.

- 대등절이나 종속절의 나열인 경우에만 쉼표(반점)을 쓰고, 구의 나열이면 쓰지 않는다.
- ‘또는’은 2개의 사항 중에서 선택을 할 때 쓰고, 3개 이상은 가운데뎛점이나 쉼표를 쓰고 끝에 쓴다.<sup>21)</sup>
- ‘및’은 2개의 사항이 함께 필요한 경우에 쓰고, 3개 이상은 가운데뎛점이나 쉼표를 쓰고 끝에 쓴다.
- ‘이전, 이후’는 기준시점을 포함하고 ‘전, 후’는 기준시점을 포함하지 않는다. (‘4월 1일 이후’와 ‘4월 1일 후’의 차이)
- ‘한다, 하여야 한다’는 반드시 할 의무이고, ‘할 수 있다’는 할 수 있는 權能을 부여하는 것이다.
- ‘즉시’는 시간적 즉시성이 강한 것이고, ‘지체없이’는 같은 뜻이면서도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의 지체는 허용되는 경우에 쓴다.
- ‘다만 ~’은 ‘단서’라고 하고 ‘이 경우’는 ‘후단’이라고 하므로 구분된 용어이다.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이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와 다르다.
- ‘協議, 承認, 同意’은 뜻이 다르다.
- 期日, 期限, 期間도 뜻이 다르다.
- ‘科하다’와 ‘課하다’가 한자로 쓰이면 뜻이 다르다.
- ‘科料’와 ‘過怠料’도 뜻이 다르다.

---

21) 법률에서 여러 항목을 나열할 경우 ‘A, B, C 또는/및/기타 D’으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또는/및/기타 D’도 다른 하나의 항목이므로 ‘A, B, C, 또는 D’처럼 쉼표( , )로 분리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이 있었다.